행정간행물발간등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종 자 산 업 법 령

2010. 9. 1

농림수산식품부

목 차

□ 종자산업법·시행령·시행규칙 ····· 1

1. 종자산업법 ····· 17

2. 종자산업법시행령 ····· 17

3. 종자산업법시행규칙 ····· 17

□ 종자산업법시행령·시행규칙 별표 ····· 150

□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서식 ····· 160

□ 종자산업법에의한수수료 및 품종보호료징수규칙 ····· 231

□ 종자산업법제53조의규정에의한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 ····· 240

종자산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1. 種子産業法	1995. 12. 6.	제정공포(법률 제5,024호)
	1999. 1. 21.	개정공포(법률 제5,668호)
	2000. 1. 21.	개정공포(법률 제6,190호)
	2001. 1. 26.	개정공포(법률 제6,374호)
	2003. 12. 11.	개정공포(법률 제6,999호)
	2005. 8. 4.	개정공포(법률 제7,678호)
	2007. 8. 3.	개정공포(법률 제8,597호)
	2010. 5. 31.	개정공포(법률 제10,332호)
2. 同法施行令	1997. 12. 31.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5,576호)
	1999. 2. 26.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6,127호)
	1999. 6. 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6,442호)
	2000. 3. 24.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6,757호)
	2000. 8. 1.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6,932호)
	2001. 6. 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7,280호)
	2004. 3. 12.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311호)
	2004. 3. 17.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312호)
	2008. 1. 31.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0,575호)
	2010. 9. 1.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2,365호)
3. 同法施行規則	1998. 1. 24.	제정공포(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72호)
	1999. 2. 2.	개정공포(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12호)
	1999. 8. 6.	개정공포(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35호)
	2000. 3. 27.	개정공포(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60호)
	2001. 8. 3.	개정공포(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96호)
	2004. 3. 12.	개정공포(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63호)
	2008. 2. 4.	개정공포(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2호)
	2010. 9. 1.	개정공포(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5호)

종 자 산 업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제2장 육성자의 권리보호	**제2장 육성자의 권리보호 등**	**제2장 육성자의 권리보호**
제 1 절 통 칙		**제 1 절 통 칙**
제3조(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제3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제2조(견본의 송부)<삭제>
		제3조(번역문의 첨부)
제4조(대리권의 범위)		제4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5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제5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의 선정 등)
		제6조(승계인의 자격 등에 관한 증명)
		제7조(국적증명 등)
		제8조(성명 등의 변경신고)
제6조(기간의 연장 등)		제9조(기간의 연장신청)
제7조(절차의 보정)		제10조(기간의 지정)
제8조(절차의 무효)		제11조(무효처분의 취소신청 등)
제9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12조(서류의 원용)
제9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13조(서류 등의 보정)
		제14조(서류 등의 제출)
제9조의3(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15조(우편물의 배달지연)
제9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16조(우편물의 분실)
제10조(특허법 등의 준용)		제17조(우편업무의 중단)
		제17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및 제출방법)
		제17조의3(전자문서 이용 신고의 절차 등)
		제17조의4(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등)
		제18조(절차의 속행통지)
		제19조(포기 또는 취하)

종 자 산 업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절 품종보호요건 및 품종보호출원		**제2절 품종보호출원**
제1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작물)		제20조(품종보호 대상작물)
제12조(품종의 보호요건)		
제13조(신규성)		제21조(신규성증명서류의 제출)
제13조의2(알려진 품종에 관한 품종보호)		
제14조(구별성)		제22조(협회의 범위)
제15조(균일성)		
제16조(안정성)		
제17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제18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3조(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
제19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24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20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21조(선출원)		제25조(협의결과의 신고)
제22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23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26조(명의변경의 신고)
		제27조(지분의 기재)
		제3장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보상 등
제24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제4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제72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제5조(승계의 결정)	
	제6조(권리의 양도)	
	제7조(품종보호의 출원)	
	제8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출원)	제73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출원)
	제9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제25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등에 대한 보상등)	제10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제11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제74조(정부기관의 무상실시)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제75조(견적서)
	제13조(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제76조(실시승인신청서)
	제1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제15조(수의계약 신청)	제77조(수의계약신청서)
	제16조(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제17조(예정가격)	제78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8조(처분의 공고)	
	제19조(계약서의 작성)	제79조(계약서)
	제20조(처분결과의 통지)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제22조(양도대금 등의 처리)	
	제23조(계약의 해지)	
	제2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청취)	
	제25조(대장의 비치)	제80조(대장의 비치)
	제26조(등록보상금)	제81조(변동사항의 통지)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제82조(직무육성자의 의무)
	제28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29조(전직·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제30조(보상금 등의 불반환)	
	제30조의2(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제31조(준용)	
제26조(품종보호의 출원)	제32조(품종의 특성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제28조(품종보호출원서) 제29조(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제27조(우선권의 주장)		제30조(품종보호출원등록부 등)
제28조(출원서)		
제29조(출원의 보정)		
제30조(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삭제>	제33조(품종보호출원의 요지변경)	
제31조(출원의 요지변경)		**제3절 심사 등**
제32조(보정의 각하)		제31조(보정의 각하결정)
제3절 심 사		
제33조(심사관에의한 심사)	제34조(심사관의 자격)	

종 자 산 업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4조(출원공개)		제32조(품종보호출원의 공개일 또는 공고일)
제34조의2(임시보호의 권리)		제33조(출원공개)
제34조의3(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제34조(공개된 품종보호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35조(출원품종의 심사)		제35조(심사의 방법)
제36조(자료의 제출 등)		제36조(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절차 등)
제37조(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제37조(거절사정 등)
제38조(출원공고)<삭제>		제38조(의견서의 제출)
제39조(임시보호의 권리)<삭제>		제39조(출원공고) <삭제>
제40조(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삭제>		
제41조(품종보호이의신청)<삭제>		제40조(품종보호이의신청) <삭제>
제42조(품종보호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 <삭제>		제41조(답변서의 제출) <삭제>
제43조(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삭제>		제42조(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삭제>
제44조(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삭제>		
제45조(품종보호이의신청의 경합)<삭제>		제43조(품종보호결정)
제46조(품종보호결정)		제44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삭제>
제4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48조(특허법의 준용)		
제4절 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등록 등		
제49조(품종보호료)		
제50조(납부기간 경과후의 품종보호료의 납부)		
제51조(품종보호료의 면제)		
제52조(품종보호료의 반환)		
제53조(품종보호원부)		
제54조(품종보호공보)		

제5절 품종보호권		제4절 품종보호권
제55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제45조(품종보호권등록증)
		제46조(품종보호권등록증의 정정교부신청 등)
제56조(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제57조(품종보호권의 효력)		
제58조(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35조(농어업인의 자가채종)	
제59조(품종보호권의 효력제한)		
제60조(품종보호권의 제한금지)		
제61조(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제62조(전용실시권)		
제63조(품종보호권 및 전용실시권등록의 효력)		제47조(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 등)
제64조(통상실시권)		
제65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66조(무효심사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67조(질권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68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36조(통상실시권 설정재정의 예외)	제48조(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
제69조(재정청구서의 송달)		제49조(답변서의 제출)
제70조(재정의 방식)		제50조(통상실시권의 기간연장청구)
제71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제72조(대가의 공탁)		
제73조(재정의 실효 등)		제51조(재정의 취소신청)
		제52조(답변서의 제출)
		제53조(재정의 취소결정)
제74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제75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제76조(품종보호권 등의 포기제한)		
제77조(포기의 효력)		
제78조(질권)		
제79조(질권의 물상대위)		
제80조(품종보호권의 취소)		제54조(품종보호권의 취소)

종 자 산 업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8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품종보호권의 소멸)		제55조(품종보호권의 소멸공고)
제82조(품종보호권의 실시보고)		
제83조(보호품종유지의무)		
제6절 품종보호권자의 보호		
제8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85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86조(손해배상청구권)		
제87조(과실의 추정)		
제88조(품종보호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89조(품종보호의 표시)		제56조(품종보호의 표시)
제90조(거짓표시의 금지)		
제7절 심 판		**제5절 심판 및 재심**
제91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제37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제92조(보정각하에 대한 심판)<삭제>		제57조(심판청구서)
		제58조(심판번호의 부여 등)
제93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94조(품종보호에 대한 심판)		
제95조(심판청구방식)		
제96조(심판위원)	제38조(심판위원의 자격)	
	제39조(간사)	
제97조(심판위원의 지정 등)		
제98조(심판의 합의체)		
제99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사규정 준용)		
제100조(특허법의 준용)		제59조(답변서의 제출)

제60조(증빙자료의 첨부)
제61조(심판위원의 제척신청서 등)
제62조(심판참가신청서)
제63조(구두심리의 방법)
제64조(의견서의 제출)
제65조(증거보전신청)
제66조(심판청구의 취하)
제67조(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제68조(심리재개신청)
제69조(심판의 결정서)
제70조(심판비용)

제71조(재심청구서)

제4장 품종명칭

제83조(협의결과의 신고)
제84조(품종명칭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제85조(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
제86조(출원공고)
제86조의2(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제86조의3(답변서의 제출)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101조(재심의 청구)
제102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0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의 제한)
제104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05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06조(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제107조(특허법 등의 준용)

제3장 품종의 명칭

제108조(품종명칭)
제109조(품종명칭등록의 요건)

제110조(선출원)
제111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
제111조의2(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제111조의3(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

종 자 산 업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11조의4(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86조의4(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111조의5(품종명칭등록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제87조(거절사정 등)
		제88조(심사규정의 준용)
제111조의6(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경합)		제89조(품종명칭등록원부)
제111조의7(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12조(품종명칭의 사용 등)		
제113조(품종명칭의 취소)	제40조(품종명칭의 취소)	
제4장 품종성증의 관리		**제5장 품종성능의 관리**
제114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제90조(품종목록등재신청서의 기재사항)
제115조(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제116조(품종목록등재신청품종의 심사 등)		제91조(품종성능의 심사기준)
제117조(품종목록등재품종의 공고)		제92조(의견서)
제118조(품종목록등재품종의 유효기간)		제93조(품종목록의 서식)
제119조(품종목록등재품종의 취소)		제94조(품종목록등재품종의 공고)
제120조(품종목록의 보존)	**제3장 품종성능의 관리**	제95조(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121조(품종목록등재품종의 종자생산)	제41조(종자생산 대행 농업단체등의 범위)	제96조(종자생산의 대행자격)
제122조(품종목록등재품종의 성능유지관리 등) <삭제>		제97조(유지책임자의 자격기준) <삭제>
		제98조(외국에서의 품종성능유지관리 허가신청) <삭제>
제123조(재배금지명령) <삭제>	제42조(재배금지지역의 범위) <삭제>	
	제43조(재배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삭제>	제99조(재배금지명령의 공고) <삭제>
		제100조(손실보상청구서) <삭제>
제5장 종자의 보증	**제4장 종자의 보증**	
제124조(종자보증의 구분)		
제125조(국가보증의 대상)		
	제43조(국가보증 대상 농업단체등의 범위 등)	
제126조(자체보증의 대상)	제44조(국제종자검정기관)	

제127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제128조(포장검사)

제129조(종자생산의 포장조건)
제130조(종자검사 등)
제131조(보증표시)

제132조(자료제출)<삭제>
제133조(보증서의 발급)
제134조(사후관리시험)
제135조(보증의 실효)
제136조(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제6장 종자의 유통

제137조(종자업의 등록)

제138조(종자의 판매 등)
제139조(종자업등록의 취소 등)
제140조(종자의 수출·수입)

제141조(수입적응성 시험)

제45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제5장 종자의 유통

제46조(종자업의 시설기준)
제47조(종자업의 등록 등)
제48조(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제49조(종자매매업의 신고 등)<삭제>

제50조(수출입종자의 국내 유통제한)

제51조(유통종자의 분쟁)

제6장 종자의 보증

제101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01조의2(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
제101조의3(종자관리사 등록증의 정정교부신청 등)
제102조(검사기준 및 방법)
제103조(검사신청 등)
제104조(재검사신청 등)

제105(보증표시)
제106조(보증의 유효기간)

제107조(보증서의 발급)
제108조(사후관리시험)

제7장 종자의 유통

제109조(종자업등록신청서 등)
제110조(종자업등록사항의 변경통지)
제110조의2(종자업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제111조(품종의 생산·판매 신고)
제112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113조(수출·수입신고)
제114조(시험·연구기관 등)
제115조(해외채종의 신고)<삭제>
제116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종 자 산 업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17조(심사기준)
제142조(종자의 수입추천)		제118조(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 등)
		제119조(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물량 등)
		제120조(사후보고)
제143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제121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제144조(유통종자에 대한 제한행위)		제12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 <삭제>
제145조(종자의 유통조사 등)		제123조(관계공무원의 증표)
제146조(종자의 비축)	제52조(종자비축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삭제>	
제147조(종자시료의 보관)		제124조(종자시료의 보관)
제148조(유통종자의 분쟁)		제125조(유통종자의 분쟁에 대한 대비시험신청)
		제126조(보상청구)
제7장 종자기금 <삭제 2000.1.21>	**제6장 종자기금 <삭제 2001.6.30>**	
제149조 내지 제157조 <삭제>	제53조 내지 제65조 <삭제>	
제8장 보 칙	**제7장 보 칙**	**제8장 보 칙**
제158조(종자위원회)	제66조(종자위원회의 구성)<삭제>	제127조(공보)
	제67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8조(위원장의 직무)	
	제69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제70조(수당)	
제158조의2(분쟁의 조정)	제71조(간사)	제127조의2(조정신청서 제출)
제158조의3(위원의 제척 등)	제71조의2(조정절차) <삭제>	
제158조의4(자료요청 등)		
제158조의5(출석의 요구)		
제158조의6(직권조정결정)	제71조의3(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제158조의7(조정의 성립 등)		
제158조의8(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운영 등)	제71조의4(조정부의 구성·운영)	
	제71조의5(운영세칙)	
제159조(청문)		
제160조(수수료)		
제161조(수수료의 면제)		
제162조(수수료의 반환)		제128조(사용문자)
제163조(사용문자)		제129조(서류의 열람 등)
제164조(서류의 보관 등)		

제165조(종자산업의 육성)
제16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6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8조(특허법의 준용)

제9장 벌 칙

제169조(침해죄 등)
제170조(위증죄)
제171조(거짓표시의 죄)
제172조(비밀누설죄 등)
제173조(무등록종자업의 죄 등)
제174조(양벌규정)
제175조(몰수 등)
제176조(과태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제3조(특허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이 법 시행당시에 알려진 품종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품종명칭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종묘등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종자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종자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73조(송달대상서류)
제74조(서류의 송달 등)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제3조(종자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 칙<'99.2.26>

부 칙<'99.6.30>

제130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

제13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품종생산·판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종 자 산 업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9조(종자의 수출입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수입적응성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종자기금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 칙<'99.1.21>** ①(시행일)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 칙<2000.1.21>** 제1조(시행일) 제2조(종자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4조(기금발전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 칙<2001.1.26>** ①(시행일) ②(과수 및 임목품종의 신규성에 관한 경과조치) ③(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 칙<2000.3.24>** 제1조(시행일)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1.6.30>** ①(시행일) ②(다른 법령의 개정) **부 칙<2004.3.12>** ①(시행일) ②(다른 법령의 개정) **부 칙<2008.1.31>** 제1조(시행일) 제2조(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농민의 자가채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심사관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국제종자검정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수출입종자의 국내 유통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부 칙<1999.2.2>** **부 칙<1999.8.6>** **부 칙<2000.3.27>** 제1조(시행일) **부 칙<2001.8.3>** **부 칙<2004.3.12>** ①(시행일) ②(유통종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적용례)

附　　則<2003.12.11>

①(시행일)

②(임시보호의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부　　칙<2007.8.3>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31>

제1조(시행일)

제2조(처분통지서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4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종자시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거절결정의 통지에 대한 적용례)

제7조(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8조(품종명칭 등록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종자보증 관련 검사서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종자보증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유통종자의 분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침해분쟁 조정 관련 조정기간 연장 등에

부　　칙<제22365호, 2010. 9. 1>

제1조(시행일)

제2조(종자관리사 보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　　칙　<제145호, 2010. 9. 1>

제1조(시행일)

제2조(종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3조(보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관한 적용례) . 제13조(직권조정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심판 청구기간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품종보호 출원공고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거절사정 및 품종보호사정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종자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수입종자에 관한 경과규정) 제1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 자 산 업 법

제정 1995.12. 6 법률 제5,024호
개정 1996. 8. 8 법률 제5,153호(정부조직법)
개정 1996.12.12 법률 제5,170호(재정융자특별회계법)
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 1999. 1.21 법률 제5,668호
개정 2000. 1.21 법률 제6,190호(종자기금폐지)
개정 2001. 1.26 법률 제6,374호
개정 2002. 1.26 법률 제6,626호(민사소송법)
개정 2003.12.11 법률 제6,999호
개정 2005. 8. 4 법률 제7,678호
개정 2007. 8. 3 법률 제8,597호
개정 2010. 5.31 법률 제10,332호

제1장 총칙 <개정 2010.5.31>

제1조(목적)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 주요 작물의 품종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육성·증식·생산·조제(調製)·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작물"이란 농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거나 양식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3. "종자"란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 종균(種菌)·영양체(營養體) 또는 포자(胞子)를 말한다.

시 행 령

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76호
개정 1998.4. 1 대통령령 제15,750호
개정 1998. 8.11 대통령령 제15,864호(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정 1999. 2.26 대통령령 제16,127호
개정 1999. 6.30 대통령령 제16,442호
개정 2000. 3.24 대통령령 제16,757호(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 2000. 8. 1 대통령령 제16,932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개정 2001. 6.30 대통령령 제17,280호
개정 2004. 3.12 대통령령 제18,311호
개정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개정 2008. 1.31 대통령령 제20,575호
개정 2010. 9. 1 대통령령 제22,365호

제1장 총칙 <개정 2010.9.1>

제1조(목적)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육성품종"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이하 "육성"이라 한다)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유품종보호권"이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9.1]

시 행 규 칙

제정 1998. 1. 24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72호
개정 1999. 2. 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12호
개정 1999. 8. 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35호
개정 2000. 3. 27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60호
개정 2001. 8.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96호
개정 2004. 3. 1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63호
개정 2008. 2. 4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2호
개정 2010. 9. 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5호

제1장 총칙 <개정 2010.9.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4>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유전자변형종자"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9.1]

종 자 산 업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2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육성자"란 신품종을 육성한 자나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6.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7. "품종보호권자"란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보호품종"이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9.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양식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11. "보증종자"란 이 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 및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12. "종자관리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종자업"이란 종자의 생산과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4. "종자업자"란 이 법에 따라 종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개정 2010.5.31>

제1절 통칙 <개정 2010.5.31>

제3조(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제3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품종보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이하 "품종보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품종보호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서의 절차(이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품종보호관리인은 특히 수여된 권한과 그 밖의 모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③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재외자는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選任)·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취소에 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재외자는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 또는 해당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개정 2010.9.1>

제3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개정 2010.9.1>

제1절 통칙 <개정 2010.9.1>

제2조 삭제 <2008.2.4>

제3조(번역문의 첨부) 국적증명서 및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에 관한 서류등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려는 자는 그 서류에 한글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4>

제4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종 자 산 업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품종보호 출원의 변경·포기 또는 취하 2. 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 또는 그 취하 4. 제93조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複代理人)의 선임 [전문개정 2010.5.31]		
제5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명 이상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4호의 경우에는 제91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5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6조(승계인의 자격 등에 관한 증명) ①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는 데에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7조(국적증명 등) ①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외국인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외국인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세계무역기구지적재산권협정이나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의 회원국 또는 품종보호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 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1. 세계무역기구지적재산권협정이나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의 회원국 또는 품종보호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 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 중 1국의 영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품종

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9.1]

제8조(성명 등의 변경신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거나 정정한 때 또는 그 인감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증의 제시로써 신고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9조(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심판위원회위원장, 법 제97조제3항에 따른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6조(기간의 연장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93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제111조의3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심판위원회 위원장, 제97조제3항에 따른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 또는 제33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

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이나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7조(절차의 보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심판위원회 위원장 또는 심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를 위반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160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5.31]

제8조(절차의 무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제10조(기간의 지정) 법 제7조에 따른 보정기간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등 법에 따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심판위원회위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품종보호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분석등 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분석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1조(무효처분의 취소신청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신청 및 법 제1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7조에 따른 해태된 절차의 추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2조(서류의 원용) 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9조(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서, 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면 그 표시된 날에, 그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배달 지연, 분실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경우로서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1조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해서만 증명서류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1조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미 제출한 증명서류와 동일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기하고 그 사본을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

제13조(서류 등의 보정) ① 법 제7조, 제29조, 제95조제2항 단서 및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서 부본 1부
2.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4조(서류 등의 제출)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5조(우편물의 배달지연) ①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제출기간이 정하여진 것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물의 배달지연으로 인하여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은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기간의 만료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원인이 우편물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은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9.1]

제16조(우편물의 분실)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분실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7조(우편업무의 중단) ①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제출기간이 정하여진 것을 우편으로 제출하려는 경우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그의 대리

제9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품종보호 출원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

인의 주소나 영업소가 속하는 지역 또는 체재지에서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출기간의 만료일 전 10일간의 사이에 우편업무가 중단되어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은 그 취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원인이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품종보호 출원인이 우편업무가 회복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은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9.1]

제17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및 제출방법)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1. 제2항에 따른 수록 목록을 적은 서류
2. 제46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정정교부신청서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전자문서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

된 전자문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심판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방법과 그 밖에 전자문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31]

제9조의3(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나 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와 전자서명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31]

제9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심판위원회 위원장·심판장·심사관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서류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서류의 통지등은 이를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록 목록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제출받는 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9.1]

제17조의3(전자문서 이용신고의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는 국립종자원·국립수산과학원·산림청 또는 심판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9.1]

제17조의4(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등)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심판위원회위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1]

제18조(절차의 속행 통지)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1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9조에 따라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등의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31]

제10조(「특허법」 등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및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 제59조, 제63조, 제87조, 제88조, 제92조, 제94조,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 제13조의 "특허청 소재지"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재지"로, 「특허법」 제17조의 "제132조의3"은 "제93조"로 본다.

[전문개정 2010.5.31]

제2절 품종보호 요건 및 품종보호 출원 <개정 2010.5.31>

제1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작물)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屬) 또는 종(種)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승계인에 대하여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9조(포기 또는 취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절 품종보호 출원 <개정 2010.9.1>

제20조(품종보호대상작물) 법 제11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8.3, 2008.2.4, 2008.3.3>

1. 벼(Oryza sativa L.)
2. 보리(Hordeum vulgare L.)
3. 콩(Glycine max (L.) Merrill)
4. 옥수수(Zea mays L.)
5. 감자(Solanum tuberosum L.)
6. 밀(Triticum aestivum L.)
7. 무(Raphanus sativus L.)
8. 배추(Brassica campestris L. spp. pekinensis(Lour.)Rupr.)
9. 양배추(Brassica oleracea L. var. capitata)

10. 고추(Capsicum annuum L.)
11.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Mill.)
12. 오이(Cucumis sativus L.)
13. 참외(Cucumis melo L. var. makuwa Makino)
14. 수박(Citrullus vulgaris Schrad.)
15. 호박(Cucurbita spp.)
16. 파(Allium fistulosum L.)
17. 양파(Allium cepa L.)
18. 당근(Daucus carota L.)
19. 상추(Lactuca sativa L.)
20. 시금치(Spinacia oleracea L.)
21. 비모란 선인장(Gymnocalycium mihanovichii Br. & R.)
22. 사과(Malus domestica Borkh.)
23. 배(Pyrus pyrifolia (Durm f.) Nakai)
24. 복숭아(Prunus persica (L.) Batsch.)
25. 라이그라스(Lolium spp.)
26. 톨페스큐(Festucaelatior var. arundianacea(Schreb.) Wimm.)
27. 레드클로버(Trifolium pratense L.)
2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

제21조(신규성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규성을 갖

제12조(품종보호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품종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신규성
2. 구별성
3. 균일성
4. 안정성
5. 제108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전문개정 2010.5.31]

제13조(신규성)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제27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果樹) 및 임목(林木)인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2조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호에 따른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도용(盜用)한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3. 종자를 증식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하여 그 종자를 증식하게 한 후 그 종자나 수확물을 육성자가 다시 양도받은 경우
4. 품종 평가를 위한 포장시험(圃場試驗), 품질검사 또는 소규모 가공시험을 하기 위하여 그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5.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 또는 제114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올리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6. 해당 품종의 품종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된 부산물이나 잉여물을 양도한 경우

[전문개정 2010.5.31]

제13조의2(알려진 품종에 관한 품종보호) ① 제11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을 정할 당시에 이미 알려진 품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12조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 출원과 동시에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신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으로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할 경우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법률 제5024호 종자산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른 우량종자의 품종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품종
3. 외국에서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
4. 육성자 및 최초 유통일에 대한 증거가 있는 품종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은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그 품종이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종인 경우에는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따라 우량종자의 품종으로 결정된 날
2.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종인 경우에는 그 품종의 등록일
3.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인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일
4. 제1항제4호에 따른 품종인 경우에는 그 최초 유통일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은 그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한 실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 그 품

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4조(구별성)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제27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종은 제12조제2호의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을 말한다. 다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은 제외한다.

1. 유통되고 있는 품종
2. 보호품종
3. 품종목록에 올라 있는 품종
4.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거나 품종목록에 올리기 위하여 신청한 품종은 그 출원일이나 신청일부터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품종목록에 올라 있지 아니한 품종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22조(협회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 관련 협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5조(균일성)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變異)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2조제3호의 균일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5.31]

제16조(안정성)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1대 잡종 등과 같이 특정한 증식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주기 종료 후)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2조제4호의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5.31]

제17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① 육성자나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2명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共有)로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8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5.31]

제19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 것으로 속인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무권리자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때에 품종보호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제37조제3항에 따라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31]

제20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그 품종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審決)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무효로 된 그 품종보호의 출원 시에 품종보호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품종보호에 대한 제55조제3항에 따른 공보 게재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거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31]

제21조(선출원) ① 같은 품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품종보호를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

제23조(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 법 제19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의 품종보호 출원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서 부본 1부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4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거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기각심결 또는 품종보호의 무효심결의 확정을 한 때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5조(협의결과의 신고)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품종보호 출원을 신고하려는 자는 동일 품

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② 같은 품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이하 "품종보호 출원인"이라 한다)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느 품종보호 출원인도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③ 품종보호 출원이 무효로 되거나 취하되면 그 품종보호 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육성자가 아닌 자로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품종보호 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5.31]

제22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5.31]

제23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품종보호 출원 전에 해당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는 종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 성립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6조(명의변경의 신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명의변경신고서에 다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품종보호 출원 후에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 출원인이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품종보호 출원 후에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한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24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① 공무원이 육성한 품종이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이하 "직무상 육성"이라 한다)일 경우에는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해당 공무원의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

제4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5조(승계의 결정) ① 제4조 및 제8조제2항에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7조(지분의 기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거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명의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장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보상등

제72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① 「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하려는 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서에 직무육성품종 설명서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육성품종 설명서에는 다

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육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승계한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과 관리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따른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6조(권리의 양도)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육성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7조(품종보호의 출원) ① 제6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은 육성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8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①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품종보호 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육성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소속기관의 업무: 직무육성품종 육성 당시 그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해당 직무육성품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의 업무범위를 기술할 것
2. 직무육성자의 임무: 직무육성품종 육성 당시 그가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직무육성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할 것
3. 직무육성품종의 실용성: 해당 직무육성품종의 실용가치와 농업에의 기여도를 기술할 것
4. 직무육성품종의 특성설명: 해당 직무육성품종의 구별성·균일성 및 안정성 등을 기술할 것
5. 서명날인: 직무육성자가 서명날인할 것

[전문개정 2010.9.1]

제73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육성자 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 해당 직무육성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육성품종 설명서 1부
2.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품종보호 출원서 부본 1부

	하는 바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전문개정 2010.9.1]
	제9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직무육성품종이 법 제46조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자: 대한민국 2. 관리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3. 승계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전문개정 2010.9.1]	
	제10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을 자가 없거나 품종과 재배유형이 다양하고 가격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상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2008.2.29>	
	제11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①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은 무상으로 한다. ②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제74조(정부기관의 무상실시)**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국유품종보호권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기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0.9.1]

에 따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① 정부기관의 장은 국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실시료 견적서 1부(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전문개정 2010.9.1]

제13조(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기간은 해당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부터 7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국유품종보호권을 실시하는 데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을 때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할 때
3.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때. 이 경우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실시료를 인상하여 재계약할 때

제75조(견적서) 영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15조제2호에 따른 견적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

제76조(실시승인신청서)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

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전문개정 2010.9.1]

제15조(수의계약 신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 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 1부

[전문개정 2010.9.1]

제16조(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7조에서 같다)에는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

제17조(예정가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정가격 산정자료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8조(처분의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국

제77조(수의계약신청서) 영 제15조에 따른 수의계약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

제78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총추정액
2. 유사 국유품종보호권의 매매가격(제1호에 따라 양도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유상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

국유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실시기간 중 최초증식기간 중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③ 제2항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계약신청자가 생산·판매하려는 약정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약정수량을 초과하여 생산·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한다.

[전문개정 2010.9.1]

	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 일시 및 장소,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9조(계약서의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79조(계약서)** 영 제19조에 따른 계약서에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의 종류(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그 실시권의 범위를 병기하여야 한다),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지급방법과 기간, 보증금액 및 계약위반 시의 보증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0조(처분결과의 통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27조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을 그 육성기관의 장과 직무육성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육성기관의 장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정부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무육성자에게만 통지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한꺼번에 내야 한다. ②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 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	
	제22조(양도대금 등의 처리)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	

제2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청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5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0조 단서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와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무상실시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9.1]

제25조(대장의 비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0조(대장의 비치) 영 제25조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의 작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5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조직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과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26조(등록보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명의로 설정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1조(변동사항의 통지) 영 제26조 및 영 제27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및 육성기관의 장은 직무육성자가 전직·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촌진흥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82조(직무육성자의 의무) 직무육성자는 해당 국유품종보호권을 처분하거나 실시하는 데에 국가 또는 그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육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2.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3.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육성자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은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가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를 말한다)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8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직무육성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9조(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직

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0조(보상금 등의 불반환) 직무육성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그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품종보호가 다른 자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6.30>

제30조의2(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품종의 조기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9.1]

제31조(준용)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신고·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0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9.1]

제26조(품종보호의 출원) ① 품종보호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품종보호 출원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품종보호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육성자의 성명과 주소
4.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5. 품종의 명칭
6. 제출 연월일
7. 제27조제3항의 사항(우선권을 주장할 경우에만 적는다)
8. 품종의 특성 설명 및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9. 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種子試料).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 및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0. 품종보호의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8호에 따른 품종의 특성 설명 및 육성 과정의 설명을 적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27조(우선권의 주장) ① 대한민국 국민에게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이 그 국가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같은 품종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하

제32조(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품종의 특성 설명 및 육성 과정의 설명을 하기 위하여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특성 및 다른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성
2.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육성경과도표(설명서를 포함한다)와 육성계통도
3.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재배 시 유의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8조(품종보호 출원서) 품종보호 출원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영양체 및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재배시험 적기 등을 고려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종보호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3. 우선권 주장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 심사서(이하 "환경 위해성 심사서"라 한다) 1부(유전자 변형품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9조(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

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적용할 때 그 국가에 품종보호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국가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같은 품종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명(國名)과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 등본을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부터 3년까지 해당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을 포기하거나 품종보호를 출원한 국가의 거절결정(拒絶決定)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우선권을 주장한 자의 요청에 의하여 연기된 출원품종 심사일 전이라도 그 품종을 심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28조(출원서의 접수 등)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하 "출원품종"이

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 등본 및 번역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동일 품종을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우선권 증명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우선권 증명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우선권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0조(품종보호 출원등록부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등록부는 별지 제

라 한다)이 제11조에 따른 품종보호 대상작물의 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그 품종보호 출원서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방식에 위반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2호에 따라 보정된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의 접수일은 품종보호 출원일로 본다.

[전문개정 2010.5.31]

제29조(출원의 보정) 품종보호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품종보호 출원서에 최초로 기재한 내용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2.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 품종보호결정 등본 송달 전
3. 제93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전문개정 2010.5.31]

제30조 삭제 <2010.5.31>

제31조(출원의 요지 변경) 제29조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경우
2. 분명하지 아니하게 적힌 것을 석명(釋明)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5.31]

제32조(보정의 각하) ① 출원 후에 한 보정이

제33조(품종보호 출원의 요지 변경) 법 제3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3. 일반승계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법

17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품종보호 출원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한 때에는 품종보호 출원번호 및 품종보호 출원일을 적은 품종보호 출원번호통지서를 그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절 심사 등 <개정 2010.9.1>

제31조(보정의 각하 결정) 법 제32조제1항에

품종보호 출원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심사관은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却下)하고, 지체 없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5.31>

② 삭제 <2010.5.31>

③ 삭제 <2010.5.31>

④ 삭제 <2010.5.31>

⑤ 제1항에 따른 각하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0.5.31>

⑥ 제1항에 따른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93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31>

[제목개정 2010.5.31]

제3절 심사 <개정 2010.5.31>

제33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관에게 제26조에 따른 품종보호출원 및 제111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34조(출원공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제12조,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보호 출원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111조제5항에 따라 품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9.1]

제34조(심사관의 자격)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림청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심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심사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따른 보정의 각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 출원번호 및 품종보호 출원연월일
2. 출원품종의 명칭
3. 품종보호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4. 품종보호 출원인의 대리인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각하 결정의 주문 및 이유
6. 각하 결정연월일

[전문개정 2010.9.1]

제32조(품종보호 출원의 공개일) 품종보호출원의 공개일은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공개된 취지를 게재한 품종보호공보(이하 "공보"라 한다)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3조(출원공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34조의2(임시보호의 권리) ① 품종보호 출원인은 출원공개일부터 업으로서 그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② 출원공개 후 그 품종보호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품종보호 출원이 포기·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2. 품종보호 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품종보호 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에 관하여는 제84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34조의3(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① 법원은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으로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중지의 사유가 소멸하였거나 그 밖에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2.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3. 출원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4. 우선권 주장의 여부
5. 출원품종의 특성
6. 담당 심사관
7.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연월일
[전문개정 2010.9.1]

제34조(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5조(출원품종의 심사) ① 심사관은 출원품종이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연구기관, 대학과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36조(자료의 제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 출원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37조(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2항·제5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 또는 제36조제2항

제35조(심사의 방법)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는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배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배심사를 할 경우에는 구별성·균일성 및 안정성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6조(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절차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위탁받은 자(이하 "조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개요 또는 시험개요
2. 조사기간 또는 시험기간
3. 소요비용

②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조사자는 조사나 시험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7조(거절결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
2.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연월일
3. 거절이유 통지연월일
4. 거절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을 위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그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으면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38조 삭제 <2010.5.31>

제39조 삭제 <2003.12.11>

제40조 삭제 <2003.12.11>

제41조 삭제 <2010.5.31>

제42조 삭제 <2010.5.31>

제43조 삭제 <2010.5.31>

제44조 삭제 <2010.5.31>

제45조 삭제 <2010.5.31>

제46조(품종보호결정) ① 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품종보호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

5. 거절결정연월일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공고를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8조(의견서의 제출)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9조 삭제 <2010.9.1>

제40조 삭제 <2010.9.1>

제41조 삭제 <2010.9.1>

제42조 삭제 <2010.9.1>

제43조(품종보호결정)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
2.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연월일
3. 품종보호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4. 품종보호결정연월일
5. 출원품종 육성과정

[전문개정 2010.9.1]

다.

④ 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4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서 필요하면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에서 필요하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48조(「특허법」의 준용)**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4절 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 등록 등

<개정 2010.5.31>

제49조(품종보호료) ①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품종보호료를 내야 한다.

②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매년 내야 한다.

③ 품종보호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품종보호료를 낼 수 있다.

④ 품종보호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금액

제44조 삭제 <2010.9.1>

과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50조(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①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제49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낼 때에는 제49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2배를 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품종보호료를 내지 아니하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품종보호권자의 품종보호권은 제49조제5항에 따라 납부된 품종보호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5.31]

제51조(품종보호료의 면제)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료를 면제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내야 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내야 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내야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5.31]

제52조(품종보호료의 반환) 납부된 품종보호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에만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53조(품종보호 원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품종보호권의 설정, 이전,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등록사항, 등록절차 및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54조(품종보호 공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기적으로 품종보호 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5절 품종보호권 <개정 2010.5.31>

제55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① 품종보호권은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②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냈거나 제51조에 따라 품종보호료가 면제되었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품종보호 등록번호

제4절 품종보호권

제45조(품종보호권 등록증)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0.9.1]

제46조(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정정교부신청 등) ①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정정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종보호권 등록증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설정등록 연월일
4.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자에게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56조(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57조(품종보호권의 효력) ①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품종보호권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 외에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이나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權原)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에도 적용된다.

1. 보호품종(기본적으로 다른 품종에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품종만 해당한다)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2. 보호품종과 제14조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3.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

②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이 가능한 품종

④ 원품종(原品種) 또는 기존의 유래품종에서 유래되고, 원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 조합에 의하여 나타나는 주요 특성을 가진 품종으로서 원품종과 명확하게 구별은 되나 특정한 육종방법(育種方法)으로 인한 특성만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주요 특성이 원품종과 같은 품종은 유래된 품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5.31]

제58조(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7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自家消費)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2. 실험이나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3.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② 농어업인이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범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59조(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제57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

제35조(농어업인의 자가채종)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할 때에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1]

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이용하여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는 행위

2. 증식을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수출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5.31]

제60조(품종보호권의 제한금지) 정부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5.31]

제61조(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① 품종보호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2. 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③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호품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62조(전용실시권) ①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과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④ 전용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63조(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품종보호권의 이전(상속과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상속과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상속과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그 밖에 일반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64조(통상실시권) ①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제47조(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 등)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관한 취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6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④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⑤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⑥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65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품종보호출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0.5.31]

제66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품종보호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품종보호권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

를 하고 있는 그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같은 품종에 대한 둘 이상의 품종보호 중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품종보호권자
2. 품종보호를 무효로 하고 같은 품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품종보호를 한 경우의 원품종보호권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그 무효로 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7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67조(질권 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이전에 해당 보호품종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품종보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68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보호품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

제36조(통상실시권 설정재정의 예외)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8조(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

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의 청구는 그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보호품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需給) 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보호품종이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청구건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이 국내 수요를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1. 품종보호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보호품종의 실시에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3. 보호품종의 실시가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법령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4. 보호품종실시의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0.9.1]

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부
2. 청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재정을 할 때에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재정이라는 취지를 그 대가의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제15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69조(재정청구서의 송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8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서의 부본을 그 청구와 관련된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와 그 밖에 그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70조(재정의 방식 등) ①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2. 대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에 관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 종전의 통상실시권 설정 사유가 계속 있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5.31]

제71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을 하였으면 당사자와 그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재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49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69조에 따라 재정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50조(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청구)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이 송달되면 재정서에 밝힌 바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5.31]

제72조(대가의 공탁) 제70조제2항제2호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 대가에 대하여 제106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73조(재정의 실효 등) ① 제70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적으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재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70조제1항에 따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0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실시권을 재정한 사유가 없어지고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제70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때 최초 지급분 후의 지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제51조(재정의 취소신청)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재정의 취소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52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9조에 따라 재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③ 제2항의 경우에 제68조제6항, 제69조, 제70조제1항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74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5.31]

제75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104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53조(재정의 취소결정)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및 품종보호권 등록연월일
2. 보호품종의 명칭
3. 품종보호권자 및 재정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4. 품종보호권자 및 재정을 받은 자의 대리인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정내용 및 재정연월일
6. 재정취소의 주문 및 그 이유
7. 재정취소연월일

[전문개정 2010.9.1]

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5.31]

제76조(품종보호권 등의 포기 제한) ① 품종보호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제62조제4항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품종보호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62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5.31]

제77조(포기의 효력)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78조(질권)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5.31]

제79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보호품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80조(품종보호권의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

제54조(품종보호권의 취소) ① 법 제80조제3항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5조 또는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2. 제83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13조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품종보호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8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소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이 없으면 품종보호권은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82조(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83조(보호품종 유지 의무) ① 품종보호권자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취소의 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5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2. 품종보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보호권자의 대리인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보호권 취소의 주문 및 그 이유
5. 품종보호권 취소연월일

[전문개정 2010.9.1]

제55조(품종보호권의 소멸공고)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81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동안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당시의 그 보호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시험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6절 품종보호권자의 보호 <개정 2010.5.31>

제84조(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와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85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2.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5.31]

제86조(손해배상청구권) ①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8조 및 제13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87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88조(품종보호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게는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89조(품종보호의 표시)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품종이 보호품종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90조(거짓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보호품종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

제56조(품종보호의 표시)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법 제89조에 따라 해당 보호품종의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에 "품종보호"라는 문자와 그 품종보호권 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

표찰(標札),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5.31]

제7절 심판 <개정 2010.5.31>

제91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①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를 둔다.
② 심판위원회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과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을 두되, 심판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③ 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92조 삭제 <2007.8.3>

제93조(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37조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 또는 제80조에 따른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94조(품종보호의 무효심판) ①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품종보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1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심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2.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한 경우

제37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8명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심판위원회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5절 심판 및 재심

제57조(심판청구서) 법 제93조 또는 제94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58조(심판번호의 부여 등)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제57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에 공고함으로써 서면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4. 품종보호된 후 그 품종보호권자가 제18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가질 수 없는 자가 되거나 그 품종보호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③ 품종보호권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품종보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품종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품종보호권은 그 품종보호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해당 품종의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와 그 밖에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95조(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품종명칭
3. 품종보호 출원일 및 품종보호 출원번호
4. 심사관의 거절결정일·품종보호결정일 또는 취소결정일
5.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청구의 이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31]

제96조(심판위원) ①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95

제38조(심판위원의 자격) ① 법 제96조제3항에

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판위원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③ 심판위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97조(심판위원의 지정 등) ①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98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위원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심판위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위원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98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99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사규정 준용) 제93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29조·제32조·제37조제2항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00조(「특허법」의 준용) ① 제93조와 제94조에 따른 심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9조, 제141조, 제142조, 제147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터 제160조까지, 제

따라 심판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다.
1.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사람
2. 특허청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심판위원의 연수과정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9조(간사) ① 심판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59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

161조제1항·제3항, 제162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1조, 제172조 및 제17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5.31>

②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의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제94조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본다. <개정 2010.5.31>

③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1호의 "제140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은 "제95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제82조"는 "제160조"로 본다. <개정 2010.5.31>

④ 삭제 <2007.8.3>

⑤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65조제1항의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은 "제94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의 "제132조의3·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제93조"로, 같은 조 제7항의 "변리사"는 "자"로 본다. <개정 2010.5.31>

⑥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1조의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제93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 <개정 2010.5.31>

⑦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6조제1항의 "제132조의3"은 "제93조"로 본다. <개정 2010.5.31>

[제목개정 2010.5.31]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60조(증빙자료의 첨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에 따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서면인 때에는 그 등본을, 물건인 때에는 그 실물이나 실물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61조(심판위원의 제척신청서 등)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9조 또는 제150조제1항에 따라 심판위원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62조(심판참가 신청서)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심판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63조(구두심리의 방법) 구두심리에 있어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4조(의견서의 제출) 법 제100조에 따라 준용하는 「특허법」 제156조제2항 또는 제157조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부본 1부
2.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65조(증거보전신청)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66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67조(심리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 전에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9.1]

제68조(심리재개신청) ①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판장은 심리의 재개가 있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69조(심판의 결정서) 심판위원은 심판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참가인(참가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참가인의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연월일

제8절 재심 및 소송 <개정 2010.5.31>

제101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02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속임수로써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0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실시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품종보호권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품종보호 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0.5.31]

제104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03조 각 호

제70조(심판비용)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심판에 관한 비용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그 청구서에 필요한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71조(재심청구서)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0.5.31]

제105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이나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⑥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65조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이나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⑦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106조(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① 제70조제2항제2호의 대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재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에서는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07조(「특허법」 등의 준용) ① 품종보호에 관한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0조, 제18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품종보호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7조, 제188조 및 제18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특허법」 제187조 본문의 "특허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같은 조 단서의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제1항·제137조제1항·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은 "제94조제1항"으로, 「특허법」 제189조제1항의 "제186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5.31]

제3장 품종의 명칭 <개정 2010.5.31>

제108조(품종명칭) ① 다음 각 호의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
2. 제115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올리기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
3. 제138조제3항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

② 대한민국이나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09조(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제111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숫자나 기호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2.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의 수확물의 품질·수확량·생산시기·생산방법·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3. 해당 품종이 속한 작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4.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5. 작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작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6.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7.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9.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전문개정 2010.5.31]

제110조(선출원) ① 같은 품종명칭에 대하여 둘 이상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품종명칭 등록을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명

제4장 품종명칭

제83조(협의결과의 신고) 법 제1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신고하려는

칭에 대하여 품종명칭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11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 ① 품종명칭 등록을 받으려는 자(이하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0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서,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서,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의 생산 또는 수입 판매 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출원된 품종명칭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2. 제10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0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10조에 따라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는 동일 품종명칭에 대한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성립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84조(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의 통지)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있으면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일을 적은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통지서를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85조(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 법 제111조제5항 또는 제113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출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86조(품종명칭 등록출원공고) ① 법 제111조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연월일
2.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5. 제1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품종목록 등재 신청이 거절된 경우

⑤ 심사관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거절하려 할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보하여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⑥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가 있으면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및 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을 지체 없이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11조의2(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제111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31]

제111조의3(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111조제7항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명칭 등록출원품종의 명칭
4.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의 대리인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담당 심사관
6. 품종명칭 등록출원공고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공고연월일

②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공고일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86조의2(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법 제111조의2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본 1부
2.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

지난 후 30일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31]

제111조의4(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관은 제111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품종명칭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같은 이유로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5.31]

제111조의5(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출원 공고 후 제1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한 경우로서 제111조제7항에 따른 품

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0.9.1]

제86조의3(답변서의 제출) 법 제111조의4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0.9.1]

제86조의4(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심사관은 법 제111조의4제2항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품종명칭 등록출원연월일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품종의 명칭
2.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명칭 등록출원공고번호 및 품종명칭등록출원공고연월일
5. 이의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이의결정연월일

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 등록 이의신청인에게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경우에는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5.31]

제111조의6(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경합) ① 심사관은 둘 이상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둘 이상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그 거절결정 등본을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31]

제111조의7(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11조의2부터 제111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5.31]

제112조(품종명칭의 사용 등) ① 누구든지 제111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품종(제55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보호품종은 제외한다)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9.1]

제87조(거절결정 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지 또는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그 통지서 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11조제5항에 따른 거절이유
2. 법 제111조제6항에 따른 출원공고
3. 법 제111조의5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

② 심사관은 법 제111조제5항에 따른 거절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거절결정서 또는 품종명칭 등록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8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
2. 품종명칭 등록출원공고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공고연월일(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거절이유 통지연월일(거절결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결정연월일

[전문개정 2010.9.1]

제88조(심사규정의 준용) 법 제111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0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89조(품종명칭 등록원부) 법 제111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원부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

② 누구든지 제111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할 수 없다.

③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또는 그 품종의 승계인은 제111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명칭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품종명칭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13조(품종명칭의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11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유가 발견된 경우
2. 품종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을 취소하려 할 때에는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에게 취소사유를 알리고 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새로운 품종명칭에 관하여는 제111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1조의2부터 제111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4장 품종성능의 관리 <개정 2010.5.31>

제114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농업, 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품종목록에 올릴 대상은 벼, 보리, 콩, 옥수수,

제40조(품종명칭의 취소) 법 제1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9.1]

감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로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15조(품종목록의 등재신청) ① 제114조에 따른 작물의 품종을 품종목록에 올리려는 자(이하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해당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16조(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5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한 품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이 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려 할 때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기간

제5장 품종성능의 관리

제90조(품종목록 등재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하려는 자(이하 "품종목록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재배시험 적기 등을 고려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종목록 등재신청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환경 위해성 심사서 1부(유전자 변형품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91조(품종성능의 심사기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심사의 종류
2. 재배시험기간
3. 재배시험지역
4. 표준품종
5. 평가형질
6. 평가기준

[전문개정 2010.9.1]

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 품종목록 등재신청에 대하여 거절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을 품종목록에 올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17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6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올린 경우에는 해당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종류, 품종명칭, 제118조에 따른 등재의 유효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8조제2항에 따라 등재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5.31]

제92조(의견서) 법 제116조제3항 또는 법 제11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93조(품종목록의 서식) 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품종목록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

제94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법 제117조 전단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의 대리인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육성자와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5. 품종의 명칭
6. 품종육성과정의 설명
7. 품종의 성능 및 시험성적
8. 재배적응지역

제118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① 제116조제4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그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의하여 계속 연장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연장신청 품종이 품종목록 등재 당시의 품종성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5.31]

제119조(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종의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품종의 성능이 제116조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2. 해당 품종의 재배로 인하여 환경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3. 제1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품종명칭이 취소되었을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목록 등재를 받았을 때
5. 같은 품종이 둘 이상의 품종명칭으로 중복
9. 품종목록 등재번호 및 품종목록 등재연월일
10.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전문개정 2010.9.1]

제95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하여 등재되었을 때(가장 먼저 등재된 품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20조(품종목록의 보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중 해당 품종에 관련된 부분을 제118조에 따른 해당 품종의 등재 유효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21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6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올린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이하 "농업단체등"이라 한다)
5.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민

[전문개정 2010.5.31]

제5장 종자의 보증 <개정 2010.5.31>

제124조(종자보증의 구분) 종자의 보증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하는 보증(이하 "국가보증"이라 한다)과 종자관리사가 하는 보증(이하 "

제3장 품종성능의 관리

제41조(종자생산 대행 농업단체등의 범위) 법 제1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전문개정 2010.9.1]

제4장 종자의 보증

제96조(종자생산의 대행자격) 법 제121조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종자업자
2. 해당 작물 재배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농어민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인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나 관할 국립종자원 지원장의 확인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10.9.1]

제97조 삭제 <1999.8.6>

제98조 삭제 <1999.8.6>

제99조 삭제 <1999.8.6>

제100조 삭제 <1999.8.6>

제6장 종자의 보증

제101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자체보증"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25조(국가보증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제121조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2.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제114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이하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이라 한다)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보증한 종자에 대하여는 국가보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126조(자체보증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1.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2.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외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자체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5.31]

제43조(국가보증 대상 농업단체등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제2호 및 제126조제1호·제2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 및 법 제137조제4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란 각각 제41조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44조(국제종자검정기관) 법 제1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의 회원기관
2. 국제종자검정가협회(AOSA)의 회원기관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종자검정기관

[전문개정 2010.9.1]

[전문개정 2010.9.1]

제127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①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관리사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오(過誤)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종자관리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128조(포장검사) ①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제45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종자관리사는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종자산업기사 또는 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해당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해당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버섯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01조의2(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종자관리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 사본 1부
2.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1부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2매

② 제1항에 따라 종자관리사 등록신청을 받은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그 신청인이 영 제4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의 종자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01조의3(종자관리사 등록증의 정정교부신청 등) ① 종자관리사 등록증의 정정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종자관리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02조(검사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이하 "포장검사"라 한다),

장관이나 종자관리사로부터 1회 이상 포장검사(圃場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종단계별 포장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29조(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의 작물과 교잡(交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잡 위험이 있는 품종이나 작물의 재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격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30조(종자검사 등) ①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로부터 제128조제2항에 따른 포장검사의 기준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에 대하여는 종자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자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종자검사를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채종단계별 종자검사 또는 재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자검사(이하 "종자검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이하 "재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용어의 정의
2. 작물별 포장검사규격
3. 작물별 종자검사규격
4. 작물별 재검사규격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전수 또는 표본추출검사방법에 따른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종자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기준 및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

제103조(검사신청 등) ① 법 제128조 및 법 제130조에 따른 포장검사 또는 종자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산림청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04조(재검사신청 등) ①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4호서식의 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

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가 재검사를 받기 전의 검사결과와 달라서 합격 또는 불합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재검사의 결과를 재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31조(보증표시 등) ① 제128조에 따른 포장검사에 합격하여 제130조에 따른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해당 보증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는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표시 및 보증의 유효기간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32조 삭제 <1999.1.21>

제133조(보증서의 발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는 제1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증표시한 보증종자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자가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면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05조(보증표시) 법 제131조제2항에 따른 보증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9.1]

제106조(보증의 유효기간) 법 제131조제2항에 따른 보증의 유효기간은 보증종자의 포장일부터 기산(起算)하며 작물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채소: 2년
2. 버섯: 1개월
3. 감자·고구마: 2개월
4. 맥류·콩: 6개월
5. 그 밖의 작물: 1년

[전문개정 2010.9.1]

제107조(보증서의 발급) ① 법 제133조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보증서 발급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보증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34조(사후관리시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보증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35조(보증의 실효) 보증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종자보증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1. 제1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였을 때
2. 제131조제2항에 따른 보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3.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었을 때. 다만, 해당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나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았을 때

[전문개정 2010.5.31]

제136조(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제135조제3호 단서에 따라 분포장한 종자의 보증표시는 분포장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해당 품종의 보증표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6장 종자의 유통 <개정 2010.5.31>

제137조(종자업의 등록) 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제5장 종자의 유통

제46조(종자업의 시설기준) 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47조(종자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37조제1항

제108조(사후관리시험)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검사항목
2. 검사시기
3. 검사횟수
4. 검사방법

[전문개정 2010.9.1]

제7장 종자의 유통

제109조(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47조

에 따라 종자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및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을 신청받은 시장·군수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자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종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② 제1항에 따라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31>

제48조(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법 제1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작물을 말한다.

1. 화훼
2. 사료작물(사료용으로 하는 벼·보리·콩·옥수수 및 감자를 포함한다)
3. 목초작물
4. 특용작물
5. 뽕
6. 임목
7. 해조류
8. 벼·보리·콩·옥수수 및 감자를 제외한 식량작물
9.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자두·매실·참다래 및 감귤을 제외한 과수
10. 무·배추·양배추·고추·토마토·오이·참외·수박·호박·파·양파·당근·상추 및 시금치를 제외한 채소류

제1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은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

제110조(종자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①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통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자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통지를 받은 시장·군수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종자업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10조의2(종자업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종자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종자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③ 삭제 <1999.1.21>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종자의 증식·생산·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31>

[제목개정 2010.5.31]

제138조(종자의 판매 등) 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 또는 제121조에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4조에 따른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1. 1대 잡종의 친(親) 또는 합성품종의 친(親)으로만 쓰이는 경우
2. 증식 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3.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4.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5.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종자를 증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육성자가 직접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6. 그 밖에 종자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9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이라

11. 양송이·느타리버섯·뽕나무버섯·영지버섯·만가닥버섯·잎새버섯·목이버섯·팽이버섯·복령·버들송이 및 표고버섯을 제외한 버섯류

[전문개정 2010.9.1]

제49조 삭제 <1999.6.30>

제111조(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① 법 제138조제3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고품종의 사진 또는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영양체 및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환경 위해성 심사서 1부(유전자 변형품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사합격증

하더라도 취소일 전에 생산되었거나 생산 중인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취소일의 다음 해까지 판매하거나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 또는 보급 대상지역 및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의 종자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 및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종자
2. 제116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전문개정 2010.5.31]

제139조(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는 종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
2.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제82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보고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종자업자가 종자업 등록을 한 후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5. 종자업자가 제13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명서 1부(같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품만 해당한다)

6.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생산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해당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면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12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39조제4항에 따른 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군수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의 명칭·처분내용·처분기간 등이 적힌 게시문을 해당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6. 제1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7. 제1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8. 제14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
9. 제140조제3항에 따라 수출·수입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수입하거나, 수입되어 국내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국내유통한 경우
10. 제1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한 경우
11. 제143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12. 제1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 또는 종자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3. 제145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② 시장·군수는 종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할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종자업을 재등록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40조(종자의 수출·수입) 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① 법 제140조제3항에 따라 종자의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제113조(수출·수입신고) ① 법 제1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31>

② 삭제 <2010.5.31>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의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④ 삭제 <1999.1.21>

[제목개정 2010.5.31]

제141조(수입적응성시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된 종자에 유해한 잡초종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수입된 종자의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태계 등 기존의 국내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입된 종자의 재배로 인하여 특정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입된 종자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재래종 종자 또는 국내의 희소한 기본종자의 무분별한 수출 등으로 국내 유전자원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한 잡초종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정 병해충의 종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9.1]

의 신고서(수입의 경우에는 영 제44조에 따른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발급한 종자보증서를, 처음으로 수입되는 종자인 경우에는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자를 수입하여 채종한 후 종자의 용도로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출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②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14조(시험·연구기관 등) ① 법 제1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자의 수출·수입신고가 면제되는 시험·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
2. 농업계 대학
3. 농업계 전문대학
4.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의 시험·연구기관
5. 영 제41조에 따른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의 시험·연구기관
6.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종자업자 소속의 시험·연구기관

② 법 제1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자의 수출·수입신고가 면제되는 종자의 수량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0.9.1]

제115조 삭제 <1999.8.6>

제116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

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 결과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품종의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142조(종자의 수입 추천) ①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추천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추천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신청서에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 또는 제130조에 따른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17조(심사기준)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는 제9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8.3.3>

[전문개정 2008.2.4]

제118조(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 등) 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대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 및 구비서류 각 1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추천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수입추천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19조(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물량 등)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의 물량은 양허관세 추천계획의 범위내로 하며,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신청량이 계획물량을 초과할

제143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생산 연도, 포장 연월, 종자의 발아(發芽) 보증시한과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44조(유통종자에 대한 제한 행위) 제143조에 따른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5.31]

때에는 수입추천대상자별로 계획물량을 배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

제120조(사후보고)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양허관세적용추천건별 도착 및 통관내역을 매 다음달 5일까지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법 제143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품종의 명칭
2. 종자의 무게 또는 입수(粒數)
3. 종자의 발아율(버섯종균의 경우에는 종균접종일)
4.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수입종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를 해외에서 채종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재배 시 특히 주의할 사항
6. 종자업 등록번호(종자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7.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품종보호 등록번호(보호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번호(생산판매신고 품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규격묘 표시(묘목의 경우만 해당하며, 규격묘 품질표지 및 규격묘 품질확인 표지에 의한 표시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유전자변형종자표시(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표시방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

②삭제 <2004.3.12>

제122조 삭제 <1999.8.6>

제123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145조제5항 및 제112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

제124조(종자시료의 보관) ①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종자의 보관·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관·관리책임자는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종자의 보관 및 관리방법 등에 따라 종자시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종자시료의 제출 시기·방법 등은 제28조제1호 단서, 제90조제1호 단서 및 제11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

제145조(종자의 유통 조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량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자업자나 종자매매업자의 영업장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종자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종자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수거한 종자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게 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수거된 종자를 1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한 종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자는 조사를 마친 후 제4항을 준용하여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종자를 종자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가 인수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

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 목적·시간 및 조사자 신분 등의 사항을 서면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종자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46조 삭제 <1999.1.21>

제147조(종자시료의 보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자는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 및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의 종자
2. 제116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3. 제138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품종의 종자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48조(유통종자의 분쟁) ① 유통 중인 종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당사자는 해당 품종의 종자를 보증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에게 해당 품종의 종자보증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분쟁의 대상종자와 제147조에 따라 보관·관리 중인 종자시료의 대비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제51조(유통종자의 분쟁) 법 제148조제4항 전단에서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공동 시료채취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시료채취 현장에 동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공동 시료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제125조(유통종자의 분쟁에 대한 대비시험신청)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대비시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대비시험신청서에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26조(보상청구) ① 법 제148조제8항에 따라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

③ 분쟁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대비시험을 신청할 때에는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한 후 그 종자시료를 밀봉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분쟁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대비시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의 신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시료를 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대비시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비시험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에게 제6항에 따른 대비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유통 중인 종자와 관련한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종자업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7장 삭제 <2000.1.21>

제149조 삭제 <2000.1.21>

제150조 삭제 <2000.1.21>

[본조신설 2010.9.1]

제6장 삭제 <2001.6.30>

제53조 삭제 <2001.6.30>

제54조 삭제 <2001.6.30>

제55조 삭제 <2001.6.30>

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출내역서 1부
2. 법 제148조제6항에 따른 대비시험 결과통보서 부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종자업자는 보상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상청구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종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에 따른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그 부본을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51조 삭제 <2000.1.21>

제152조 삭제 <2000.1.21>

제153조 삭제 <2000.1.21>

제154조 삭제 <2000.1.21>

제155조 삭제 <2000.1.21>

제156조 삭제 <2000.1.21>

제157조 삭제 <2000.1.21>

제8장 보칙 <개정 2010.5.31>

제158조(종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종자위원회를 둔다.

1. 종자산업의 육성,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품종목록제도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
2. 제6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심의
3.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

② 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91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종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자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

제56조 삭제 <2001.6.30>

제57조 삭제 <2001.6.30>

제58조 삭제 <2001.6.30>

제59조 삭제 <2001.6.30>

제60조 삭제 <2001.6.30>

제61조 삭제 <2001.6.30>

제62조 삭제 <2001.6.30>

제63조 삭제 <2001.6.30>

제64조 삭제 <2001.6.30>

제65조 삭제 <2001.6.30>

제7장 보칙 <개정 2010.9.1>

제66조 삭제 <2008.1.31>

제67조(위원의 신분보장) 법 제15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0.9.1]

제6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69조(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제8장 보칙 <개정 2010.9.1>

제127조(공보) 법 제34조·제37조·제46조·제54조·제55조 및 제111조에 따른 공보는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

다.

1.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종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158조의2(분쟁의 조정) ① 품종보호권 침해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종자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받은 종자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의 조정부에 회부하고, 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종자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7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9.1]

제71조(간사) 위원회의 간사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31]

제71조의2 삭제 <2010.9.1>

제71조의3(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1.31]

제127조의2(분쟁의 조정) ① 법 제15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조정신청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종자위원회는 법 제158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조정 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당사자에게 그 연장사유와 연장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에 따라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똑같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부담비용의 산정 및 납부방법, 기간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58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종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에서 제척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가. 종자위원
   나. 종자위원의 배우자
   다. 종자위원의 배우자였던 사람
2.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종자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종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종자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종자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③ 법 제158조의2제5항에 따른 부담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재배시험 비용: 재료비,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비
2. 유전자 검사비용: 검사시약 및 인건비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58조의4(자료요청 등) ① 종자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유전자 검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58조의5(출석의 요구) ① 종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5.31]

제158조의6(직권조정결정) ① 종자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침해행위의 중지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유사한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자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31]

[종전 제158조의6은 제158조의7로 이동 <2010.5.31>]

제158조의7(조정의 성립 등)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31]

[제158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58조의7은 제158조의8로 이동 <2010.5.31>]

제158조의8(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운영 등) 종자위원회와 조정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58조의7에서 이동 <2010.5.31>]

제71조의4(조정부의 구성·운영) ① 법 제158조의8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종자위원 중에서 1명의 조정부장과 2명의 조정위원을 지명한다.

② 조정부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부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

다.
[전문개정 2010.9.1]

제71조의5(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조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59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7조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자격 취소
2. 제1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10.5.31]

제160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4항에 따라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하려는 자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
4. 제53조에 따른 등록(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5. 제68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하려는 자
6.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7. 제101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8. 제115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하려는 자
9. 제118조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

10. 제1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11. 제133조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2. 제138조제3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13. 제1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으려는 자
14.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61조(수수료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62조(수수료의 반환) 납부된 수수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에만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63조(사용문자) 이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31]

제128조(사용문자) 법 제163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를 영어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음역하여 병기하여야 한다.

1. 학명인 경우
2. 품종명칭인 경우
3. 전문용어로서 한글로 표기할 적절한 용어가 없는 경우
4. 외국인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인 경우
5. 외국에 있는 주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인 경우

제164조(서류의 보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해당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 출원 관련 서류, 품종보호권 관련 서류, 제35조 또는 제83조제2항에 따라 한 시험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해당 품종보호 출원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서류인 경우

[전문개정 2010.5.31]

제165조(종자산업의 육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진흥과 우수품종의 육성·생산·판매 또는 종자보급을 위한 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② 삭제 <2010.5.31>

③ 삭제 <2010.5.31>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21조 각 호에 따른 종자생산의 대행자에게 종자의 생산·보급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⑤ 삭제 <2010.5.31>

[제목개정 2010.5.31]

[전문개정 2010.9.1]

제129조(서류의 열람 등) 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 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6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7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림용 종자 및 산림용 묘목(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과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기간의 연장
2. 법 제7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명령
3. 법 제8조에 따른 절차의 무효처분 및 무효처분의 취소
4.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신고명령
5.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승계인의 신고접수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8.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의 등록
10.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명령

제130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 법 제166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 관련 협회

[전문개정 2010.9.1]

제131조 삭제 <2010.9.1>

1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1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1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1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
15.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16.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 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17.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징수
18.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의 등록
19. 법 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의 발행
20. 법 제55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공보게재 및 품종보호권 등록증 발급
21.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그 밖에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접수
22. 법 제6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23. 법 제69조에 따른 재정청구서의 송달
24. 법 제71조에 따른 재정서 등본의 송달
25.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처분
26.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27. 법 제82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명령
28.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 및 이에 필요한 시험 실시
29.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접수

30. 법 제111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접수
31. 법 제111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32. 법 제111조의4제4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본의 송달
33. 법 제111조의5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4. 법 제111조의6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5.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 제출명령
36. 법 제115조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의 접수
37. 법 제116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품종목록 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에의 등재 등
38. 법 제117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39. 법 제118조제3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의 접수
40. 법 제119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처분
41. 법 제120조에 따른 품종목록의 보존
42.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자격취소처분, 자격정지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과 등록증 발급
4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
44. 법 제130조에 따른 종자검사 및 재검사
45. 법 제133조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
46.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실시

47. 법 제138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 보급의 허용
48. 법 제138조제3항에 따른 품종 종자판매 신고의 접수
49. 법 제1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자의 수출·수입의 신고접수
50. 법 제140조제3항에 따른 종자의 수출·수입 제한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51.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
52. 법 제145조에 따른 종자의 유통 조사 등
53. 법 제147조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관리
54. 법 제148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대비시험의 실시 및 자료제출의 요구 등
55. 법 제159조제1호에 따른 청문
56. 법 제16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57. 법 제164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
58. 법 제17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59. 제74조제9항에 따른 장소변경 신고의 접수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수산식물종자 및 국가에서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종자(이하 "정부보급종"이라 한다)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8조에 따른 포장검사
2. 법 제130조에 따른 종자검사 및 재검사

3. 법 제133조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기간의 연장
2. 법 제7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명령
3. 법 제8조에 따른 절차의 무효처분 및 무효처분의 취소
4.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신고명령
5.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승계인의 신고접수
6.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7.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의 등록
8.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명령
9.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10.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11.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1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
13.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14.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 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15.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징수
16.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의 등록
17. 법 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의 발행

18. 법 제55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공보게재 및 품종보호권 등록증 발급
19.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그 밖에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접수
20. 법 제6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21. 법 제69조에 따른 재정청구서의 송달
22. 법 제71조에 따른 재정서 등본의 송달
23.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처분
24.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25. 법 제82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명령
26.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 및 이에 필요한 시험 실시
27.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접수
28. 법 제111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접수
29. 법 제111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30. 법 제111조의4제4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본의 송달
31. 법 제111조의5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2. 법 제111조의6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3.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 제출명령
34. 법 제115조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의 접수

35. 법 제116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품종목록 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에의 등재 등
36. 법 제117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37. 법 제118조제3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38. 법 제119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처분
39. 법 제120조에 따른 품종목록의 보존
40.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자격취소처분, 자격정지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과 등록증 발급
41.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정부보급종만 해당한다)
42. 법 제130조에 따른 종자검사 및 재검사(정부보급종만 해당한다)
43. 법 제133조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정부보급종만 해당한다)
44.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실시
45. 법 제138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 보급의 허용
46. 법 제138조제3항에 따른 품종 종자판매 신고의 접수
47. 법 제1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자의 수출·수입의 신고접수
48. 법 제140조제3항에 따른 종자의 수출·수입 제한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49. 법 제145조에 따른 종자의 유통 조사 등
50. 법 제147조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관리
51. 법 제148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대비시험

의 실시 및 자료제출의 요구 등
52. 법 제159조제1호에 따른 청문
53. 법 제16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54. 법 제164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
55. 법 제17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56. 제74조제9항에 따른 장소변경 신고의 접수

⑤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에 관한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6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용 종자, 뽕나무 묘목, 연초(煙草) 종자, 수산식물 종자 및 인삼 종자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담배사업법」, 「수산업법」 및 「인삼산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5.31]

제168조(「특허법」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서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및 제22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73조(송달대상 서류) 법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8조에 따라 송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무효처분통지서로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74조(서류의 송달 등) ① 법 또는 제73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일 및 성명을 기재한 수령증을 받아 비치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품종보호권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④ 송달을 할 때에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⑥ 다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⑦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⑧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하여야 한다.
⑨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⑩ 송달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⑪ 법 또는 제73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발송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

제8장 벌칙 <신설 2010.9.1>

제9장 벌칙 <개정 2010.5.31>

제169조(침해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 자. 다만, 해당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170조(위증죄) ①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사건의 결정 또는 심결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171조(거짓표시의 죄) 제9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72조(비밀누설죄 등) 농림수산식품부 직원(제166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심판위원회 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73조(무등록종자업의 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품종 외의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33조에 따른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3. 제1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
4. 제1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5. 제1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1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을 계속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을 계속 한 자
7. 제1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종자를 유통시킨 자

8. 제1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종자에 대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
9. 제1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10. 제148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0.5.31]

제1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9조제1항, 제171조 또는 제17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31]

제175조(몰수 등) ① 법원은 제16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내줄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1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9.1]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2. 제13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종자보증과 관련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14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4. 제143조를 위반하여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5. 제145조제1항에 따른 조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44조를 위반하여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82조의 실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제8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4.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

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 진술, 증언, 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5.31]

부 칙 <제10332호, 2010. 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통지서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보정명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품종보호 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품종보호 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자시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항제9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종보호를 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11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종목록을 등재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제1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것

부 칙 <제15576호, 199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주요농작물종자법시행령
2. 종묘관리법시행령

③(종자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종묘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종묘업 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자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시행령 또는 종묘관리법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5750호, 1998. 4. 1> (한국은행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72호, 1998. 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주요농작물종자법시행규칙
2. 종묘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시행규칙 또는 종묘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품종생산·판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제2조제1호 또는 종묘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물외의 작물의 품종을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생산·판매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일부터 2년간 사진 및 종자시료의 제출을 유예한다.

제5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제2조제1호 또는 종묘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

부터 적용한다.

④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자시료를 보관·관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거절결정의 통지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품종명칭 등록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종명칭 등록을 출원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종자보증 관련 검사서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증한 종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종자보증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성자가 직접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유통종자의 분쟁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유통종자의 분쟁부터 적용한다.

제12조(침해분쟁 조정 관련 조정기간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의2제4항 단서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조정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직권조정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중 "한국은행본점"을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57조중 "한국은행(국고거래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국은행(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8조제4항중 "한국은행본점"을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로 한다.

<16>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제15864호, 1998. 8.11>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중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25호, 제30호 내지 제43호, 제45호 내지 제47호, 제49호 내지 제51호, 제53호 내지 제58호, 제60호 내지 제65호의 권한을 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 칙 <제16127호, 1999. 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에 의한 작물의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한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 이 규칙에 의한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한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제2조제1호 또는 종묘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물외의 작물의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한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 이 규칙에 의한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한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또는 종묘관리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산물검사규격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단서중 "주요농작물종자법시행규칙 제4조"를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제102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시행규칙 또는 종묘관리법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312호, 1999. 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35호, 1999. 8. 6>

하는 조정부터 적용한다.

제14조(심판 청구기간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청구된 심판사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품종보호 출원공고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품종보호 출원되어 심사 중인 품종에 관하여는 제19조 단서, 제20조 단서,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1항, 제38조,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제95조 및 제16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거절사정 및 품종보호사정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에 따른 "거절사정"은 "거절결정"으로, 종전의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사정"은 "품종보호결정"으로 각각 본다.

제17조(종자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7조 또는 제139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한 종자업 등록·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는 이 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수입종자에 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 당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종자에 관하여는 제1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6442호, 1999. 6.30>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757호, 2000. 3.24>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⑤내지 <18>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제16932호, 2000. 8. 1>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25호, 제30호 내지 제42호, 제45호, 제47호, 제49호 내지 제51호, 제53호 내지 제65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제17280호, 2001. 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60호, 2000. 3.27>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종자산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③내지 ⑤생략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및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396호, 2001.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63호, 2004. 3.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통종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후 최초로 품종보호출원된 종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분부터 적용한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8311호, 2004. 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8312호, 2004. 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513호, 2006. 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4>생략
<195>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국가공무원"을 각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6>내지 <241>생략

부 칙 <제19639호, 2006. 8. 4> (산림자다.

부 칙 <제1582호, 2008. 2.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 제104조 및 제107조의 개정규정 중 정부보급종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종보호 대상작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품종보호 대상작물은 제20조제2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검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검사기준은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보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가 보증의 유효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10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되거나 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심사기준은 제1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28>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제20402호, 2007.11.30>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종자관리소장(이하 "종자관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제20506호, 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575호, 2008. 1.31>

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중 "해양수산부장관·농촌진흥청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산림청장"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산림청장"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 본문,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각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정부보급종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제72조제4항제42호의2부터 제4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품종보호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민의 자가채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최초로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심사관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제2항(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제34조제2항(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5조(국제종자검정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제3호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한 외국의 종자검정기관은 제4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외국의 종자검정기관으로 본다.

제6조(수출입종자의 국내 유통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0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등으로 본다.

부 칙 <제20677호, 2008. 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호 외의 부분,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65조,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제85조,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 제10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1조의3제1항·제2항,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24조제1항·제2항, 제125조, 제126조제3항, 제127조 및 제129조 중 "해양수산부장관·국립종자원장"을 각각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20조제28호, 제22조, 제96조제2호, 제121조제1항제12호 및 제130조제7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제3항 및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7조 및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중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KOREA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대한민국 산림청"을 "대한민국 산림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 Ministry Official Seal 산림청장"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 서식 중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MINISTER, THE KOREA MINISTRY OF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농림부·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농림부·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용묘목(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과 해조류 종자"를 "산림용묘목(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종자(이하 "정부보급종"이라 한다) 및 해조류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는 종자(이하 "정부보급종"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용종자 및 해조류 종자"를 "산림용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MARITIME AFFAIRS & FISHERIES 국립종자원장"을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 산림 청 장" 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부터 제31호서식까지,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2호의2서식, 별지 제52호의4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2의2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및 별지 제74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 국립종자원장" 을 각각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을 각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별지 제52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 국립종자원"을 각각 "국립종자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뒤쪽, 별지 제15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의 뒤쪽,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의 뒤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2호의2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71호서식의 뒤쪽 "해양수산부, 국립종자원" 을 각각 "국립종자원"으로 한다.

제4조,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9조, 제47조제1항, 제71조의2제1항 및 제75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1조 후단,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4조제3호, 제50조제1항제1호·제2항, 제71조의4제2항, 제74조제9항·제11항 및 제75조제1항·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53> 부터 <59> 까지 생략

부 칙 <제22365호, 2010. 9.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자관리사 보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표고버섯의 종자에 대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8조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자관리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6> 부터 <63> 까지 생략

부 칙 <제55호,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16> 까지 생략

부 칙 <제145호, 2010.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자검사를 받았거나 종자검사를 신청한 종자에 대한 보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10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중자산업법시행령·시행규칙 별표

《 시행령 별표 》

[별 표1] <개정 2010.9.1>

종자업의 시설기준(제46조 및 제47조제1항관련)

1. 채 소

구 분	철재하우스	육종포장	실험실
규 모	330㎡이상	30ａ이상	-
장 비	정선기·건조기·포장기·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임차사용을 포함한다)		

비고 : 육묘만을 하는 경우에는 육종포장 및 장비를 제외한다

2. 과 수

구 분	육묘포장	대목포장	모 수
규 모	100a이상	50a이상	결실되는 나무 품종당 5주이상
구비조건	-	자가 소유일 것	자가 소유일 것

비 고: 가. 감귤의 육묘만을 하는 경우에는 대목포장을 제외한다.

나.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경우에는 대목포장의 자가 소유를 갈음하여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종자 관련 검정기관이 병해충이 없음을 인정한 모수에서 생산된 접수(接樹)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자가 소유의 모수를 구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화 훼

구 분	철재하우스	육종포장	실 험 실
규 모	330㎡이상	30 a이상	100㎡이상
구비조건	-	-	현미경(500배이상) 1대
그 밖의 장비	정선기·건조기 및 포장기 각 1대이상(종자류의 경우에 한한다)		

비고 : 가. 교배 등의 방법으로 육종포장에서만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을 제외한다.

나. 조직배양 등의 방법으로 실험실에서만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철재하우스 및 육종포장을 제외한다.

4. 버 섯

구 분	실험실	준비실	살균실	냉각실	접종실	배양실	저장실
규 모	16.5㎡이상	49.5㎡이상	23.0㎡이상	16.5㎡이상	13.2㎡이상	165.0㎡이상	33.0㎡이상
구비조건	가. 현미경(1,000배 이상) 1대 이상 나. 냉장고(200ℓ 이상) 1대 이상 다. 소형 고압살균기 1대 이상 라. 항온기 2대 이상 마. 건열 살균기 1대 이상	가. 수도 시설설치 나. 입병기 1대 다. 배합기 1대 라. 자숙솥 1대 (양송이 생산자만 해당한다)	가. 고압살균기 1)압력 : 15~20LPS 2)규모: 1회 600병 이상 나. 보일러: 0.4톤 이상	에어컨시설 또는 냉각시설	가. 무균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시설 나. 자외선 등 설치	실온 20~25℃로 조정할 수 있는 항온장치 시설	실온 1~5℃로 조절할 수 있는 냉각시설

5. 식량작물(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에 한한다)

구 분	철재하우스	육종포장	실험실
규 모	330 ㎡이상	100 a이상	100㎡이상
구비조건	-	-	현미경(1,500배이상) 1대 발아시험기 3대 수분측정기 1대
기타장비	정선기·건조기 및 포장기 각 1대이상		

비고 : 감자의 경우에는 수분측정기 및 건조기를 제외한다

6. 기타(사료작물 및 특용작물등)

구 분	철재하우스	육종포장	실험실
규 모	-	10 a이상	-
장 비	정선기·건조기 및 포장기 각 1대이상(종자류의 경우에 한한다)		

〔별 표 2〕 <개정 2010.9.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5회 이상
가.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6조제3항제1호	50				
나. 법 제82조의 실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6조제3항제2호	50				
다. 법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제8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법 제176조제3항제3호	50				
라. 법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6조제3항제4호	50				
마. 법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 진술, 증언, 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경우	법 제176조제3항제5호	50				
바. 법 제1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176조제1항제1호	300	400	500	700	1,000
사. 법 제13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종자보증과 관련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6조제1항제2호	100	300	500	700	1,000
아. 법 제14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	법 제176조제1항제3호	100	300	500	700	1,000
자. 법 제143조를 위반하여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176조제1항제4호	100	300	500	700	1,000
차. 법 제144조를 위반하여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한 경우	법 제176조제2항	50	100	200	200	200
카.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조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76조제1항제5호	100	300	500	700	1,000

《 시행규칙 별표 》

[별 표 1] <개정 2010.9.1>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0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행정처분의 기준
○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2회 이상 이중취업을 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후 자격정지처분기간 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자 격 취 소
○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 ○ 종자관리사자격과 관련하여 1회 이중취업을 한 경우	자격정지 1년
○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자격정지 6월

[별 표 2] <개정 2010.9.1>

보 증 표 시(제105조 관련)

1. 채종단계별 구분을 요하는 종자

보 증 종 자

원 원 종

분류번호:

종(種)명:

품 종 명:

Lot번 호:

발 아 율(%):

이품종별(%):

유효기간:

수 량(g):

포장일자: 년 월

보증기관(종자관리사):

비 고: 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에는 포장일자란 아래에 「유전자변형종자임」이라고 표시하고, 바탕색은 흰색으로, 대각선은 보라색으로, 글씨는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보 증 종 자

원 종

분류번호:

종(種)명:

품 종 명:

Lot번 호:

발 아 율(%):

이품종별(%):

유효기간:

수 량(g):

포장일자: 년 월

보증기관(종자관리사):

비 고: 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에는 포장일자란 아래에 「유전자변형종자임」이라고 표시하고, 바탕색은 흰색으로, 글씨는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2. 체종단계별 구분을 요하지 아니하는 종자

보 증 종 자

분류번호:

종(種)명:

품 종 명:

Lot번 호:

발 아 율(%):

이품종별(%):

유효기간:

수 량(g):

포장일자: 년 월

보증기관(종자관리사):

비 고: 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에는 포장일자란 아래에 「유전자변형종자임」이라고 표시하고, 바탕색은 청색으로, 글씨는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3. 묘 목

보증번호:

작물명:

품종명:

대목명(臺木名):

유효기간:

생산연도:

이 묘목은 보증기관(종자관리사)이 보증하는 규격묘목임

보증기관(종자관리사):

비 고 : 가. 바탕색은 청색으로, 글씨는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나. 표지크기는 10㎝(가로)×3㎝(세로) 이상으로 한다.

4. 해외수출용 종자

Certified Seed

Republic of Korea

Reference Number:

Species:

Variety Denomination:

Lot Number:

Germination Capacity(%):

Purity(%):

Validity:

Weight(g) or volume:

Date of Packing:

The Official Seed Certifying Agency:

비 고 : 바탕색은 청색으로, 글씨는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별 표 3〕 <개정 2010.9.1>

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1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3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139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법 제82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보고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9조제1항제3호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라. 종자업자가 종자업 등록을 한 후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법 제139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등록취소
마. 종자업자가 법 제13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9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등록취소
바. 법 제1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13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사. 법 제1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법 제13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아. 법 제14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	법 제139조제1항제8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60일
자. 법 제140조제3항에 따라 수출·수입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수입하거나, 수입되어 국내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국내유통한 경우	법 제13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차. 법 제1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한 경우	법 제139조제1항제10호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카. 법 제143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139조제1항제11호	경고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60일
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 또는 종자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39조제1항제12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60일
파. 법 제145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법 제139조제1항제13호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별 표 4] <개정 2010.9.1>

수출·수입신고가 면제되는 종자의 수량(제114조제2항 관련)

작 물 명	품종당 종자수량(kg)
벼	5
보 리	5
콩	5
옥 수 수	5
감 자	50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위 임 장				
수 임 인 (대리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사건의 표 시	⑤출원번호		⑥출 원 일 자	
	⑦심판번호		⑧심판청구일 자	
⑨작물의 명칭				
⑩품종의 명칭				
위 임 인	⑪성 명		⑫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⑬주 소		⑭전 화 번 호	
	⑮사건과의 관 계			
⑯위 임 할 사 항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산 림 청 장 귀하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하며, 타자 또는 컴퓨터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서식 중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서식에서 삭제하고, 신고인·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와 같이 필요하면 해당 “란”을 증설하여 적어야 합니다.
3. 『사건의 표시』 란에는 해당 절차에 관한 사건표시를 다음 예와 같이 적어야 합니다.

[예] 출원번호: 99-○○○○호. 출원일자 : ’99. ○○. ○○

4. “⑨작물의 명칭, ⑩품종의 명칭”란에는 품종보호출원서의 “작물의 명칭” 과 “품종의 명칭”란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위임인』 란의 “⑫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란에는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아니하고 국적을 적어야 합니다.
6.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⑪성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법인의 공식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어야 하고, “⑫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란은 각 법인에게 부여된 출원인코드를 적어야 합니다(처음 출원하여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지 못한 출원인은 “⑫란”을 적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 가 나 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길 동

7. “⑬주소”란에는 위임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완전하게 적고, 반드시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예] ○○도 ○○시(군) ○○동(면) ○○리 ○○번지(△△△-△△△)
※시·도 명칭은 두 자리 약칭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 충청북도 → 충북)

8. 위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번역(음역을 하여야 하고, 훈역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한 위임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어야 하며, 괄호 안에 위임인의 성명 또는 명칭의 원어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9. “⑮사건과의 관계”란에는 출원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 심판청구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과 같이 사건과의 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10. “⑯위임할 사항”란에는 위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11. 위임장에는 원칙적으로 삭제·추가 등 정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나, 부득이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우측 여백에 정정자수를 쓰고 위임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대리인 해임신고서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사건과의 관 계			
대 리 인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전 화 번 호	
사 건 의 표 시	⑩출원번호		⑪출 원 일 자	
	⑫심판번호		⑬심판청구일자	
⑭작 물 의 명 칭				
⑮품 종 의 명 칭				
해 임 된 대 리 인	⑯성 명		⑰주민등록번호	
	⑱주 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해임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산 림 청 장 귀하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구비서류: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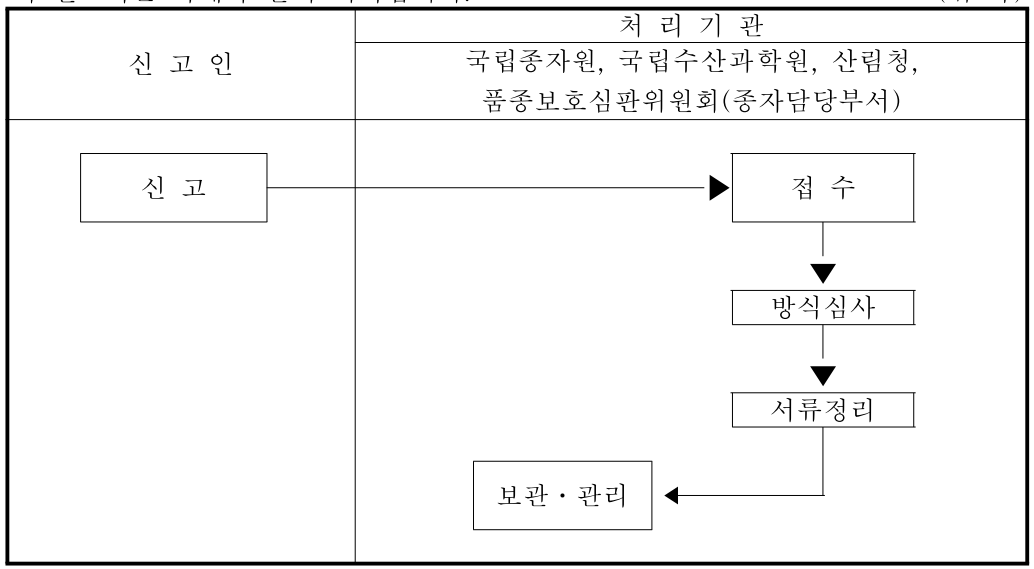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하고, 타자 또는 컴퓨터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2. 서식 중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서식에서 삭제하고, 신고인・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와 같이 필요하면 해당 “란”을 증설하여 적어야 합니다.

3. 『신고인』 란의 “②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란에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아니하고 국적을 적어야 합니다.

4.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①성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법인의 공식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어야 하며, “②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란은 각 법인에게 부여된 출원인코드를 적어야 합니다(처음 출원하여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지 못한 출원인은 “②주민등록번호”란을 적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 가 나 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길 동

5. 신고인의 “③주소”란에는 신고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완전하게 적고, 반드시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예] ○○도 ○○시(군) ○○읍(면) ○○리 ○○번지(△△△-△△△)

※시·도 명칭은 두 자리 약칭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충북)

6. “⑤사건과의 관계”란에는 출원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 심판청구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과 같이 사건과의 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7.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번역(음역을 하여야 하고, 훈역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한 신고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어여야 하며, 괄호 안에 신고인의 성명 또는 명칭의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8. 『대리인』란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9. 『사건의 표시』란에는 해당 절차에 관한 사건표시를 다음 예와 같이 적어야 합니다.

[예] 출원번호: 99-○○○○호, 출원일자 : 99. ○. ○.

10. “⑮품종의 명칭”란에는 품종보호 출원서의 “품종의 명칭”란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11. 동시에 둘 이상의 절차를 밟을 때 첨부하여야 할 증명서류는 그 증명내용이 동일한 경우 한 건에만 첨부하고, 다음 예와 같이 원용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적고 부본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서류를 원용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예]위임장(99. ○○. ○○일자 명의변경신고서에 첨부된 것 원용)

12.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삭제·추가 등 정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나, 부득이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우측 여백에 정정자수를 쓰고 신고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대표자 [□ 선 정 / □ 해 임] 신고서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사건과의 관 계			
대 리 인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전 화 번 호	
사 건 의 표 시	⑩출원번호		⑪출 원 일 자	
	⑫심판번호		⑬심판청구일자	
⑭작 물 의 명 칭				
⑮품 종 의 명 칭				
⑯신 고 내 용				

「종자산업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선정, 해임)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산 림 청 장 귀하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구비서류	수수료
1.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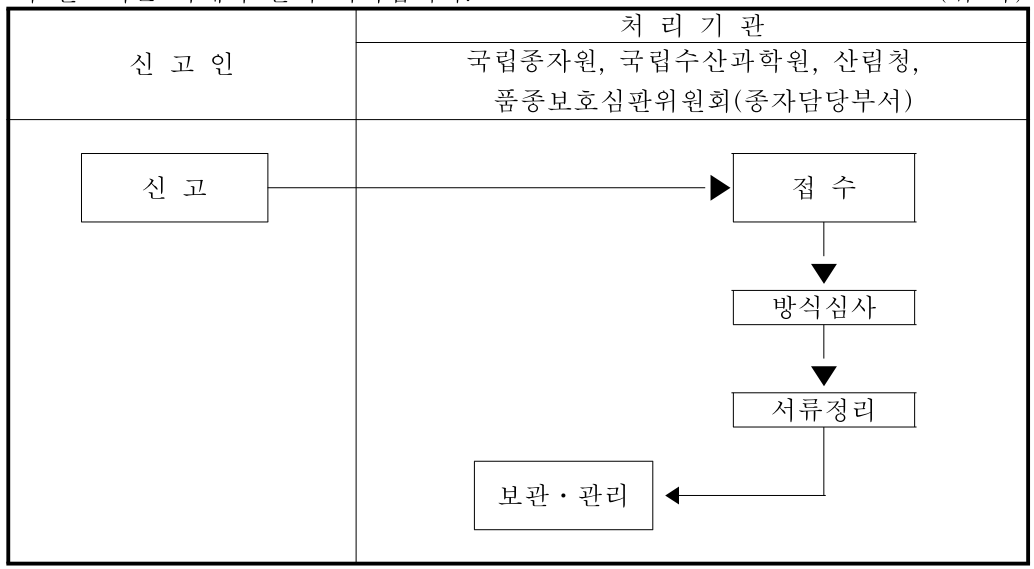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서식 표제 좌측의 신고종류를 나타내는(□ 선정, □ 해임)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신고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⑯신고내용"란에는 신고종류에 따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가. 대표자 선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선정한 대표자"라 적고, 그 뒤에 선정한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예]

신고내용	선정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나. 대표자 해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대표자"라고 적고, 그 뒤에 해임된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예]해임된 대표자

신고내용	해임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 성명·명칭 / □ 인감 / □ 주소] [□ 변경 / □ 정정] 신고서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사건과의 관 계			
대 리 인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전 화 번 호	
사 건 의 표 시	⑩출원번호		⑪출 원 일 자	
	⑫심판번호		⑬심판청구일자	
⑭작 물 의 명 칭				
⑮품 종 의 명 칭				
⑯신고내용	변경전 사항			
	변경후 사항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산 림 청 장 귀하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구비서류	수수료
1.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증의 제시로써 신고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산림청, 품종보호심판위원회(종자담당부서)
신 고	접 수 → 방식심사 → 서류정리 → 보관·관리

※ 작성요령

1. 서식 표제 좌측의 신고종류를 나타내는 (□ 성명·명칭, □인감, □ 주소)(□ 변경, □ 정정)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신고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신고내용』 란에는 신고종류에 따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가. 명칭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명칭(법인명)과 변경 후의 명칭(법인명)을 각각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변경 전·후의 관계가 나타나는 법인등기부등(초)본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주소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주소와 변경 후 주소(현주소)를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다만, 주민등록증 등의 제시로써 신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원 당시의 인감이 있는 때에는 변경 전 인감과 변경 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분실·파손 등으로 출원당시의 인감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파손 등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를 적고 변경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성명·명칭 또는 주소의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잘못 기재된 사항과 정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정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 법 정
□ 지 정] 기간의 연장신청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사건과의 관 계			
대 리 인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전 화 번 호	
사 건 의 표 시	⑩출원번호		⑪출 원 일 자	
	⑫심판번호		⑬심판청구일자	
⑭담당심사관(심판장)			⑮작물의 명칭	
⑰제 출 할 서 류			⑯품종의 명칭	
⑲연 장 회 수			⑱제출마감일자	
⑳연 장 이 유				
㉑연 장 희 망 기 간				

「종자산업법」 제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간연장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산 림 청 장 귀하
심 판 장
심 사 관

구비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원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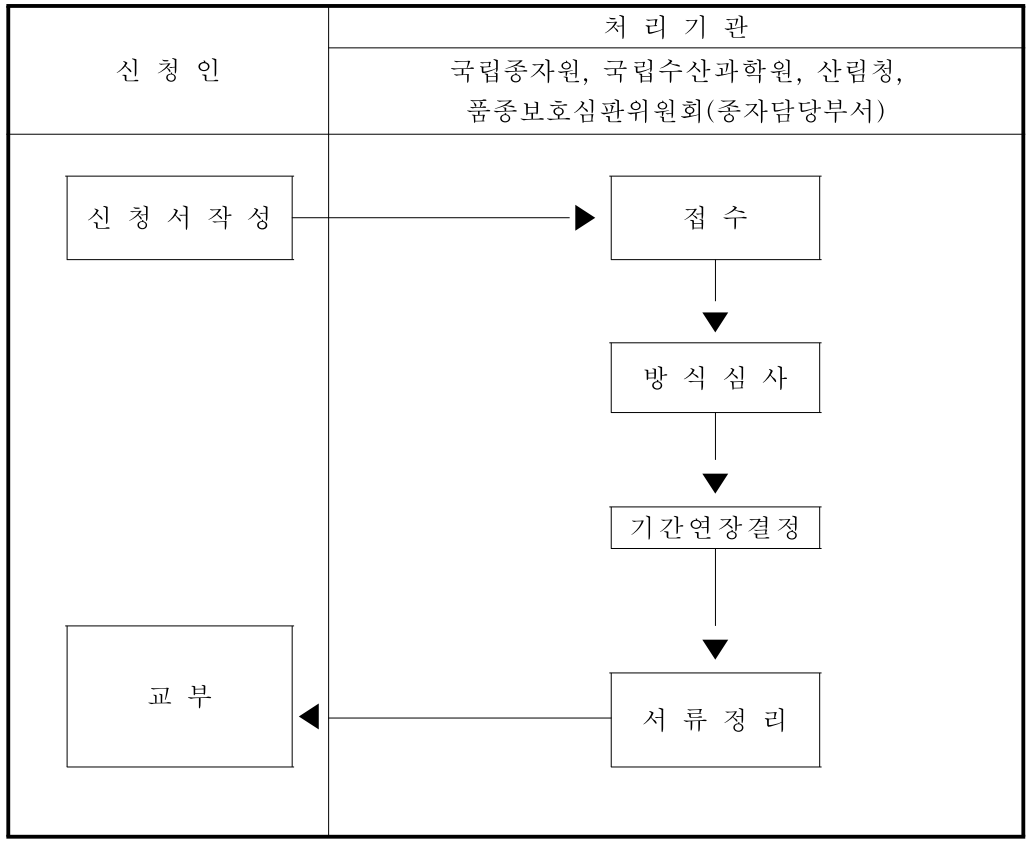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서식 표제 좌측의 신청종류를 나타내는 (□ 법정, □ 지정)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연장을 원하는 기간의 종류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⑰제출할 서류"란에는 의견서, 보정서 등 제출할 서류명을 적어야 합니다.

3. "⑳연장이유" 및 "㉑연장희망기간"란에는 연장하여야 할 이유 및 연장하고자 희망하는 기간(제출마감일자 다음 날 및 희망기간 말일의 연월일)을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기 간 해 태 면 제 신 청 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사건과의 관 계			
대 리 인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전 화 번 호	
사 건 의 표 시	⑩출원번호		⑪출 원 일 자	
	⑫심판번호		⑬심판청구일 자	
⑭작 물 의 명 칭				
⑮품 종 의 명 칭				
⑯제 출 할 서 류			⑰제출마감일 자	
⑱해 태 사 유				
⑲해태사유가 소멸한 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간해태 면제신 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산 림 청 장 귀하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구비서류	수수료
1. 해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원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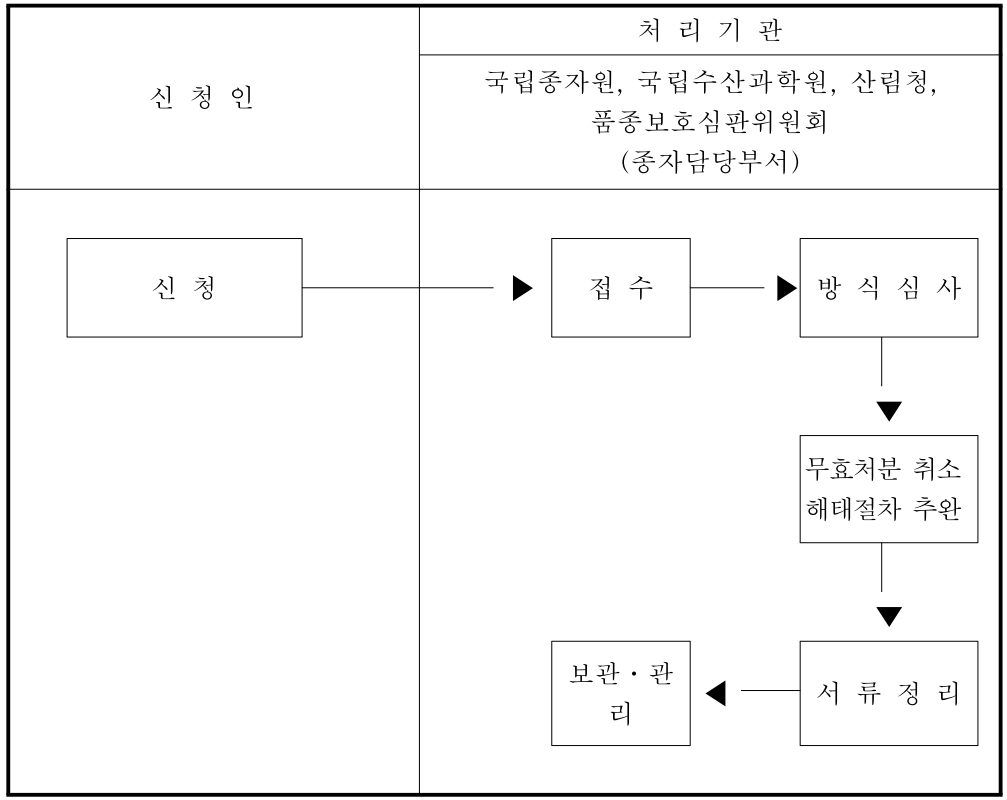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⑱해태사유”란 및 “⑲해태사유가 소멸한 날”란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해태사유 및 그 사유가 소멸한 일자(년·월·일)를 각각 적어야 하고,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보 정 서			
제 출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대 리 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전 화 번 호
사 건 의 표 시	⑨출원번호		⑩출 원 일 자
	⑪심판번호		⑫심판청구일 자
⑬담당심사관(담당심판장)			
⑭ 작 물 의 명 칭			
⑮ 품 종 의 명 칭			
⑯제출원인	□ 자 진 □ 보정명령: 통지를 받은 일자(. .) 제출 마감 일자(. .)		
⑰보정내용 및 이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산 림 청 장 귀하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구비서류	수 수 료
1. 보정서 부본 1부 2.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원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보정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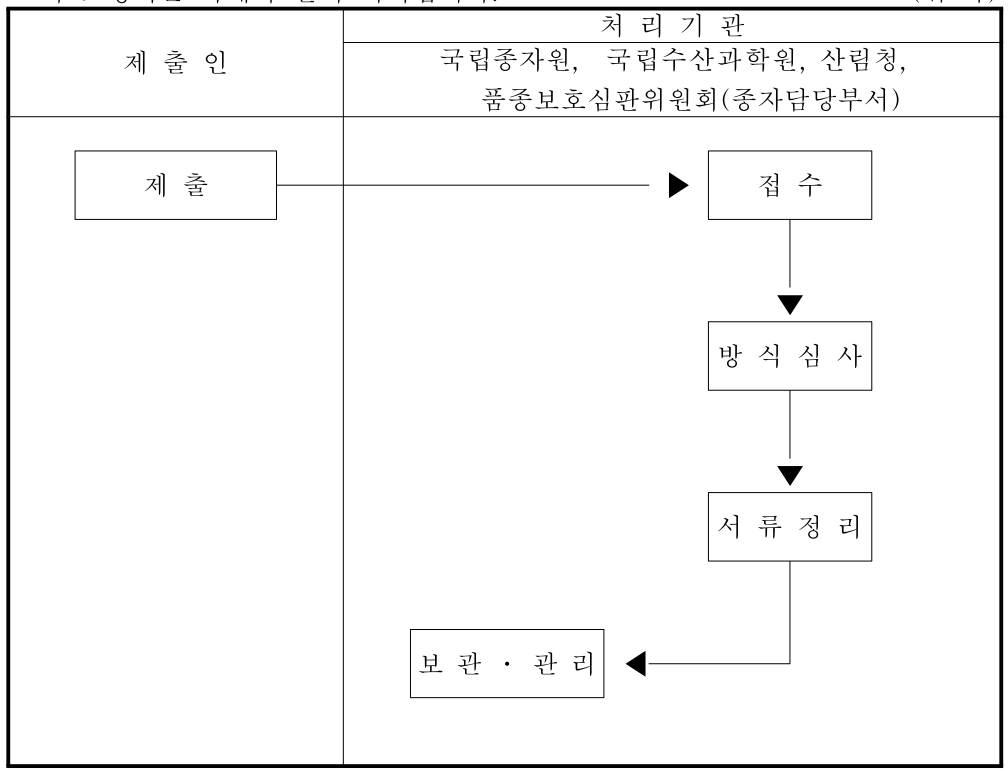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제출인』란 및 "⑮품종의 명칭"란은 품종보호 출원서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다만, 출원 후에 출원인 및 품종의 명칭을 변경 또는 정정한 때에는 그 변경 또는 정정된 주소·성명(따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및 품종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2. "⑯제출원인"란에는 해당 사항(□ 자진, □ 보정명령) 중 해당란에 표시(∨)하고, 보정통지서에 대한 보정과 같이 통지에 의한 때에는 그 통지 받은 날짜, 제출 마감일자를 각각 적어야 합니다.

3. "⑰보정내용 및 이유"란에는 보정내용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난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보정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 서 류 □ 물 건 ┘ 제출서			
제 출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사건과의 관 계		
대 리 인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전 화 번 호
사 건 의 표 시	⑩출원번호		⑪출 원 일 자
	⑫심판번호		⑬심판청구일자
⑭담 당 심 사 관 (담 당 심 판 장)			
⑮작물의 명 칭			
⑯품종의 명 칭			
⑰제 출 통 지 일 자		⑱제출마감일자	
⑲제출할 서 류 및 물 건 의 목 록			
⑳반 환 희 망 여 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산 림 청 장 귀하
심 판 장
심 사 관

구비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제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제 출 인	처 리 기 관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산림청, 품종보호심판위원회(종자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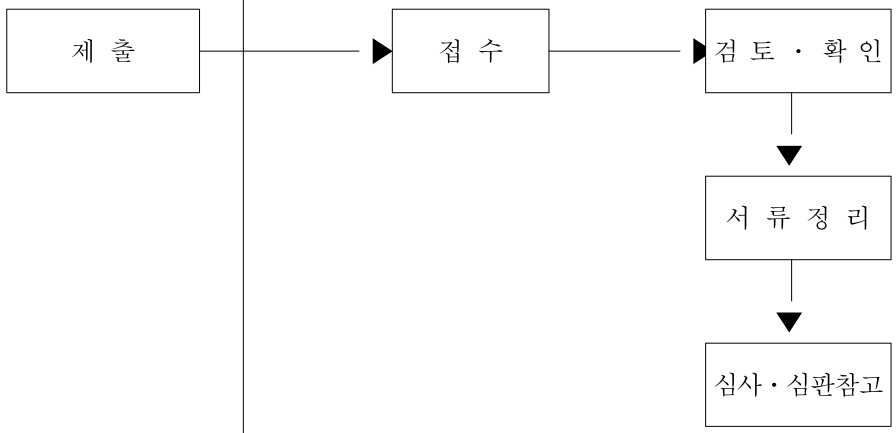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서식 표제 좌측의 신고종류를 나타내는 (□ 서류, □ 물건)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제출건명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2. "⑰제출통지일자"란 및 "⑱제출마감일자"란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국립종자원장·산림청장·심판장·심사관으로부터 제출명령을 받은 날 및 제출마감일자(지정기간)의 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3. "⑲제출할 서류 및 물건의 목록"란에는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 그 밖의 물건명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4. "⑳반환희망 여부"란에는 제출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반환여부를 적어야 합니다.

5.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제출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 □ 품종보호 출원 ┐ ┌ □ 포기서
| □ 심 판 청 구 | |
└ □ 우선권 주장 ┘ └ □ 취하서

제 출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대 리 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전 화 번 호	
사 건 의 표 시	⑨출원번호		⑩출 원 일 자	
	⑪심판번호		⑫심판청구일 자	
⑬작물의 명칭				
⑭품종의 명칭				
⑮포기 또는 취하의 요 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산 림 청 장 귀하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구비서류	수수료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포기서 또는 취하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제 출 인	처 리 기 관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산림청, 품종보호심판위원회(종자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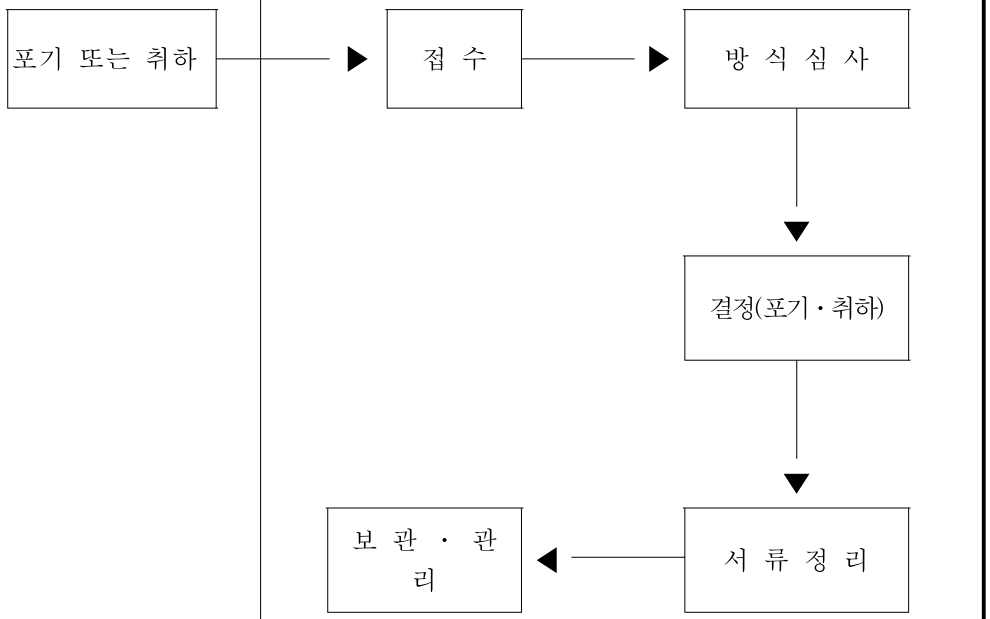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서식 표제 좌측의 신고종류를 나타내는 (□ 품종보호 출원, □ 심판청구, □ 우선권주장)(□ 포기서, □ 취하서)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제출서식의 종류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⑮포기 또는 취하의 요지"란에는 포기 또는 취하를 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야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포기서 또는 취하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신규성 증명서류 제출서

제 출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대 리 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전 화 번 호	
사 건 의 표 시	⑨출원번호		⑩출 원 일 자	
⑪작물의 명칭				
⑫품종의 명칭				
⑬증명서류의 내용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 림 청 장

구비서류	수수료
1.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제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제 출 인	처 리 기 관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산림청(종자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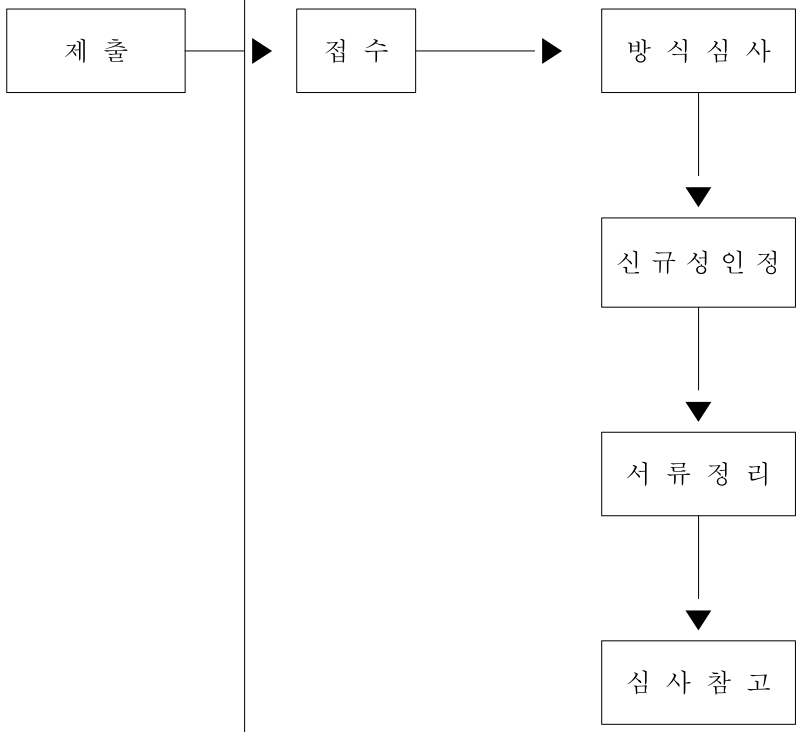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⑬증명서류의 내용”란에는 신규성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내용을 간단히 적어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제출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서

정당한 권리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대 리 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전 화 번 호	
무권리자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⑪주 소		⑫전 화 번 호	
무권리자 출원의 표시	⑬출원번호		⑭출 원 일 자	

작물의 명칭 및 품종의 명칭	⑮무권리자	작물명	
		품종명	
	⑯정 당 한 권 리 자	작물명	
		품종명	
⑰권 리 도 용 사 실			
⑱증 명 방 법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정당한 권리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 림 청 장

구비서류	수수료
1. 이의신청서 부본 1부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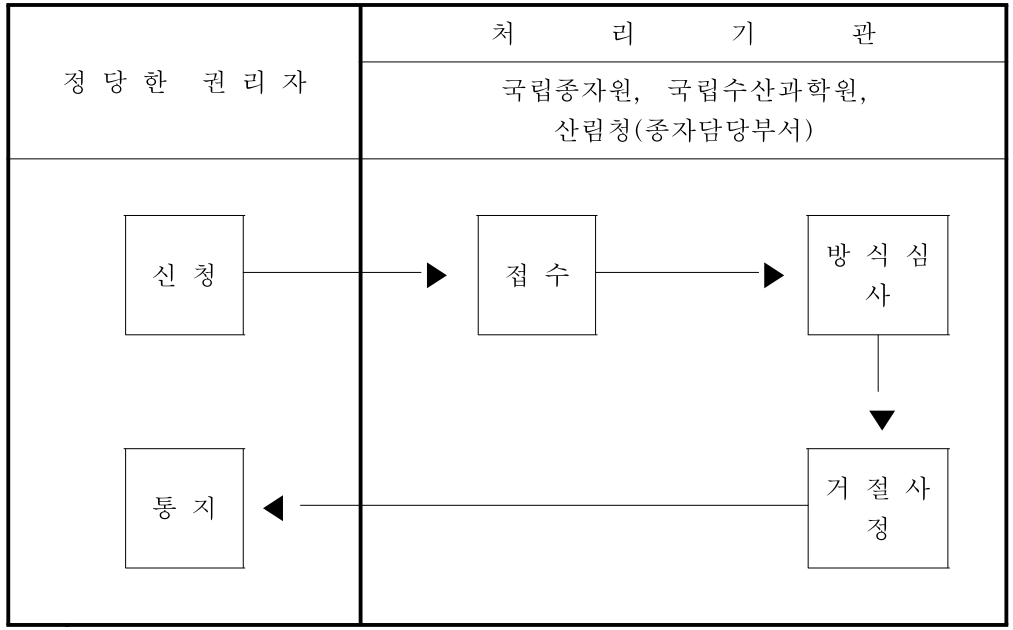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무권리자 출원의 표시』란의 "⑬출원번호"란에는 "품종보호 출원 98-○○○호"와 같이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⑭출원일자"란에는 출원일자의 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2. 『작물의 명칭 및 품종의 명칭』란의 "⑮무권리자"란에는 무권리자가 출원서의 "품종의 명칭"란에 적은 것과 같게 적어야 하고, "⑯정당한 권리자"란에는 육성자가 육성한 『작물의 명칭 및 품종의 명칭』을 1개만 적어야 합니다.

3. "⑰권리도용사실"란에는 간행물 등의 증거에 따라 무권리자가 출원한 품종이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을 도용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⑱증명방법"란에는 권리도용사실란에 적힌 증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립종자원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5.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되, "신고인"을 "정당한 권리자"로, "신고서"를 "이의신청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방식심사란	담 당	심사관

□ 품종보호
□ 품종명칭] 협의결과신고서

권 리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대 리 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전 화 번 호	
권리자 선임 협의 당사자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국적)	
	⑪주 소		⑫전 화 번 호	
⑬작 물 의 명 칭				
⑭품 종 의 명 칭				
사건의 표시	⑮출원번호		⑯출 원 일 자	
경합된출원의 표 시	⑰출원번호		⑱출 원 일 자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8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의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권 리 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출원경합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 림 청 장

구비서류	수수료
1. 협의 성립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산림청(종자담당부서)
신 고	→ 서 류 검 토 → 서 류 정 리 → 보 관 · 관 리

※ 작성요령

1. 서식 표제 좌측의 신고종류(□ 품종보호, □ 품종명칭)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신고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권리자 선임협의 당사자』란에는 경합된 출원의 출원인을 적어야 하며,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를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작성요령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 중 “신고인”을 “권리자 선임협의 당사자”로 보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사건의 표시』란에는 경합된 출원 중 권리자로 선임협의된 출원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적고, “⑭품종의 명칭”란에도 권리자로 선임협의된 출원서에 적힌 것과 같게 적어야 합니다.

4. 『경합된 출원의 표시』란에는 경합된 출원 중 권리자로 선임협의된 출원을 제외한 출원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5.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품종보호 출원인 명의변경신고서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사건과의 관 계		⑥지 분	
대 리 인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주 소		⑩전 화 번 호	
사건의 표시	⑪출원번호		⑫출 원 일 자	
⑬작물의 명 칭				
⑭품종의 명 칭				
⑮변경원인	□전부양도 □일부양도 □지분포기 □상 속 □합 병 □기 타			

신고내용	변경 전	⑯성 명		⑰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⑱주 소		⑲전 화 번 호	
	변경 후	⑳성 명		㉑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㉒주 소		㉓전 화 번 호	

「종자산업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보호 출원인 명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 림 청 장

구비서류	수수료
1. 명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원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산림청(종자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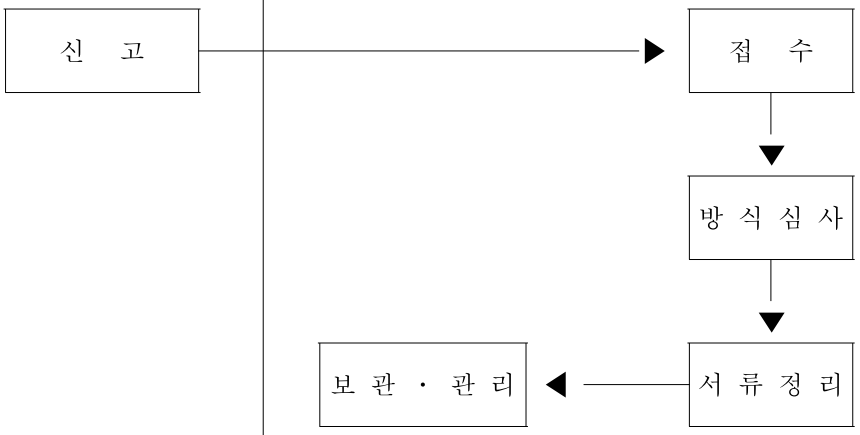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신고인』란은 명의변경 후의 신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를 적어야 하고, "⑤사건과의 관계"란에는 "상속인", "양수인", "품종보호 출원인"과 같이 명의변경의 원인에 따른 사건과의 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2. "⑮변경원인"란에는 명의변경의 원인에 따라 예시된 항목을 찾아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3. 신고서에는 명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명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명의변경의 원인이 매매계약·증여 등에 의한 때에는 "양도증", 상속에 의한 때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합병에 의한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됩니다.
4. 신고를 하는 때에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권리에 관한 지분이 특별히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⑥지분"란에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방식심사란	담 당	심사관

품 종 보 호 출 원 서

출 원 인	①성 명	(한글) (영문)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한글) (영문) (전화 :)	④지 분	
대 리 인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전 화 번 호	
육 성 자	⑨성 명	(한글) (영문)	⑩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⑪주 소	(한글) (영문)	⑫전 화 번 호	
⑬품 종 이 속 하 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⑭품종의 명칭		(한글) (영문)		

「종자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⑮출 원 국 명	⑯출 원 일 자	⑰출 원 번 호	⑱증명서류	
				첨 부	미첨부

⑲품 종 의 특 성 설 명	(별지사용)
⑳품종육성과정의 설명	(별지사용)

「종자산업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보호 출원을 합니다.

년 월 일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 림 청 장

구비서류	수수료
1. 출원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종자시료가 영양체 및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재배시험 적기 등을 고려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품종보호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3. 우선권 주장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 심사서 1부(유전자 변형품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원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출원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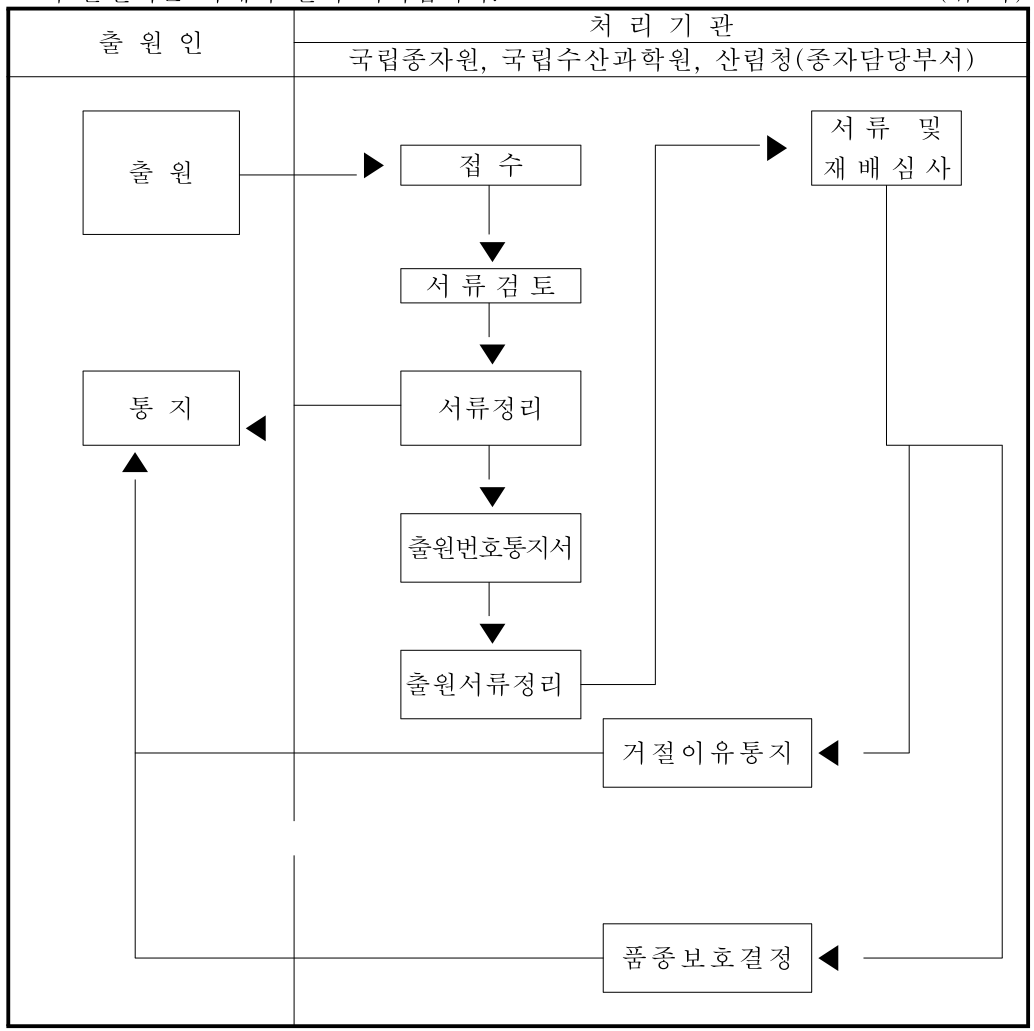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서식 중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서식에서 삭제하고, 출원인·대리인 및 육성자가 2명 이상인 경우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란"을 증설하여 적어야 합니다.

2. 『출원인』, 『육성자』 란은 출원인과 육성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 주소를 한글과 영문으로 적어야 하고, 영문은 한글의 경우 문화관광부 고시 2000-8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음역하여 적고 외국어의 경우 원어 그대로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육성자가 출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출원인과 같음"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3. 『수수료』 란에는 출원서 제출시에 납부하는 품종보호출원료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납부영수증(서류첨부용)은 출원서 표지 뒤쪽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4. 동일한 출원인이 동시(동일자)에 2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한 부기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품종보호 출원서(1), 품종보호 출원서(2)

5. 위임장은 정당한 권리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원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종자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우선권주장』 란은 외국의 최초출원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만 적어야 합니다(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7. 우선권주장을 하려는 자는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국명, 출원일자, 출원번호를 적어야 하며, "증명서류"란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란에 표시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첨부"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8. 2명 이상의 정당한 권리자가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상호 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으면 "④지분"란에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9. "⑬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학명: *Allim cepa* L., 일반명 : 양파

10. "⑭품종의 명칭"란에는 육성자가 육성한 품종의 명칭을 1개만을 한글과 영문으로 적어야 합니다. 한글의 영문표기의 경우 문화관광부 고시 2000-8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음역하여 적고, 외국어의 한글 표기의 경우 또한 외국어를 한글로 음역하여 적어야 합니다.

[예]한글 품종명: 통일(Tongil), 외국품종명 : Yellow king(옐로우 킹)

11. "⑲품종의 특성설명"란 및 "⑳품종육성과정의 설명"란에는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품종설명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유전자변형종자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종자임을 적어야 합니다.

12. 미성년자·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의 『출원인』 란 다음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적고,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미성년자(출원인)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나타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4. 2명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대표자선임의 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때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출원인을 『출원인』 란의 첫째 란에 적고, 첨부서류란에는 증명서류내용을 적고,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5. 대리인이 출원인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리인』 란을 "출원인 ○○○의 대리인"과 같이 적어야 합니다.

16.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되, "신고인"을 "출원인"으로, "신고서"를 "출원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방식심사란	담 당	심사관

우선권 증명서류제출서

제 출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대 리 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전 화 번 호	
사 건 의 표 시	⑨출원번호		⑩출 원 일 자	
⑪작물의 명 칭				
⑫품종의 명 칭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표시	⑬출원국명	⑭출원일자	⑮출원번호

「종자산업법」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 림 청 장

구비서류	수수료
1. 최초로 품종보호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 등본 및 번역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제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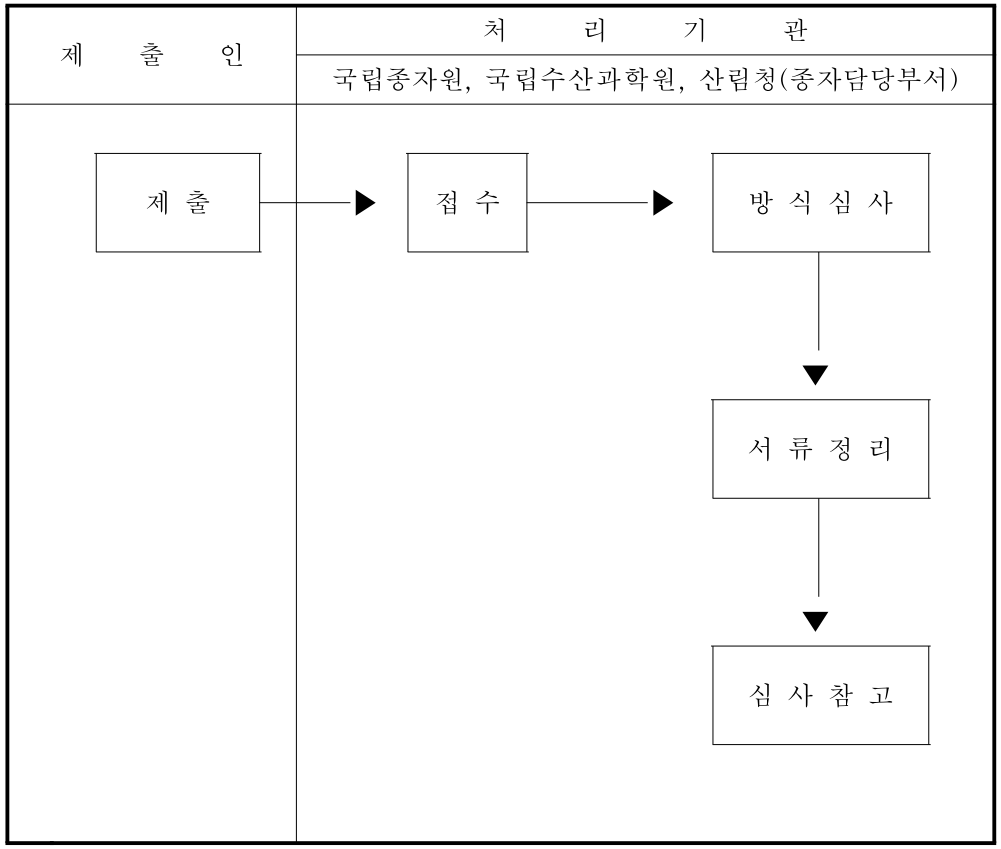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표시』 란에는 「종자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국명, 출원일자, 출원번호를 출원서에 적은 것과 같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제출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개정 2010.9.1>

우선권증명서(Certificate of Rights of Priority)
대한민국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대한민국 국립종자원
KOREA SEED & VARIETY SERVICE
대한민국 국립수산과학원
KOREA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별첨 사본은 아래 출원의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following application annexed hereto is true copy from the records according to the Seed Industry Law.

출 원 번 호:
Application number

출 원 연 월 일:
Date of Application

출 원 인:
Applicant(s)

년 월 일
Year/Month/Date

산 림 청 장 (인)
Administrator Official Seal
국 립 종 자 원 장 (인)
Commissioner Official Seal
국 립 수 산 과 학 원 장 (인)
President Official Seal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심 사 연 기 신 청 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대 리 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전 화 번 호	
사 건 의 표 시	⑨출원번호		⑩출 원 일 자	
⑪작물의 명 칭				
⑫품종의 명 칭				
⑬심사연기 요청기간				
⑭심사연기 요청사유				

「종자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연기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 림 청 장

구비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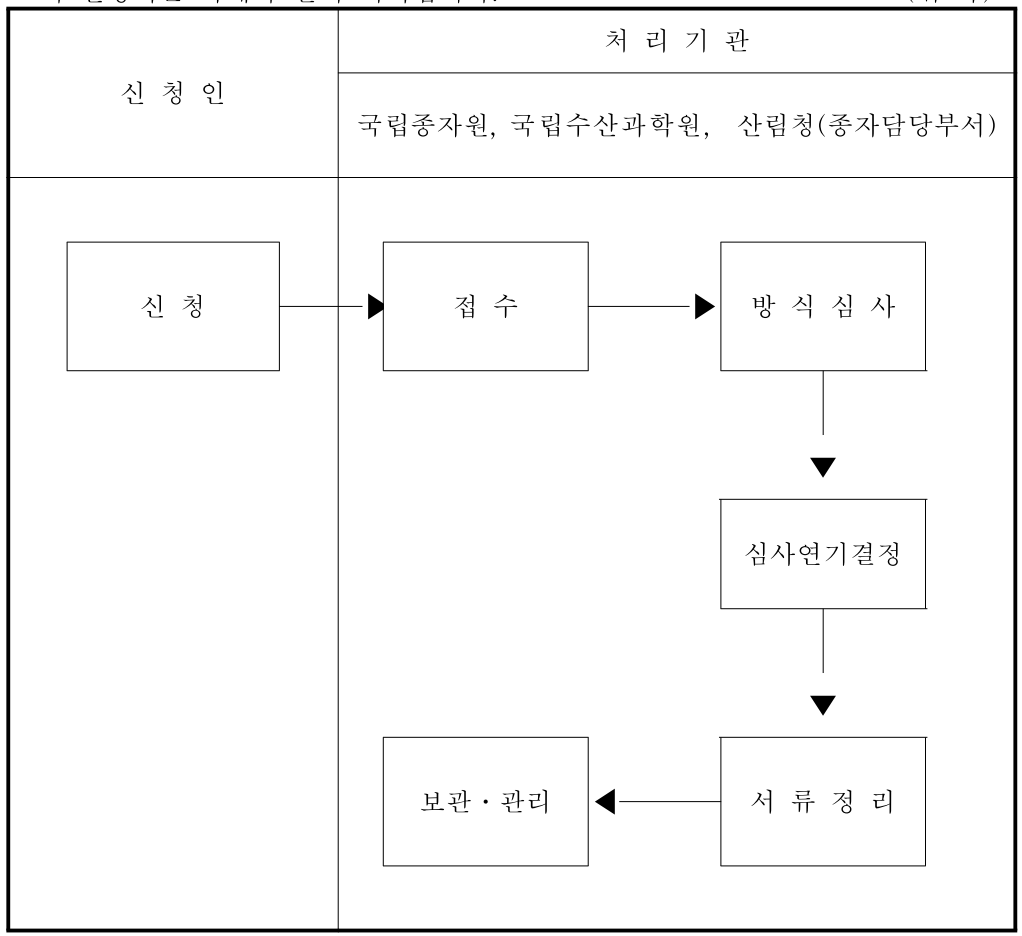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⑬심사연기 요청기간”란 및 “⑭심사연기 요청사유”란에는 심사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심사연기 요청기간도 년·월·일로 적어야 합니다.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9.1>

품종보호 출원등록부

출원번호	출원일자	품종의 명칭	학명 및 일반명	출원인	육성자	대리인

27271-30311비
97.12.23 승인

210㎜×297㎜
(보종용지(2종) 70g/㎡)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8.2.4>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공개된 품종보호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서

제 출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대 리 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전 화 번 호	
사 건 의 표 시	⑨출원번호		⑩출 원 일 자	
⑪작 물 의 명 칭				
⑫품 종 의 명 칭				
⑬정 보 내 용				
⑭증 거 방 법				

「종자산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된 품종보호출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산 림 청 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1. 정보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없 음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제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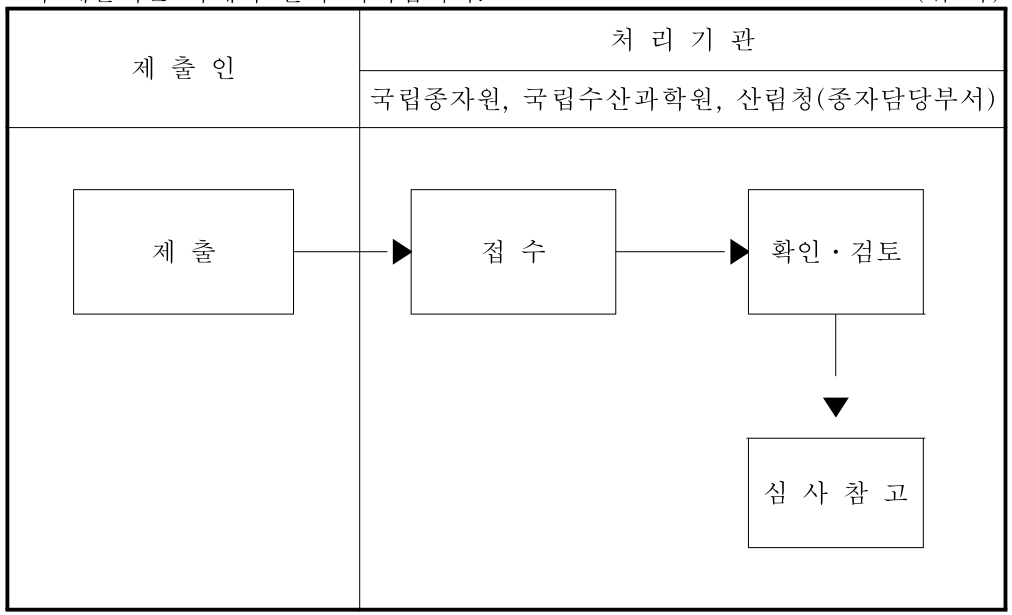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⑬정보내용”란에는 간행물 등의 증거에 따라 출원된 품종이 품종보호요건을 흠결하고 있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⑭증거방법”란에는 정보내용란에 적힌 증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립종자원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 작성요령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제출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 종 보 호
□ 국가품종목록등재 ┐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 출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대 리 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전 화 번 호	
사 건 의 표 시	⑨출원번호		⑩출 원 일 자	
⑪담 당 심 사 관				
⑫작물의 명 칭				
⑬품종의 명 칭				
⑭거 절 이 유 를 통지받은 일자			⑮의견서제출 마감일자	
⑯의 견 내 용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9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 림 청 장

구비서류	수수료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의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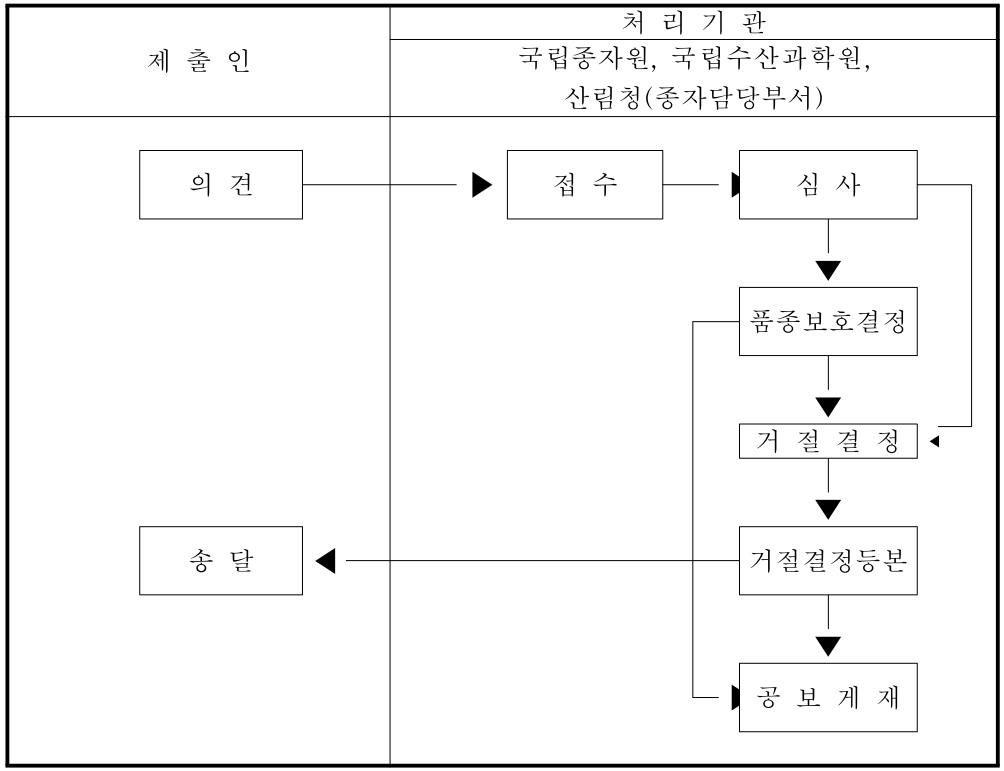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서식 표제 좌측의 권리의 종류를 나타내는 (□ 품종보호,□ 국가품종목록등재)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권리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제출인』란 및 『품종의 명칭』란은 출원서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다만, 출원 후에 출원인 및 품종의 명칭을 변경 또는 정정한 때에는 그 변경 또는 정정된 주소·성명(따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및 품종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3. "⑯의견내용"란에는 의견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난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0호 서식] 삭제 <2010.9.1>

[별지 제21호 서식] 삭제 <2010.9.1>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9.1>

(그림생략 : 나라문장사용)

품종보호권 등록증

CERTIFICATE ON THE GRANT OF PLANT VARIETY RIGHTS

품종보호 제 호
(GRANT NUMBER)

출 원 번 호 제 호
(APPLICATION NUMBER)
출 원 일 년 월 일
(FILING DATE : YY/MM/DD)
등 록 일 년 월 일
(GRANT DATE : YY/MM/DD)

작물의 일반명 및 학명:
(COMMON NAME & BOTANICAL NAME OF THE PLANT)
품 종 의 명 칭:
(DENOMINATION)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PROTECTION PERIOD : DD/MM/YY~DD/MM/YY)
품 종 보 호 권 자:
(TITLE HOLDER)
육 성 자:
(BREEDER)

위의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55조에 따라 품종보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VARIETY IS TO CERTIFY THAT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 IS REGISTERED ACCORDING TO THE SEED INDUSTRY LAW)

년 월 일
(YEAR/MONTH/DATE)

[그림 생략] 국 립 종 자 원 장 (인)
COMMISSIONER, THE KOREA SEED & VARIETY SERVICE

국 립 수 산 과 학 원 장 (인)
PRESIDENT, THE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산 림 청 장 (인)
ADMINISTRATOR, THE KOREA FOREST SERVICE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품종보호권 등록증	□ 정정교부 □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대리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전 화 번 호	
사건의 표시	⑨품종보호권 등록번호		⑩품종보호권 등록일자	
⑪ 작물의 명칭				
⑫ 품종의 명칭				
⑬ 정정/재교부 사유				
⑭ 사유가 발생한 날 (재교부에 한함)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정정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 림 청 장

구비서류	수수료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정정교부: 없음
2. 품종보호권 등록증(정정교부 신청만 해당합니다)	재교부: 6,500원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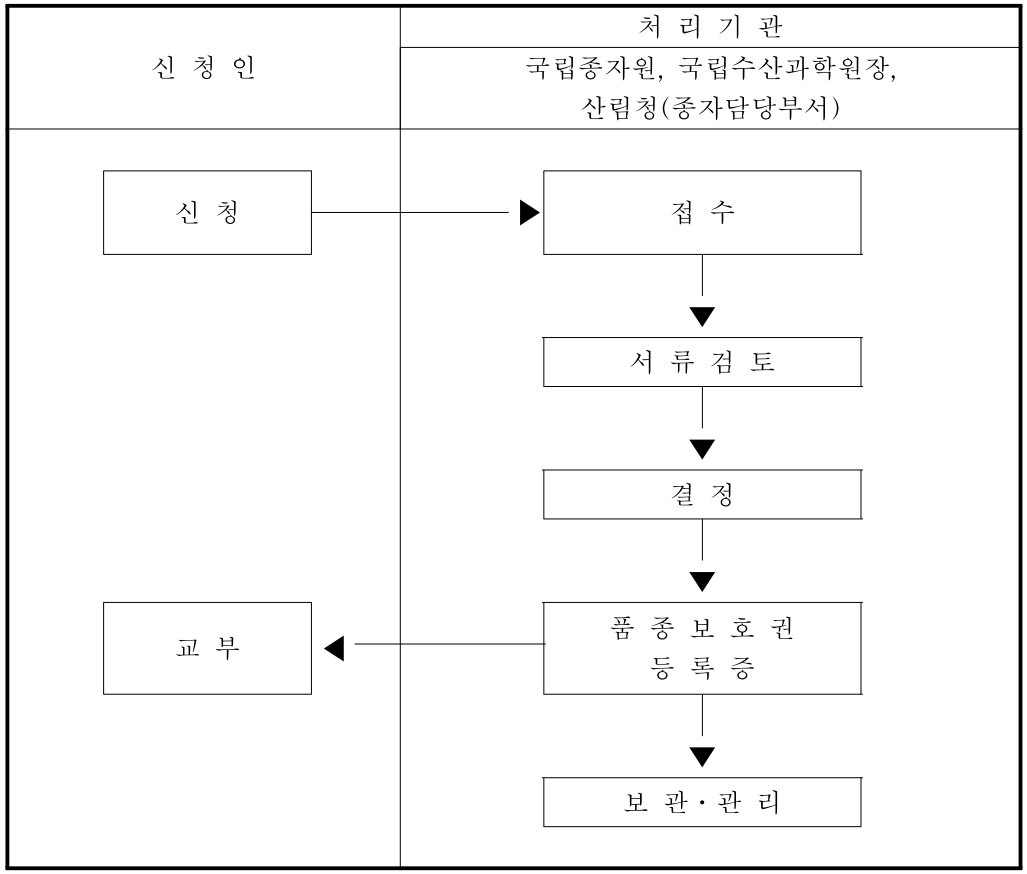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⑬정정/재교부 사유"란에 정정교부의 경우 정정교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 "⑬정정/재교부사유"란에 재교부의 경우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은 재교부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4호 서식] 삭제 <2010.9.1>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 □상 속 ┐
│ □전용실시권 │ │ │ 신고서
└ □질 권 ┘ └ □그 밖의 일반승계 ┘

신고인(승계인)	①성 명 (명 칭)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사건과의 관 계			
대 리 인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전 화 번 호	
사 건 의 표 시	⑩품종보호권 등록번호		⑪품종보호권 등록 일자	
⑫ 작물의 명 칭			⑭신고사유가 발생한 날	
⑬ 품종의 명 칭				
⑮신 고 내 용	변경전 사항			
	변경후 사항			

「종자산업법」 제6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산 림 청 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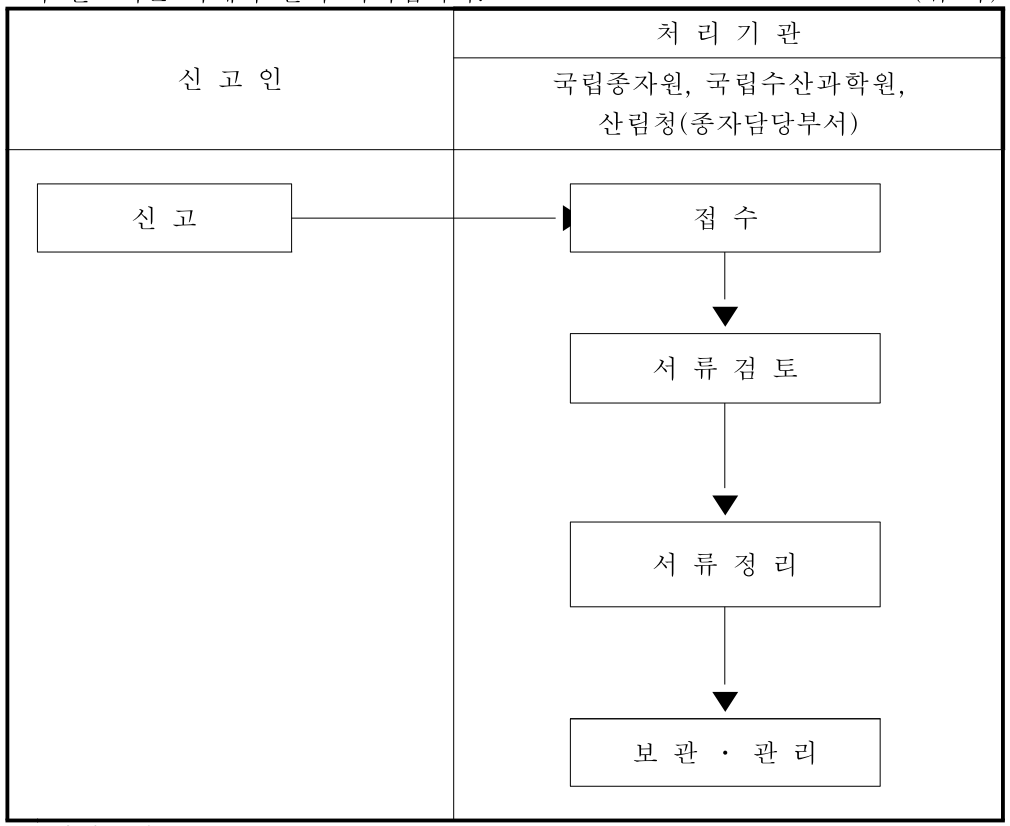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서식 표제 좌측의 신고종류를 나타내는 (□ 품종보호권, □ 전용실시권, □ 질권) (□ 상속, □ 그 밖의 일반승계)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신고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⑮신고내용"란에는 신고종류에 따라 신고내용을 변경 전 사항 및 변경 후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의 뒤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방식심사란	담 당	심사관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서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대 리 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전 화 번 호	
피청구인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⑪주 소		⑫전 화 번 호	
사 건 의 표 시	⑬품종보호권 등 록 번 호		⑭ 품 종 보 호 권 등 록 일 자	
⑮ 작물의 명 칭				
⑯ 품종의 명 칭				
⑰청 구 의 이 유				
⑱증 거 방 법				

「종자산업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산 림 청 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청구서 부본 1부 2. 청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원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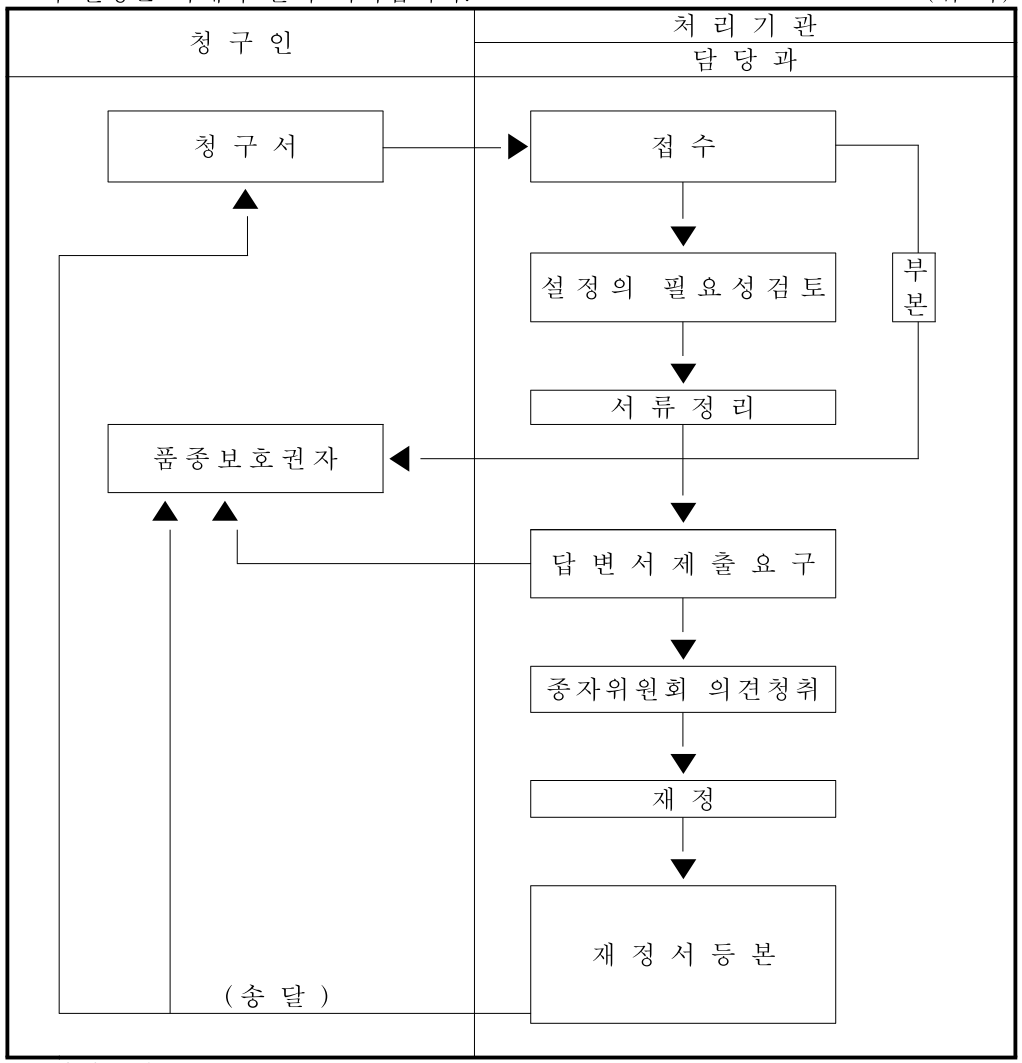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⑰청구의 이유"란에는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⑱증거방법"란에는 청구의 이유란에 적힌 증거로서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되, "신고인"을 "청구인"으로, "신고서"를 "청구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통상실시권의 재정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전화번호	
재 정 청 구인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⑪주소		⑫전화번호	
대리인	⑬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주소		⑯전화번호	
사 건 의 표 시	⑰품종보호권 등록번호		⑱품종보호권 등록일자	
⑲통지일자			⑳답변서제출 마감일자	
㉑답변내용				
㉒증거방법				

「종자산업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 림 청 장

구비서류	수수료
1. 답변서 부본 1부	없 음
2.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7271-31311민 210㎜×297㎜
97.12.2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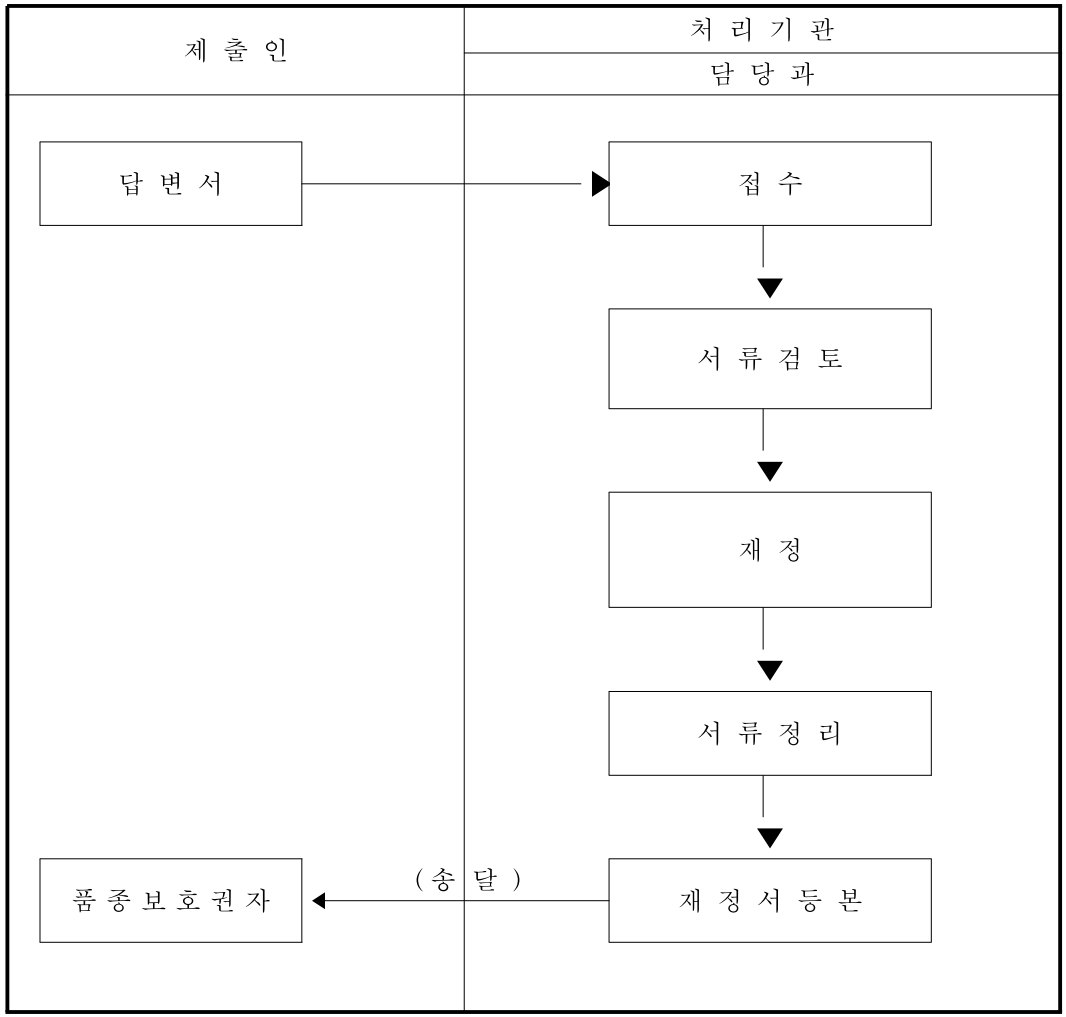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㉑답변내용"란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답변서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㉒증거방법"란에는 답변내용란에서 기재한 증거로서 국립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등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 ※ 작성요령에 의하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답변서"로 보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기간 연장청구서			
청구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대리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전 화 번 호
사건의 표시	⑨품종보호권 등록번호		⑩품종보호권 등록일자
⑪작물의 명칭			⑬재 정 기 간
⑫품종의 명칭			
⑭재정의 이유			
⑮연장의 사유			
⑯연장신청의 기간			

「종자산업법」 제7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간 연장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 림 청 장

구비서류	수수료
1.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원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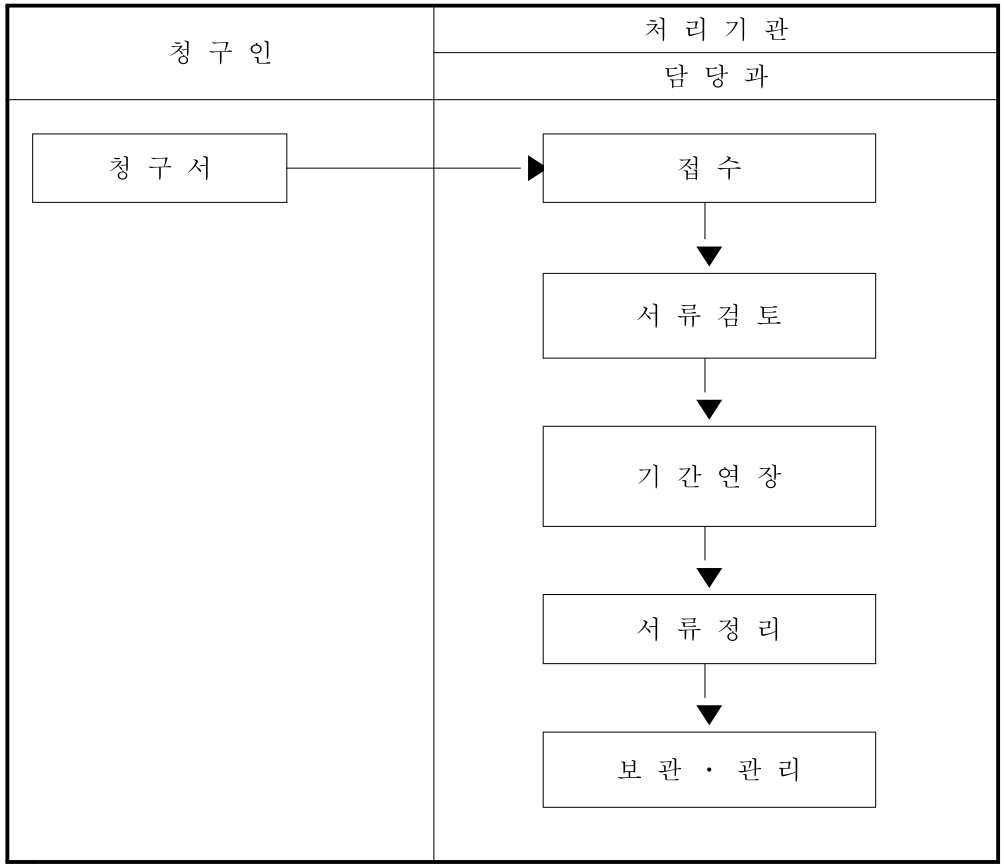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⑭재정의 이유”란에는 재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⑮연장의 사유”란에는 기간연장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되, “신고인”을 “청구인”으로, “신고서”를 “청구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재정 취소신청서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 주 소		④전 화 번 호	
대리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전 화 번 호	
취소대상이 되는재정을 받은 자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⑪주 소		⑫전 화 번 호	
대리인	⑬성 명		⑭주민등록번호	
	⑮주 소		⑯전 화 번 호	
사건의 표시	⑰품종보호권 등록번호		⑱품종보호권 등록일자	
⑲작물의 명칭			㉑재정 기간	
⑳품종의 명칭				
㉒재정의 이유				
㉓재정의 취소이유				
㉔증거 방법				

「종자산업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 취소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 하
산 림 청 장

구비서류	수수료
1. 신청서 부본 1부 2. 재정의 취소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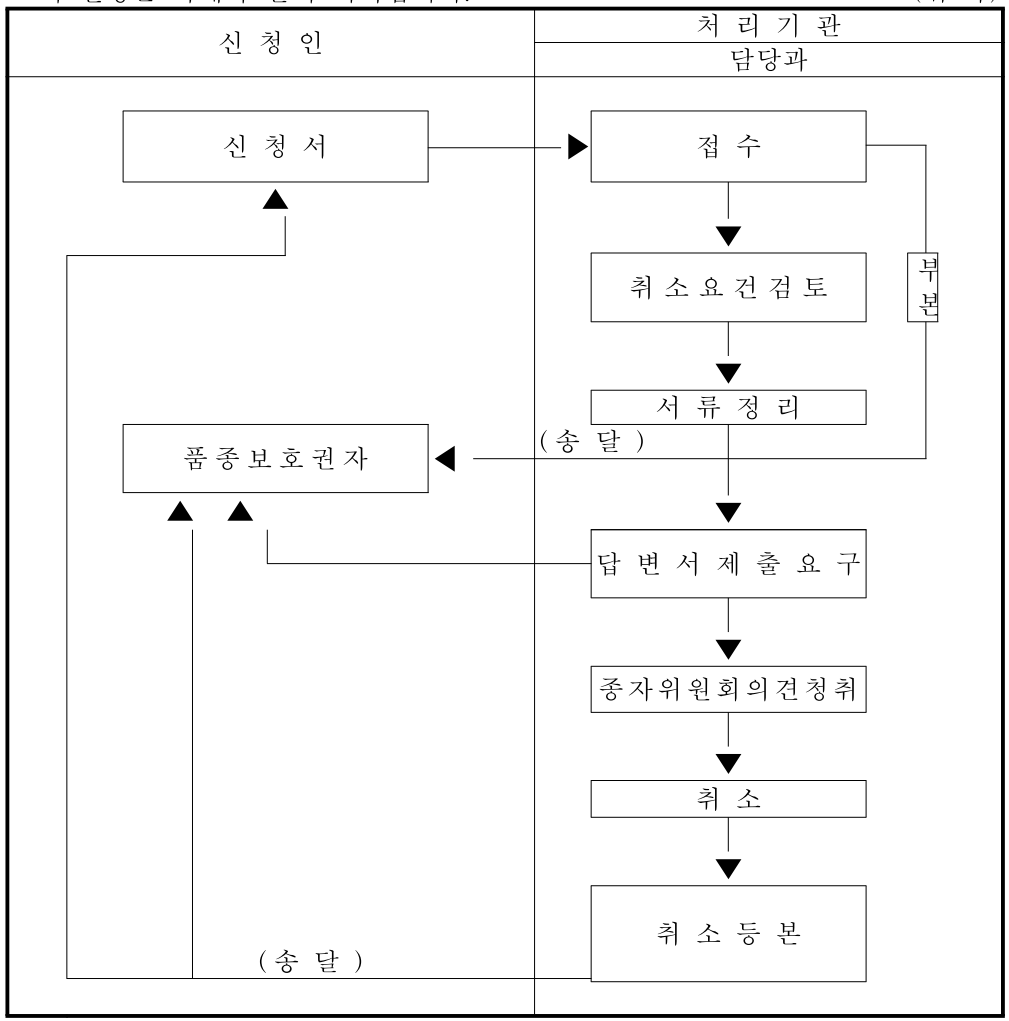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㉒재정의 이유"란에는 재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㉓재정의 취소이유"란에는 재정의 취소의 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㉔증거방법"란에는 취소의 이유란에 적힌 증거로서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재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전화번호	
재정취소 신 청 인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⑪주소		⑫전화번호	
대리인	⑬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주소		⑯전화번호	
사 건 의 표 시	⑰품종보호권 등록번호		⑱품종보호권 등록일자	
⑲통지일자			⑳답변서제출 마감일자	
㉑답변내용				
㉒증거방법				

「종자산업법」 제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 림 청 장

구비서류	수수료
1. 답변서 부본 1부	없음
2.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7271-31611민 210㎜×297㎜
97.12.23 승인 (신문용지54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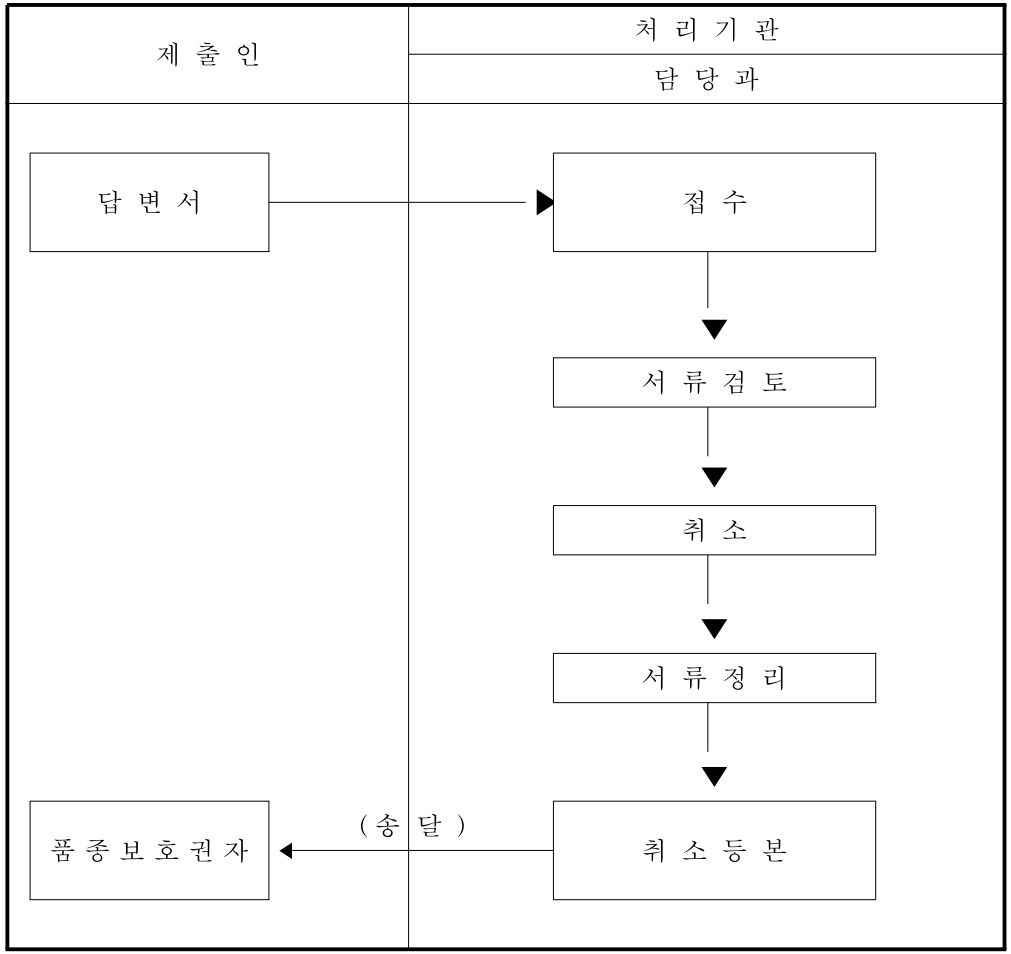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㉑답변내용"란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답변서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㉒증거방법"란에는 답변내용란에서 기재한 증거로서 국립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등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 ※ 작성요령에 의하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답변서"로 보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품종보호권 취소에 대한 의견서			
제출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대리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전 화 번 호
사건의 표시	⑨품종보호권 등록 번호		⑩품종보호권 등록일자
⑪담당심사관			
⑫ 작물의 명칭			
⑬ 품종의 명칭			
⑭ 취소를 통지받은 일자		⑮의견서제출 마감일자	
⑯의 견 내 용			

「종자산업법」 제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보호권 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 림 청 장

구비서류	수수료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의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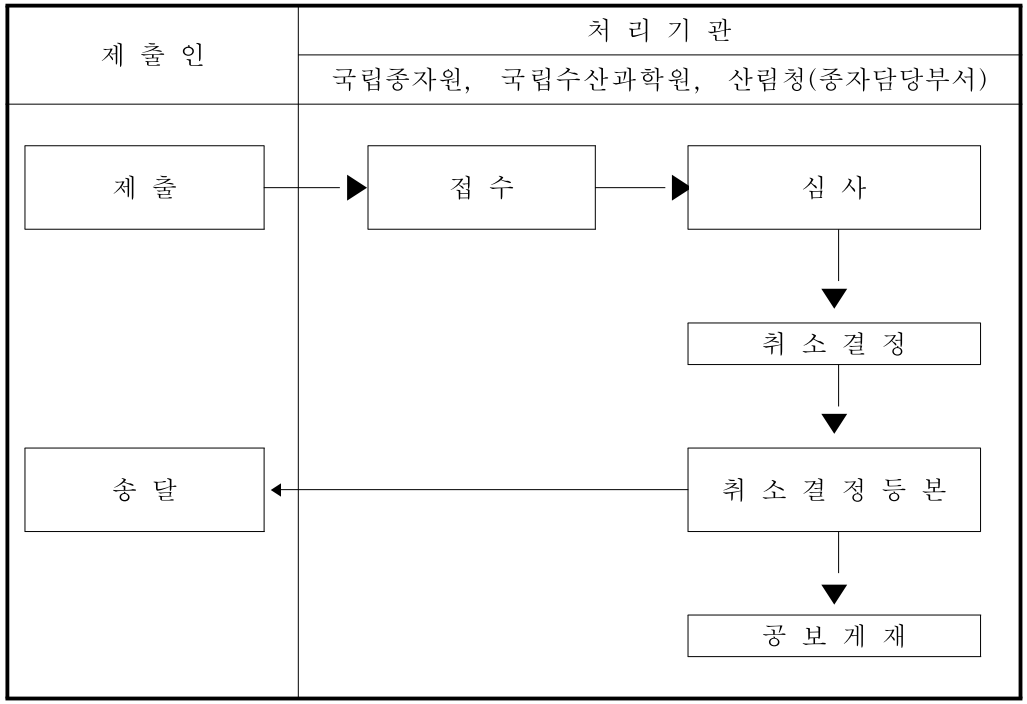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제출인』란 및 “⑫ 작물의 명칭”란과 “⑬ 품종의 명칭”란은 출원서에 적힌 것과 같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원 후에 출원인 및 품종의 명칭을 변경 또는 정정한 때에는 그 변경 또는 정정된 주소·성명(따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및 품종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2. “⑭취소를 통지받은 일자”란 및 “⑮의견서제출 마감일자”란에는 심사관으로부터 거절 이유를 통지받은 일자 및 의견서제출 마감일자의 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3. “⑯의견내용”란에는 의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의견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심 판 사 건 답 변 서

피청구인 (답변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 주 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⑤ 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⑧전화번호	
청구인	⑨ 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⑪ 주 소		⑫전화번호	
대리인	⑬ 성 명		⑭주민등록번호	
	⑮ 주 소		⑯전화번호	
⑰심판번호				
⑱답변서제출 마감일자				
⑲답변내용				
⑳증거방법				
㉑첨부서류 및 물건의 목록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피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답변서 부본 1부	없 음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7271-31911민

97.12.23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뒷 쪽)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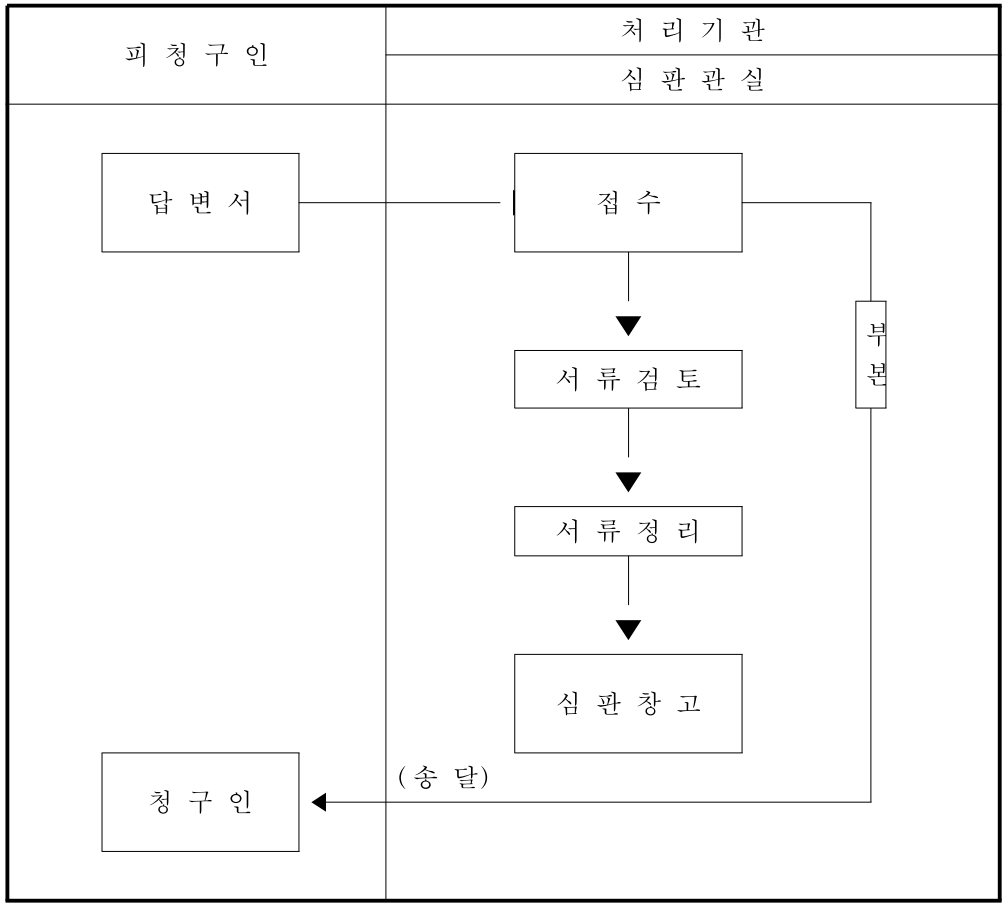

※작성요령

1. “⑱답변서제출 마감일자”란에는 심판위원으로부터 답변서제출 마감일자를 통지받은 일자를 연·월·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⑲답변내용”란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⑳증거방법”란에는 답변내용란에서 기재된 증거로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㉑첨부서류 및 물건의 목록”란에는 증거방법란에서 제출하는 증거서류 및 물건의 목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 ※ 작성요령에 의하되 “신고인”을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으로, “신고서”를 “답변서”로 보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제인란	
심판위원	□ 제 척 □ 기 피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번호	
⑩심판번호				
⑪제척 또는 기피대상 심판위원				
⑫제척 또는 기피의 이유				
⑬증거방법				
⑭첨부서류 및 물건의 목록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청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원

27271-32011민

97.12.23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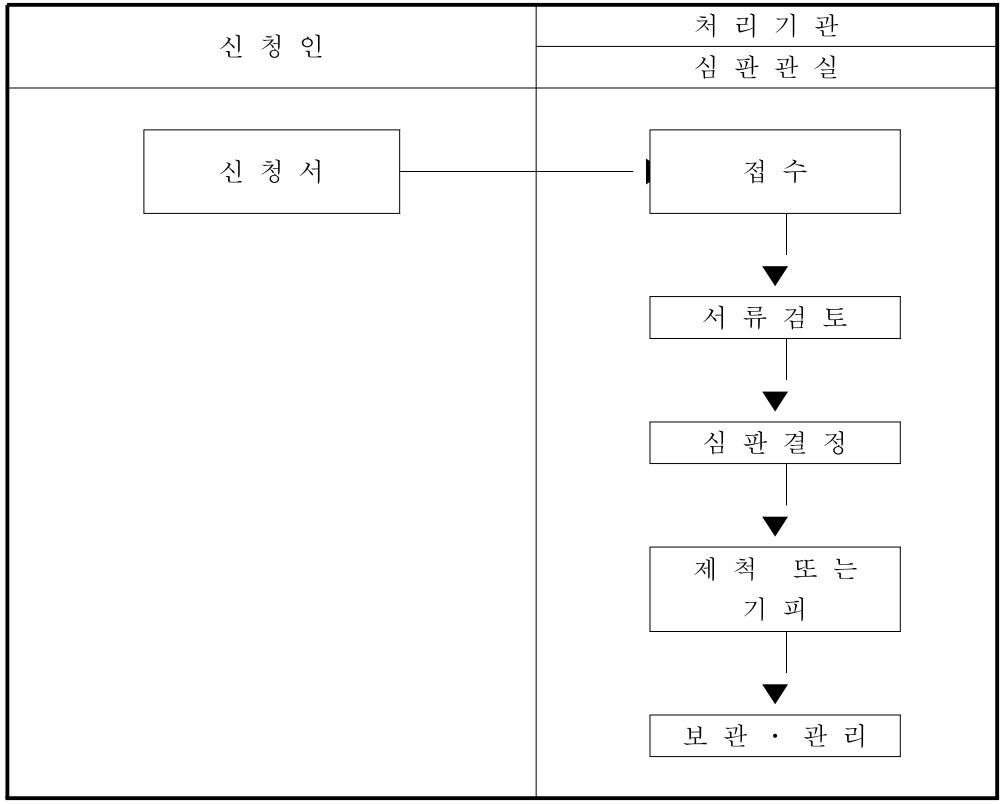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서식 표제 좌측의 신청종류를 나타내는 (□제척,□기피)중 해당란에 표시(V)를 하여 신고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⑫제척 또는 기피의 이유"란에는 제척 또는 기피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⑬증거방법"란에는 제척 또는 기피의 이유란에서 기재된 증거로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등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⑭첨부서류 및 물건의 목록"란에는 증거방법란에서 제출하는 서류 및 물건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 ※ 작성요령에 의하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심판참가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 주 소		④전화번호
	⑤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⑥ 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전화번호
⑩심판번호			
⑪참가의 이유			
⑫참가의 종류			

「종자산업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6조제1항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심판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신청서 부본 1부	없 음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7271-32111민

97.12.23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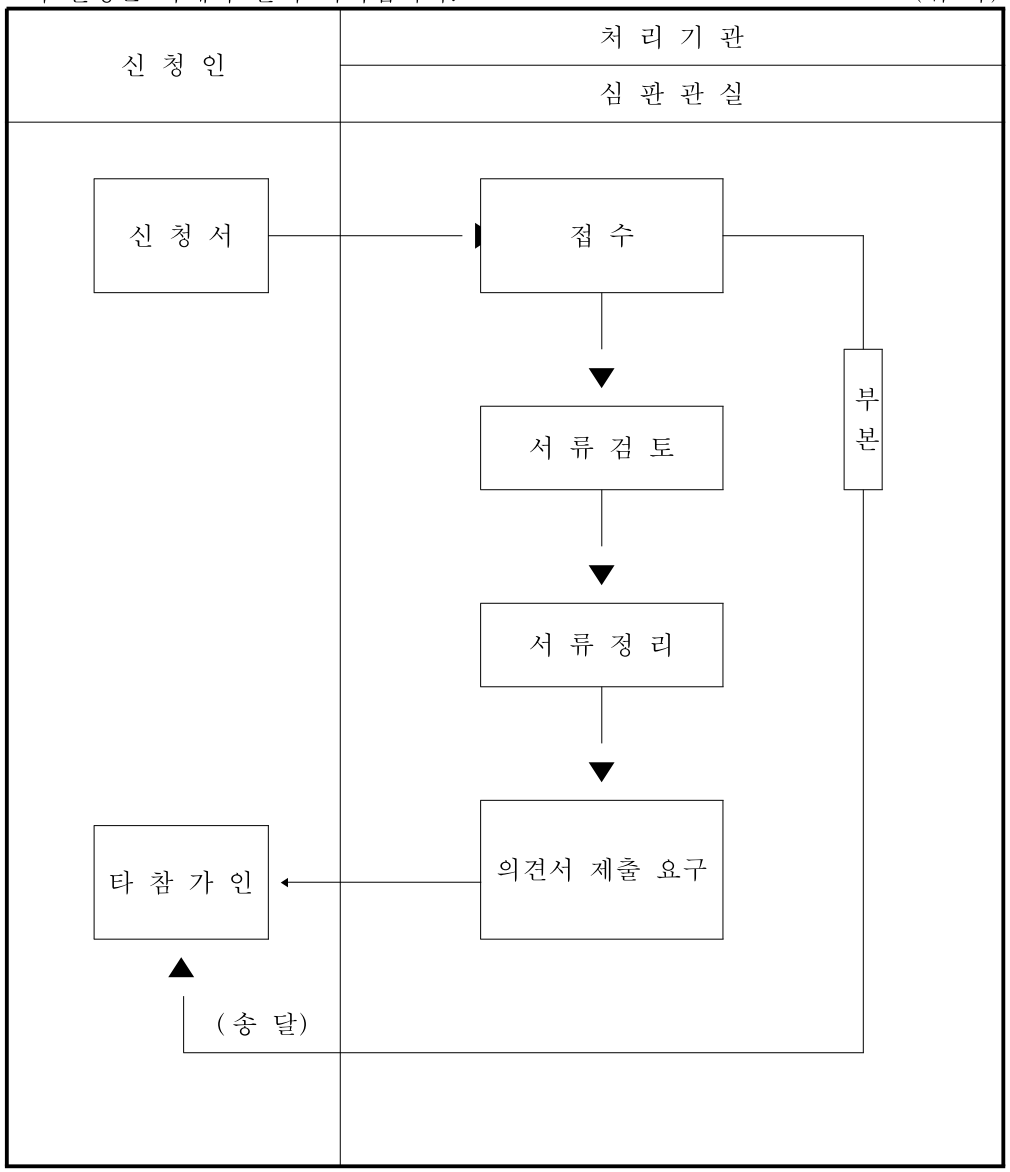

※작성요령

1. "⑪참가의 이유"란에는 참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⑫참가의 종류"란에는 참가의 종류(공동심판참가, 보조참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 심 판 참 가 신 청 ┐
　　　　　　　　　　　│ 의견서
□ 증거조사(증거보전)결과 ┘

제 출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사건과의 관 계			
대 리 인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전 화 번 호	
⑩심 판 번 호				
통지사항	⑪통지를 받은날짜		⑫제 출 마 감 날 짜	
⑬의 견 내 용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심 판 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1. 의견서 부본 1부 2.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 각 2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없 음

27271-32211민
97. 12. 23.승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2)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제 출 인	처 리 기 관 심 판 관 실
의 견 서	접 수 → 서류검토 → 서류정리 → 심판참고

※ 작성요령

1. 서식 표제 좌측의 신고종류를 나타내는 (□ 심판참가신청,□ 증거조사(증거보전)결과)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신고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통지사항』란에는 심판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짜 및 제출마감일자의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⑬의견내용”란에는 의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 ※작성요령에 의하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의견서”로 보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증거보전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 주 소		④전화번호	
	⑤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⑥ 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전화번호	
⑩심판번호				
⑪증거				
⑫증명방법				
⑬첨부서류 및 물건의 목록				

「종자산업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7조제1항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산 림 청 장
심 판 장 귀하

구비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원

27271-32311민

99.6.12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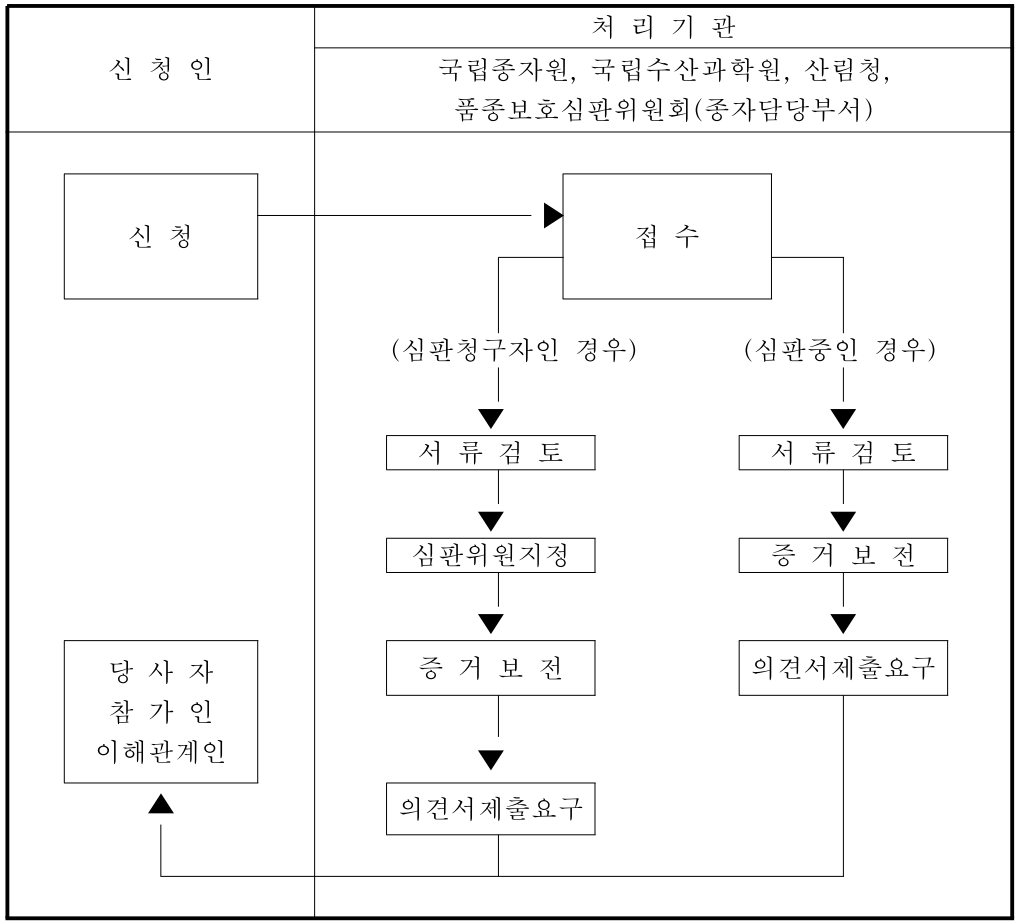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⑪증거”란에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⑫증거방법”란에는 증거란에 기재된 증거로서 국립종자관리소장·산림청장·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등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⑬첨부서류 및 물건의 목록”란에는 증거방법란에서 제출하는 서류 및 물건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 작성요령에 의하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심리재개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 주 소		④전화번호	
	⑤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⑥ 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전화번호	
⑩심판번호			⑪심리종결 통지일자	
⑫심리재개의 취지				
⑬심리재개의 이유				
⑭증거방법				
⑬첨부서류 및 물건의 목록				

「종자산업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리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심판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신청서 부본 1부	없 음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7271-32411민 210㎜×297㎜

97.12.2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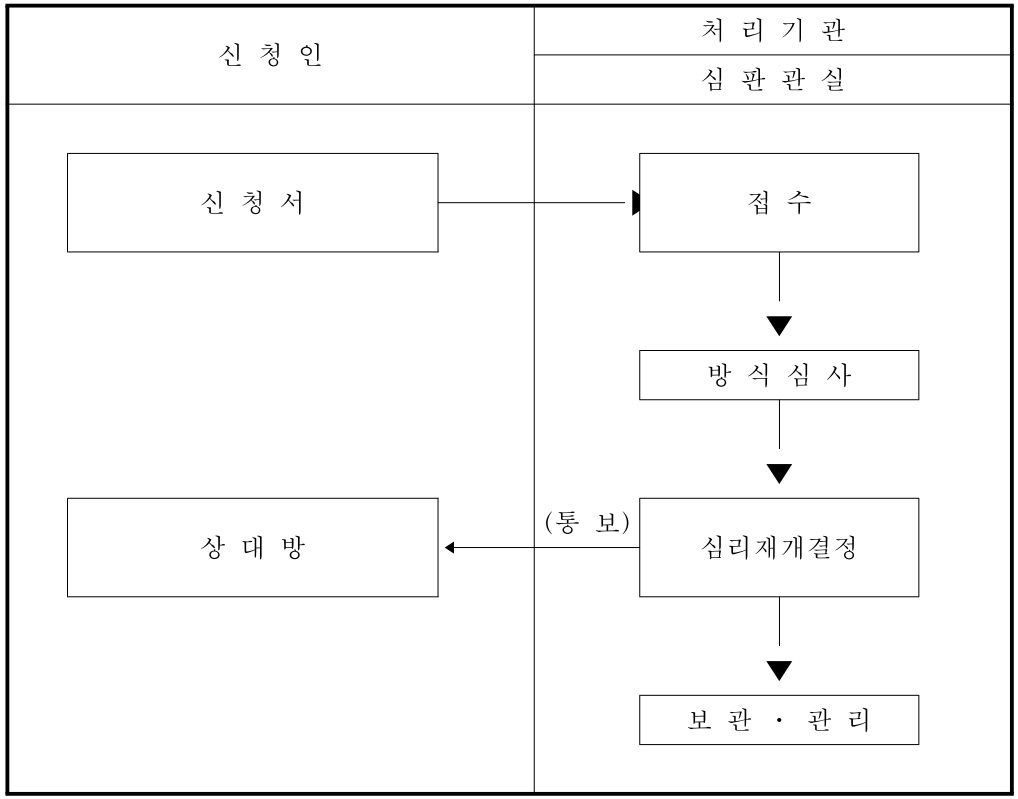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⑫심리재개의 취지”란에는 심리재개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⑬심리재개의 이유”란에는 심리재개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⑭증거방법”란에는 심리재개의 이유란에 기재된 증거로서 심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⑮첨부서류 및 물건의 목록”란에는 증거방법란에서 제출하는 서류 및 물건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 ※ 작성요령에 의하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재 심 청 구 서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전화번호	
피청구인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⑪주소		⑫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⑬심판번호		⑭ 심결또는 결정송달일자	
⑮청구의 취지				
⑯청구의 이유				
⑰증거방법				
⑱첨부서류 및 물건의 목록				
⑲원결확정일자		⑳재심사유를 안 날		

「종자산업법」 제10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청구서 부본 1부	원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7271-32511민

97.12.23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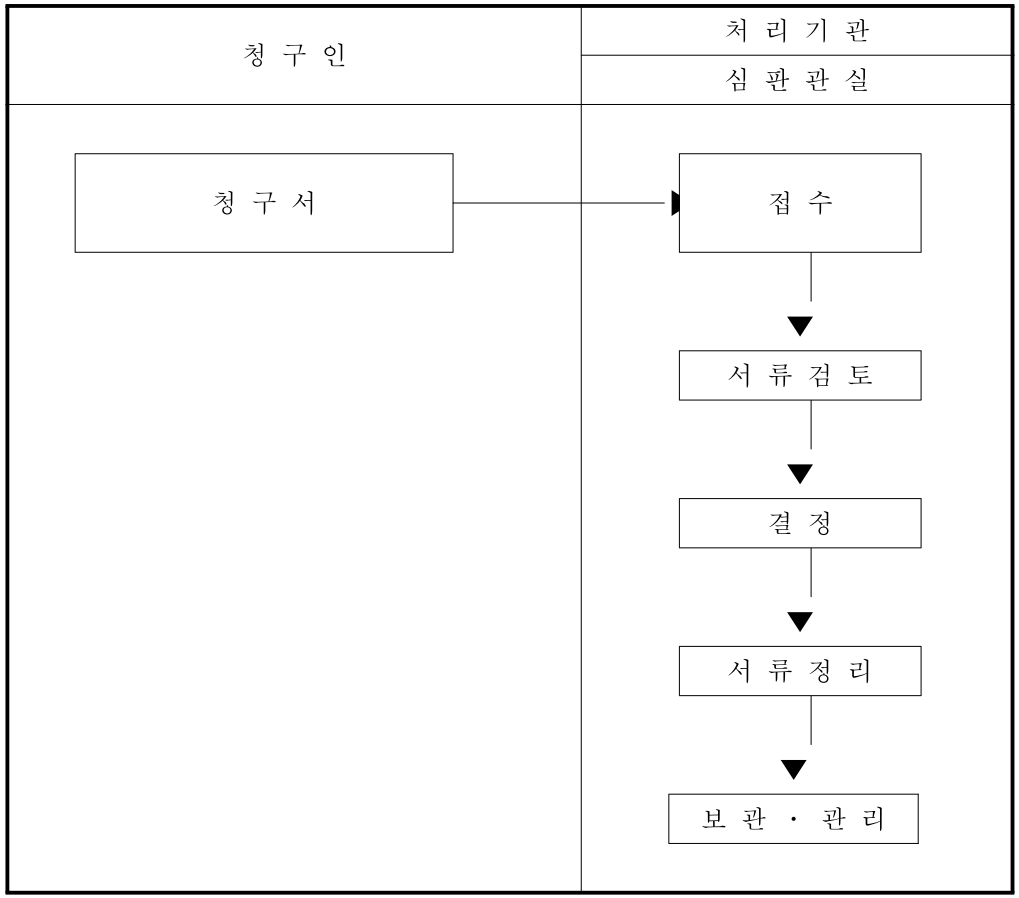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⑮청구의 취지”란에는 청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⑯청구의 이유”란에는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⑰증거방법”란에는 청구의 이유란에 기재된 증거로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⑱첨부서류 및 물건의 목록”란에는 증거방법란에서 제출하는 서류 및 물건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 ※ 작성요령에 의하되, “신고인”을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으로, “신고서”를 “청구서”로 보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table>
<tr><td colspan="8">직 무 육 성 품 종 신 고 서</td></tr>
<tr><td rowspan="4">신 청 인
(직무육성자)</td><td>①성 명</td><td></td><td>②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4"></td></tr>
<tr><td>③주 소</td><td></td><td>④전 화 번 호</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소 속</td><td>⑤현 재</td><td></td><td rowspan="2">직
급</td><td>⑥현 재</td><td colspan="2"></td></tr>
<tr><td>⑦육성당시</td><td></td><td>⑧육성당시</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⑨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⑩품 종 의 명 칭</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⑪공동육성여부</td><td colspan="3">□ 공동 □ 단독</td><td>⑫지 분</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공동육성자</td><td>⑬성 명</td><td colspan="2"></td><td>⑭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td><td colspan="2"></td></tr>
<tr><td>⑮주 소</td><td colspan="2"></td><td>⑯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8">「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조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육성기관의 장 귀하</td></tr>
<tr><td colspan="5">구비서류: 직무육성품종 설명서 1부</td><td colspan="3">수수료
없음</td></tr>
</table>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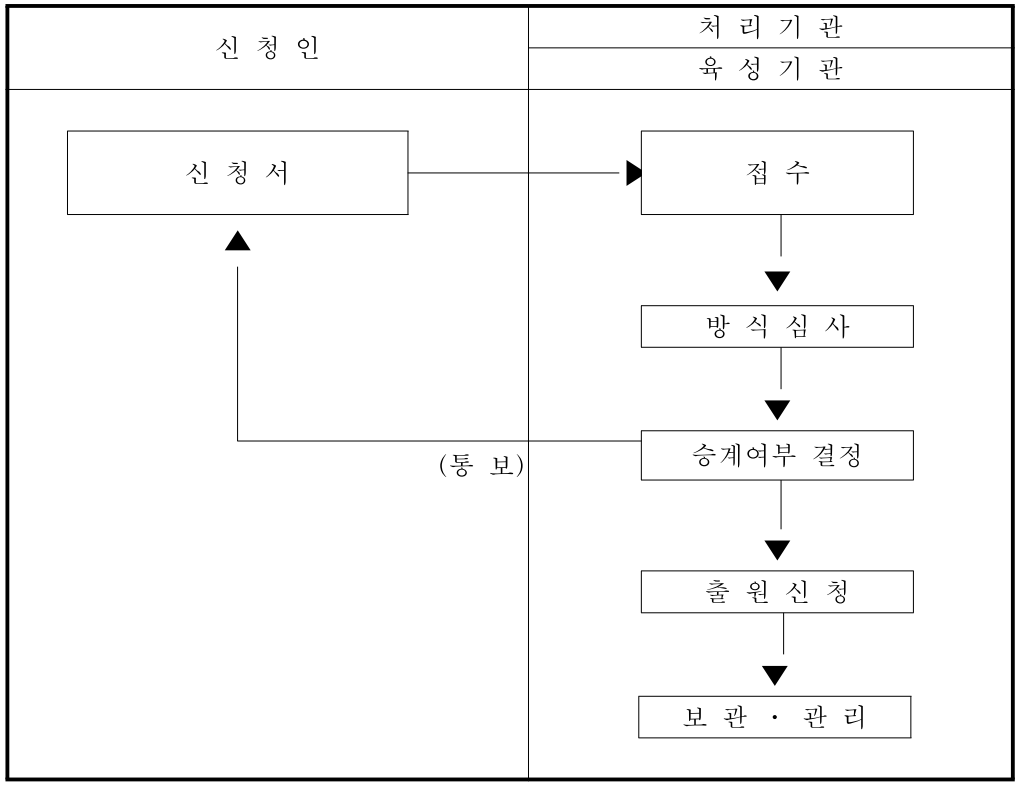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신청인(직무육성자)의 『소속』란에는 육성당시의 소속과 현재의 소속을 구분하여 적어야 하고, 『직급』란에는 육성당시의 직급과 현재의 직급을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2. "⑪공동육성여부"란에는 표제좌측의 신고종류를 나타내는(□ 공동, □ 단독)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신고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3. "⑫지분"란에는 공동육성자가 공동으로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하는 경우 상호간의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때에는 "△/□"와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적어야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직무육성자)"으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신고서

신 고 인 (직무육성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소 속	⑤현 재		직 급	⑦ 현 재	
		⑥육성당시			⑧육성당시	
사건의 표시	⑨출원번호		⑩출 원 일 자			
⑪작 물 의 명 칭						
⑫품 종 의 명 칭						
⑬품종보호 출원 사유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보호 출원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육성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직무육성품종 설명서 1부 2.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품종보호 출원서 부본 1부	없음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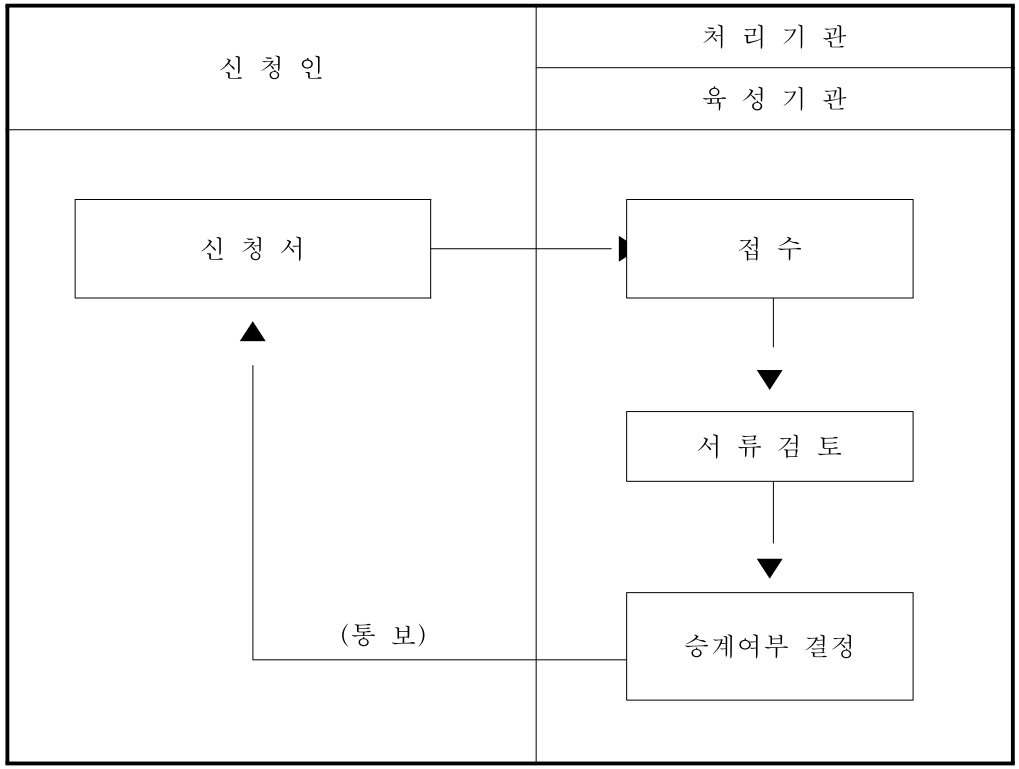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⑬품종보호 출원 사유”란에는 직무육성자 명의로 긴급하게 품종보호 출원을 한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0.9.1>

접수인란		결재인란	
견 적 서			
제 출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국유품종보호권의 표 시	⑤품종 보호 등록 번호		
	⑥작물의 명칭		
	⑦품종의 명칭		
⑧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 적 금 액			
⑨견적금액 산정근거 및 명세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 림 청 장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0.9.1>

접수인란		결재인란	
실 시 승 인 신 청 서			
국유품종보호권의 표시	①품종보호 등록번호		
	②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③품종의 명칭		
실시권 범위	④실 시 기 간		
	⑤실 시 지 역		
	⑥실 시 내 용		
⑦유 · 무 상 여 부		□ 유 상 □ 무 상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시승인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 림 청 장

구비서류	수수료
1.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실시료 견적서 1부(「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없음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0.9.1>

접수인란		결재인란	

수 의 계 약 신 청 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국유품종 보호권의 표시	⑤품종보호권 등록번호		⑥작물의 명칭	
			⑦품종의 명칭 (영문명)	
⑧처 분 의 종 류		□ 양도 □ 전용실시권 설정 □ 통상실시권 허락		
실 시 권 범 위		⑨실 시 기 간		
		⑩실 시 지 역		
		⑪실 시 내 용		
⑫양도대금의 견적금액 또는 실시료 견적 금액				
⑬수 의 계 약 사 유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 림 청 장

구비서류	수수료
1.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 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 1부	없음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새로운 품종명칭제출서

제 출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대 리 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전 화 번 호	
사 건 의 표 시	⑨출원 번호 접수 번호		⑩출 원 일 자 접 수 일 자	
⑪제출 원인	□ 거절이유 통보 □ 취소사유 통보		⑫거절이유 또는 취 소 사 유	
⑬통 보 를 받 은 일 자			⑭제출마감일자	
⑮ 작 물 의 명 칭				
⑯ 품 종 의 명 칭				
⑰ 새로운 품종 명칭	(한글) (영문)			

「종자산업법」 제111조제5항, 제1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산 림 청 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제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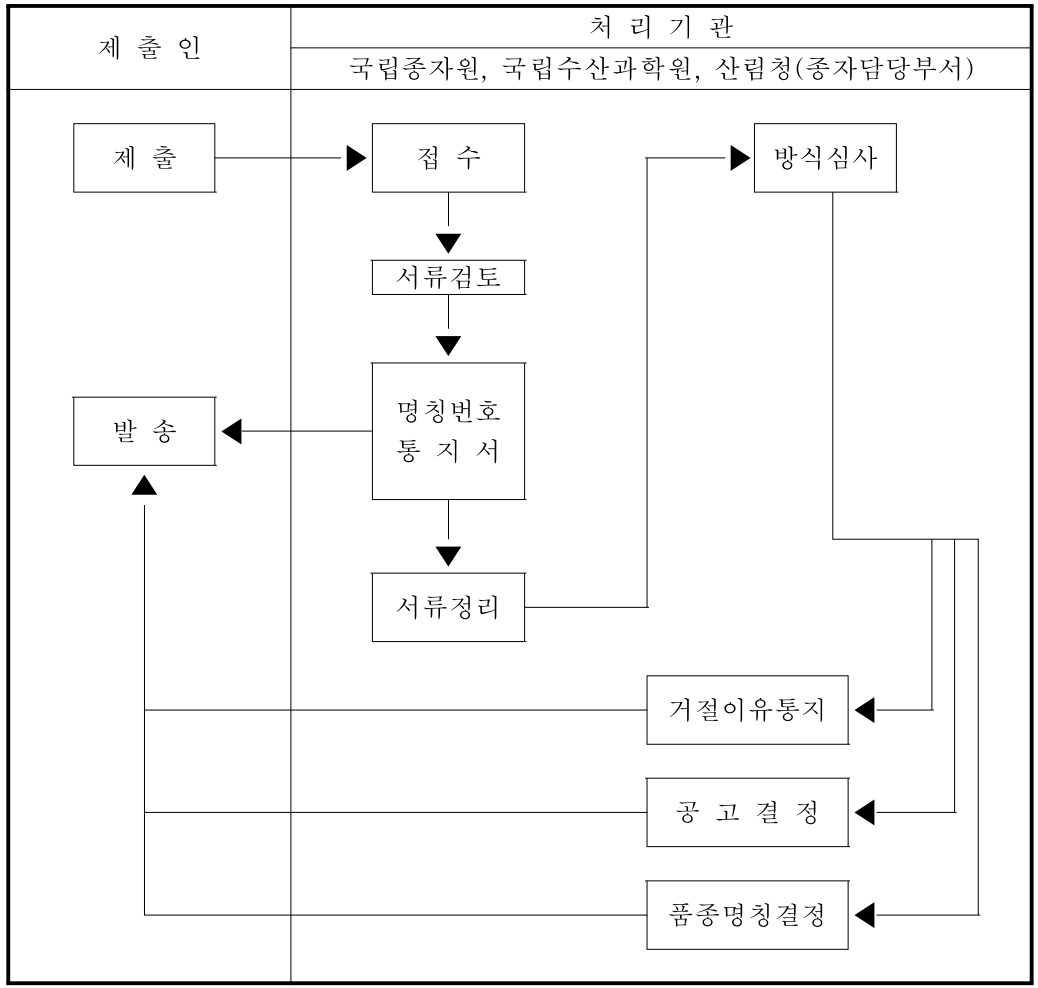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⑪제출원인"란의 표제좌측의 신고종류를 나타내는(□거절이유 통보, □취소사유통보)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신고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⑫거절이유 또는 취소사유"란에는 심사관으로부터 받은 거절이유 또는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제출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5호의2서식] <신설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 인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이의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대 리 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전 화 번 호	
출 원 인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⑪주 소		⑫전 화 번 호	
대 리 인	⑬성 명		⑭주민등록번호	
	⑮주 소		⑯전 화 번 호	
사 건 의 표 시	⑰출 원 번 호		⑱출 원 일 자	
	⑲출원공고번호		⑳출원공고일자	
㉑담 당 심 사 관				
㉒신 청 이 유				
㉓증 거				
㉔증 거 방 법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산 림 청 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본 1부	원
2.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7271-30611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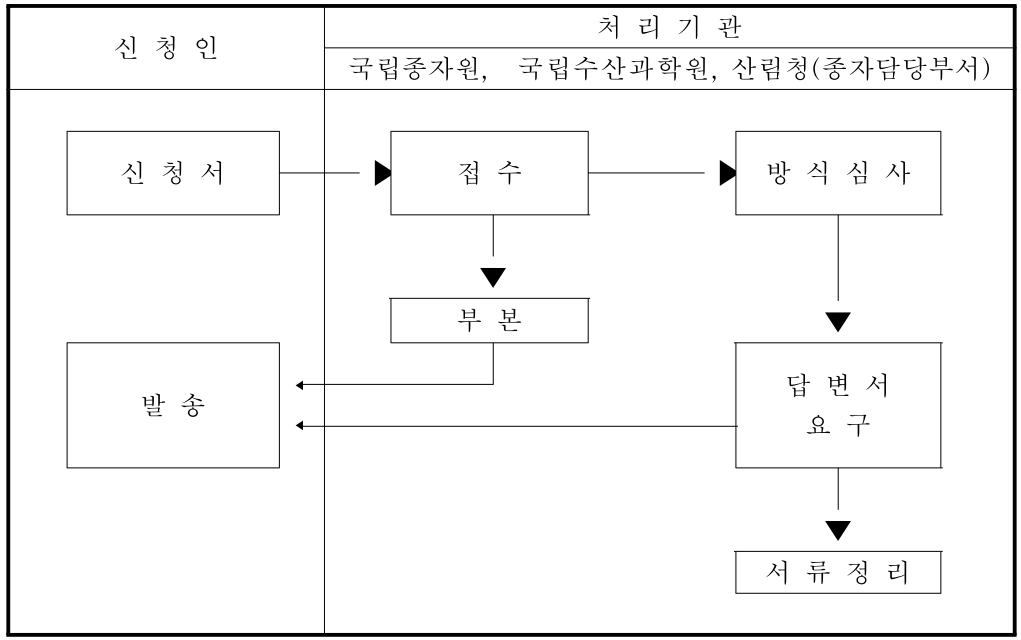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출원인』란의 기재는 출원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㉒신청이유"란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를 구체적 증거를 들어 기재하여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㉓증거"란에는 간행물등의 증거에 의하여 출원된 품종이 품종보호요건을 흠결하고 있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㉔증거방법"란에는 증거란에 기재된 증거로서 국립종자관리소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등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 작성요령에 의하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5호의3서식] <신설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 재 인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제 출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대 리 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전 화 번 호	
이 의 신 청 인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⑪주 소		⑫전 화 번 호	
대 리 인	⑬성 명		⑭주민등록번호	
	⑮주 소		⑯전 화 번 호	
사 건 의 표 시	⑰출 원 번 호		⑱출 원 일 자	
⑲통 지 일 자			⑳답 변 서 제 출 마 감 일 자	
㉑담 당 심 사 관				
㉒답 변 내 용				
㉓증 거 방 법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8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 림 청 장

구비서류

1. 답변서 부본 1부
2.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7271-30711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0.9.1>

품 종 명 칭 등 록 원 부

품종명칭 등록번호	제 호		
출 원 연 월 일	년 월 일	출 원 번 호	
출 원 의 원 인	□ 품종보호 □ 국가품종목록등재 □ 품종생산 · 판매		
출원 공고 연월일	년 월 일	출원 공고 번호	
결정 연 월 일	년 월 일	담 당 심 사 관	
작 물 의 명 칭			
품 종 의 명 칭			
년 월 일 등록			
기 타 란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서			
신 청 인	①성 명 (대 표 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법인명칭		⑤전 화 번 호
대 리 인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전 화 번 호
육 성 자	⑩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⑫주 소		⑬전 화 번 호
⑭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⑮품 종 의 명 칭			
⑯품종육성과정의 설명	(별지사용)		
⑰품종의 성능 및 시험성적	(별지사용)		
⑱재 배 적 응 지 역			
⑲재 배 상 유 의 사 항			

「종자산업법」 제1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 림 청 장

구비서류	수수료
1. 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재배시험 적기 등을 고려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하는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품종목록 등재신청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환경 위해성 심사서 1부(유전자 변형품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원

27271-33311민 210mm×297mm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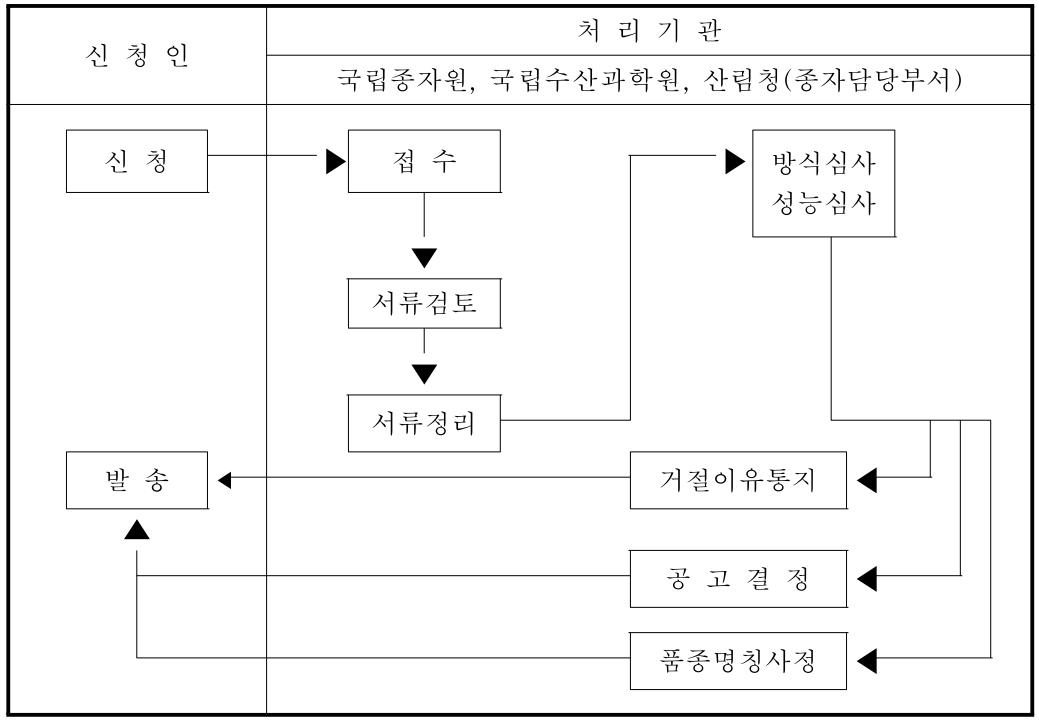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육성자』 란은 육성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육성자가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같음"이라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 란에는 신청서 제출시에 납부하는 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료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부영수증(서류첨부용)은 신청서 표지 뒷면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3. "⑭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학명: *Allim sepa* L., 일반명 : 양파
4. "⑮품종의 명칭"란에는 육성자가 육성한 품종의 명칭을 1개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⑯품종육성과정의 설명"란에는 종자산업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을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유전자변형종자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종자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6.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 작성요령에 의하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8호서식]

국가품종목록

국가품종목록등재번호	제 호		
등재신청에 관한사항	등재 신청인	①성 명 (대 표 자)	
		②주 소	
		③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④법 인 명 칭	
	⑤등 재 신 청 연 월 일		
품종에 관한사항	육 성 자	⑥성 명	
		⑦주 소	
		⑧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⑨품 종 이 속 하 는 작 물 의 학 명 및 일 반 명		
	⑩품 종 의 명 칭		
	⑪품 종 의 성 능		
	⑫재 배 적 응 지 역		
⑬담 당 심 사 관			
⑭등 재 유 효 기 간			
년 월 일 등재			
기 타 란			

27271-33411비 210mm×297mm
97.12.23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국가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법인명칭		⑤전화번호	
	⑥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⑦성		⑧주민등록번호	
	⑨주 소		⑩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⑪등재번호		⑫등재일자	
	⑬등재유효기간			
⑭작물의 명칭				
⑮품종의 명칭				
⑯연장신청의 기간				
⑰연장 이유				

「종자산업법」 제1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림청장

구비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원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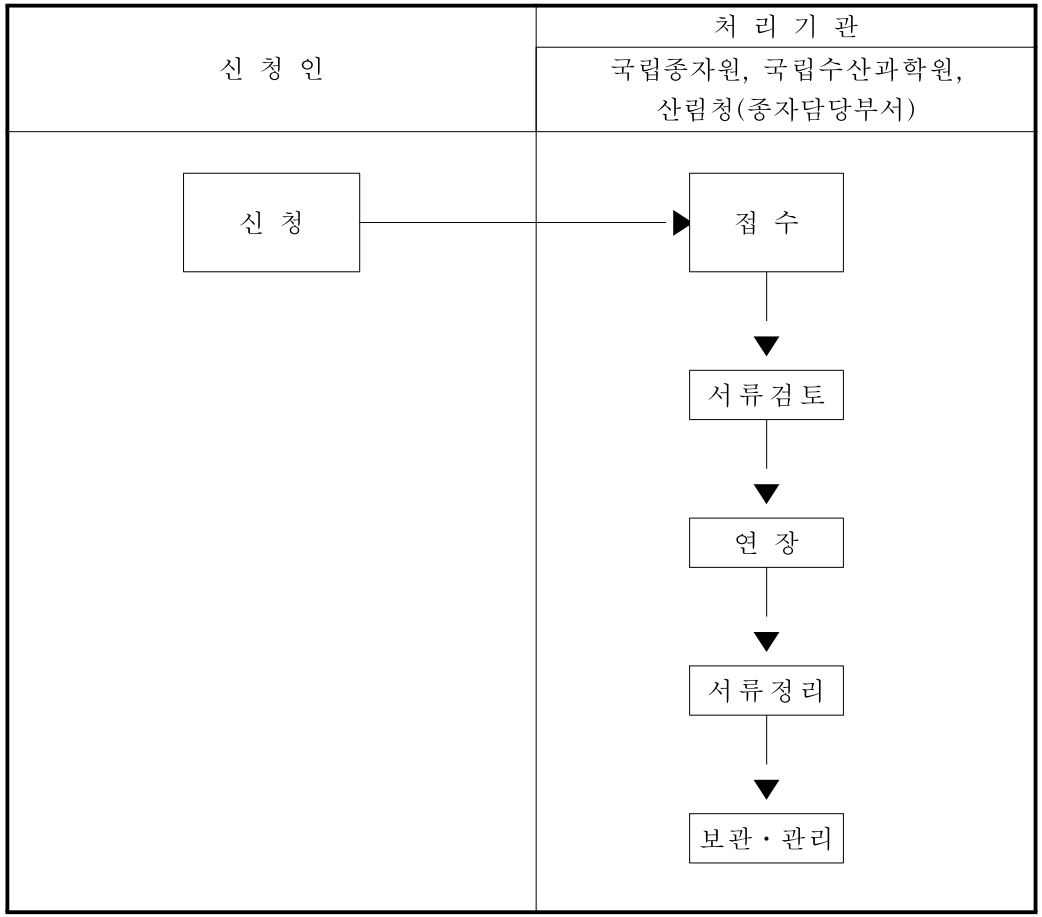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⑯연장신청의 기간"란에는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로 하며 신청기간을 년, 월, 일로 적어야 합니다.
2. "⑰연장 이유"란에는 연장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2호의2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종자관리사 등록신청서			□ 신규신청 □ 정정교부신청 □ 재교부신청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관 리 품 목		□일 반 □버 섯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01조의2제1항, 제10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 림 청 장

구비서류	수수료
1. 신규신청의 경우 가. 자격증 사본 1부 나.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1부 다.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합니다) 2매 2. 정정교부신청의 경우: 종자관리사 등록증 3. 재교부신청의 경우: 없 음	없 음

27271-36211민
99.6.12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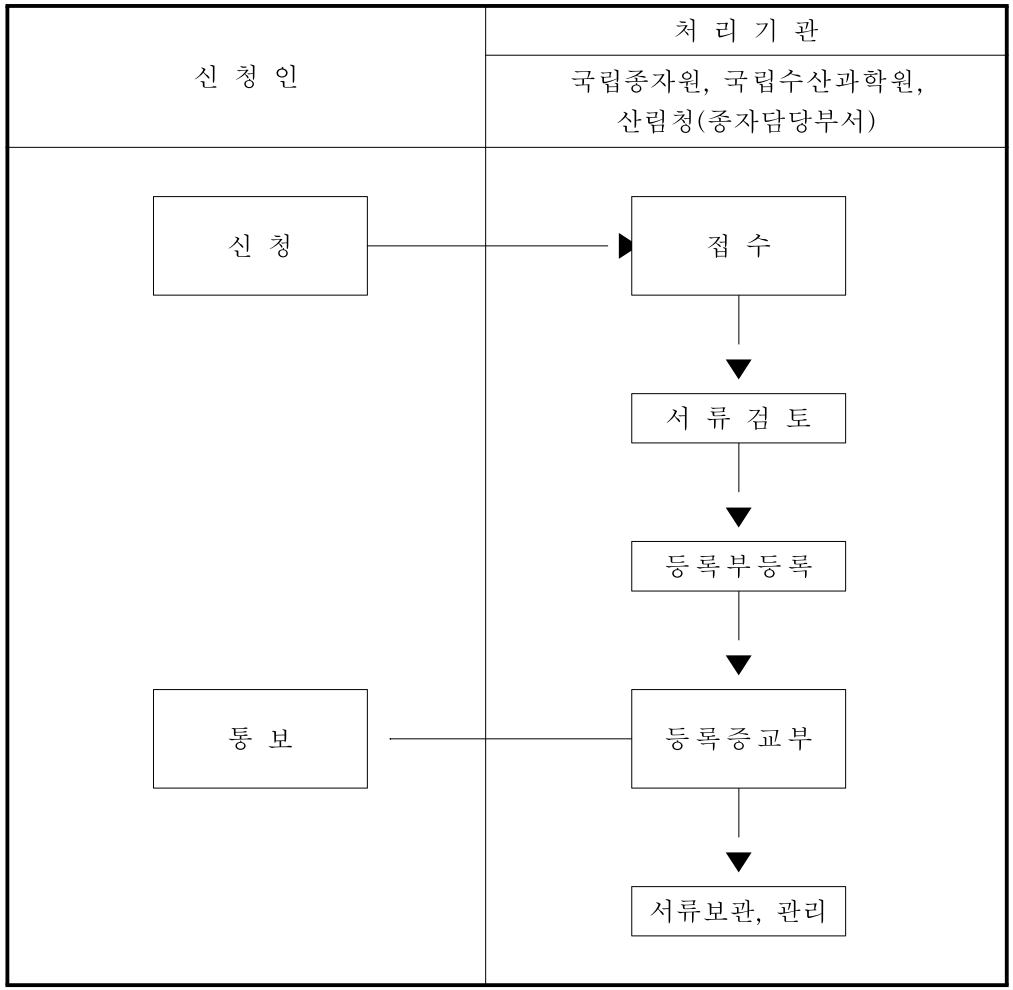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⑤관리품목"란의 신청종류를 나타내는 (□일반, □버섯)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 작성요령에 의하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아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52호의3서식] <개정 2010.9.1>

종자관리사 등록부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 종류	자격증 번호

27271-36311비
99.6.12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2호의4서식] <개정 2010.9.1>

사진
(3㎝×4㎝)

종자관리사 등록증

성명:
관리품목: □일반, □버섯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년 월 일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인)
산 림 청 장

27271-36411일
99.6.12 승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포장검사
□종자검사]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전화번호	
⑤품종의 명칭				
포장검사	⑥ 검 사 신 청 면 적 (a)		⑦검사희망일자	
	⑧ 포 장 소 재 지			
종자검사	⑨ 검사희망일자		⑩검사희망장소	
	⑪검사 신청량	포장단량(kg)		
		포장개수		
		중량(kg)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
국 립 수 산 과 학 원 장
종 자 관 리 사

	수수료
	원

27271-34011민

99.12.23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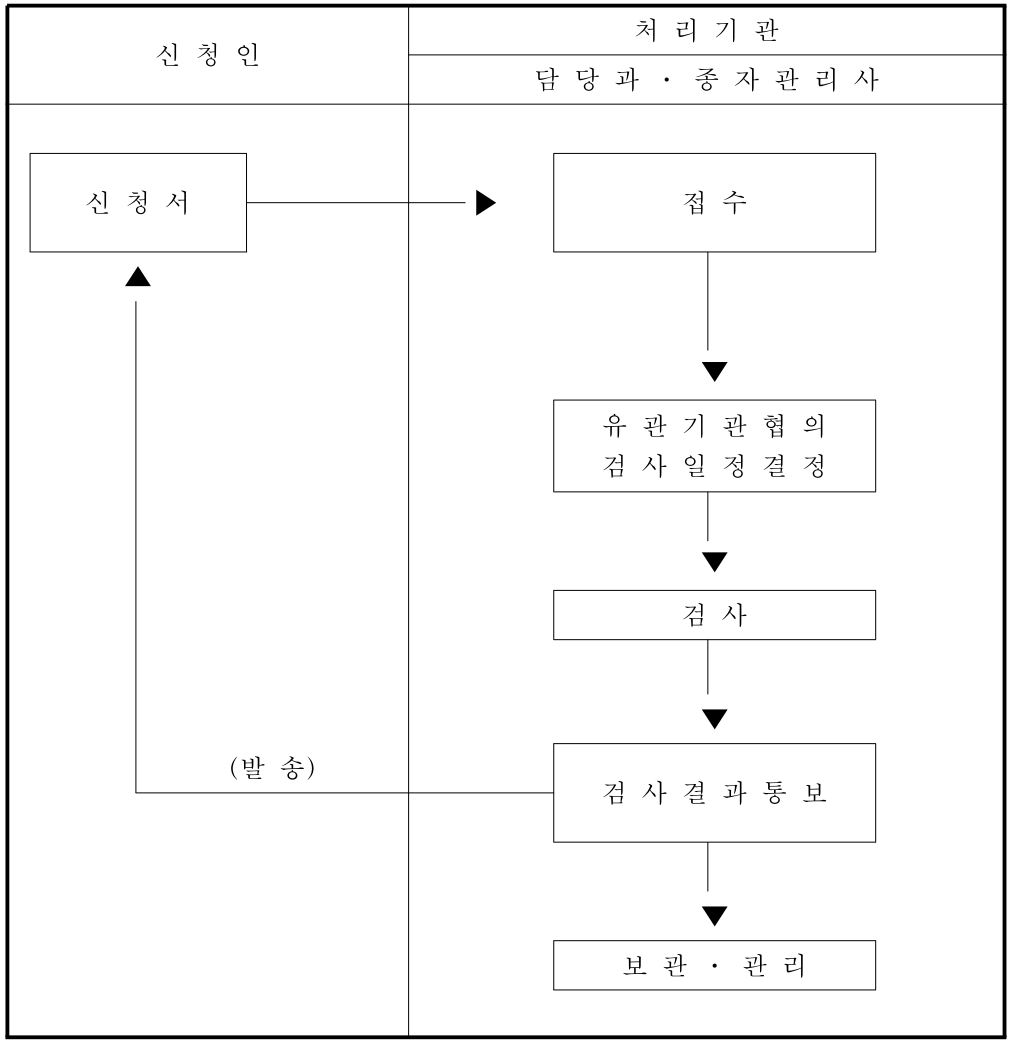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서식 표제 좌측의 신고종류를 나타내는 (□포장검사, □종자검사)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 ※작성요령중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아 1. 부터 5., 11. 및 12.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재검사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전화번호		
⑤ 품 종 의 명 칭					
⑥1차검사 일 자		⑦검 사 희망일자		⑧검사희망 장 소	
⑨검사 신청량	포장단량(kg)				
	포장개수				
	중량(kg)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종 자 관 리 사

구비서류: 종자검사 결과통지서 1부	수수료
	원

27271-34111민
97.12.23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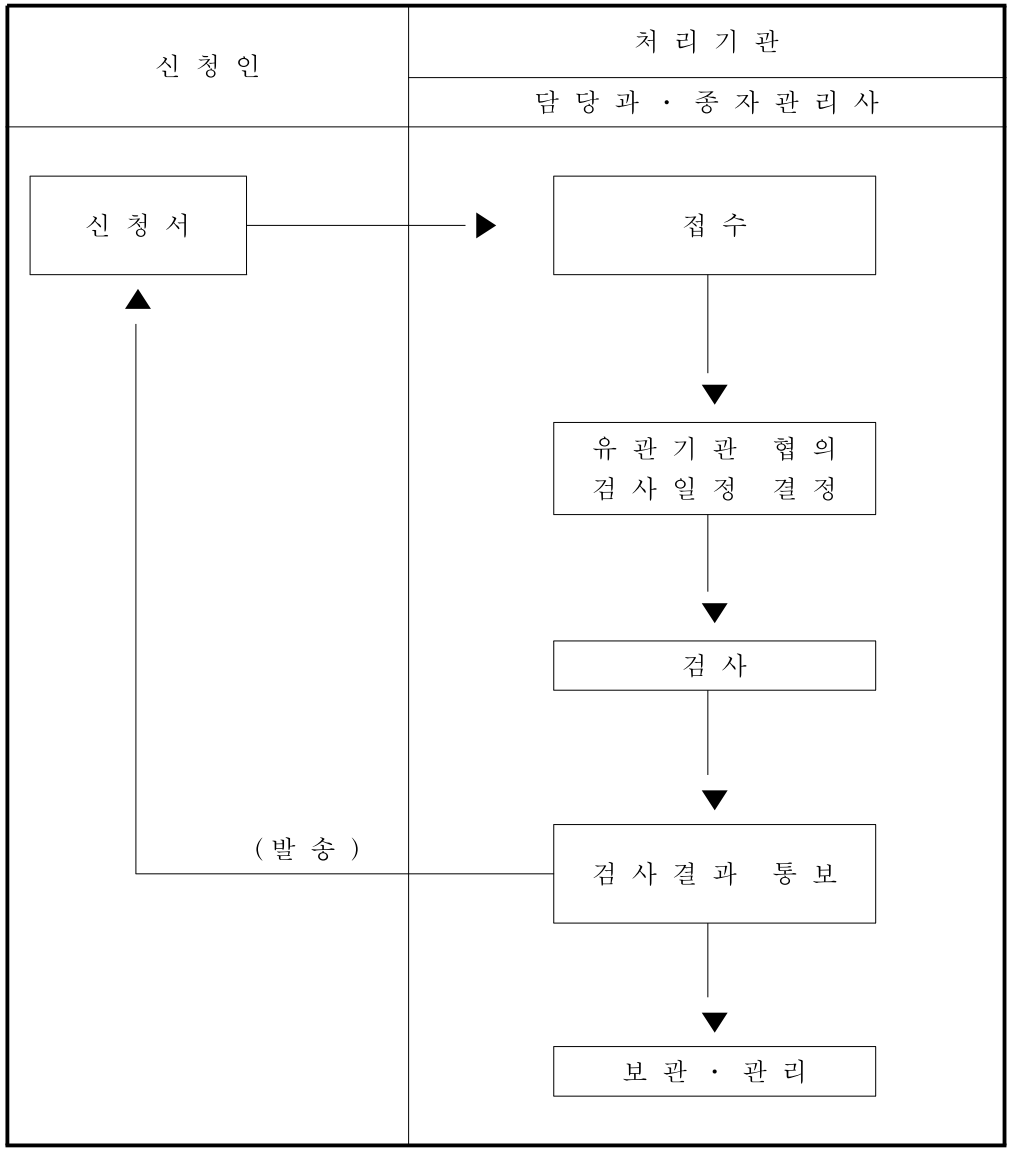

※ 작성요령

별지 제2호서식 ※작성요령 중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아 1. 부터 5., 11. 및 12.와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보증서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 작 물 의 명 칭				
⑥ 품 종 의 명 칭				
⑦종 자 롯 트 번 호			⑧채 종 단 계	

「종자산업법」 제1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서 발급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종 자 관 리 사

	수수료
	원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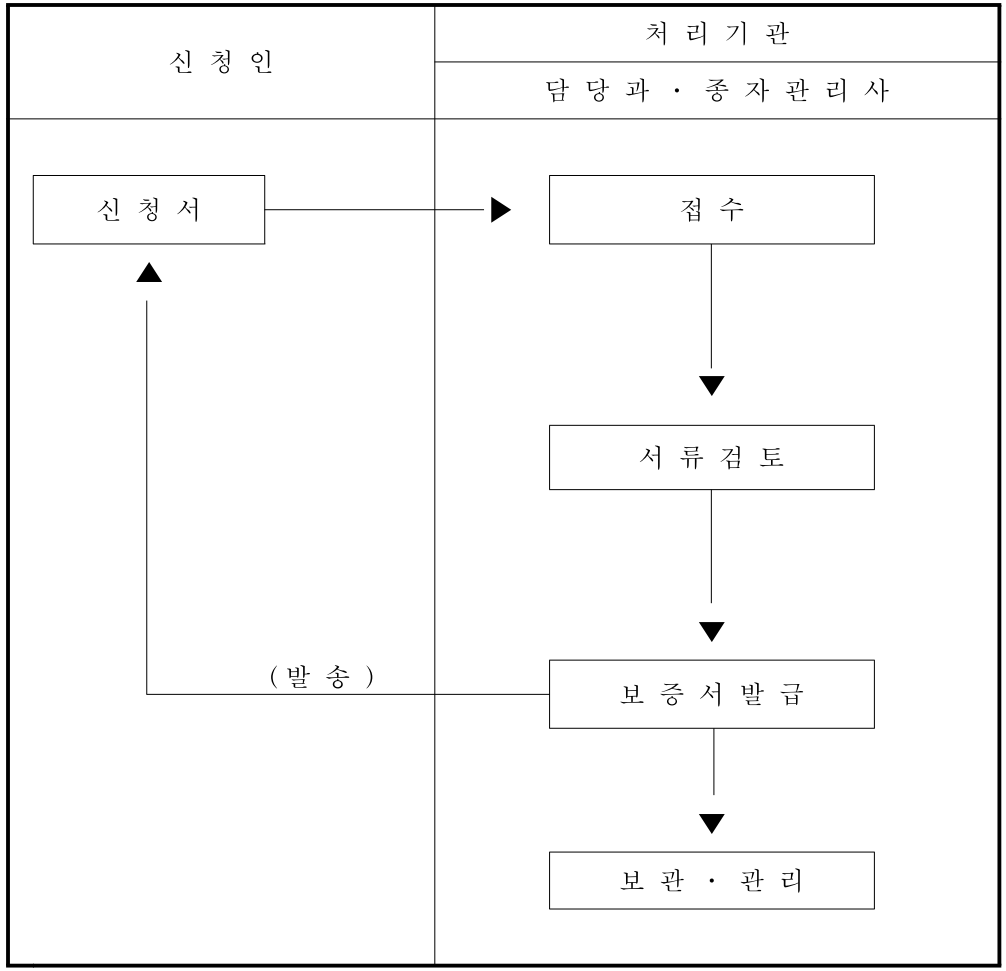

※ 작성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 중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0.9.1>

보증서

번호:

작물의 종류:

품종명칭:

채종단계:

종자롯트번호:

보증 유효기간:

「종자산업법」 제1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2항에 따라 위 종자롯트에 대한 종자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 립 종 자 원 장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종 자 관 리 사

27271-34311일
97.12.23 승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종자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 주 소 (전 화 번 호)			
	④ 법 인 명 칭			
내용	⑤ 상 호			
	⑥ 종자업종류	□ 채 소 □ 과 수 □ 화 훼 □ 버 섯 □ 뽕 □ 식 량 작 물 □ 기 타		
	⑦ 취 급 작 물			
	⑧ 주사무소의 소재지			
	⑨ 주 시 설 의 소 재 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귀하
군수
구청장

	수수료
	없음

27271-34411민
99.6.12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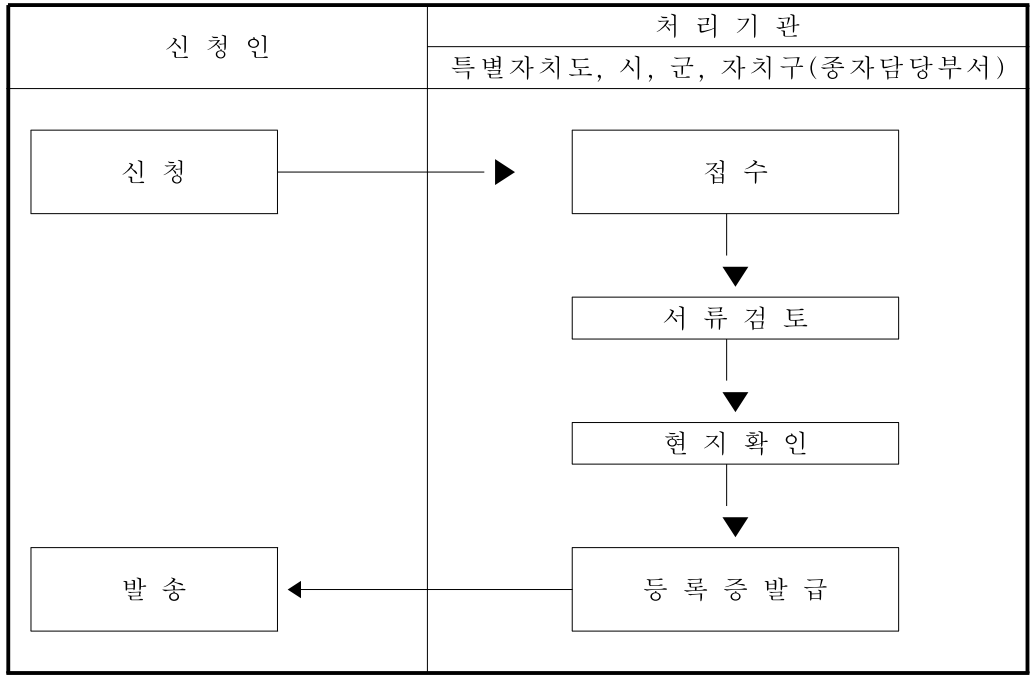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①성명(대표자)”란에는 개인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성명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②주민등록번호”란에는 개인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④법인명칭”란에는 개인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법인은 법인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⑥종자업 종류”란에는 등록한 종자업 종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종자업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등록한 종자업 종류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5. “⑦취급작물”란에는 취급코자하는 작물의 종류를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6. “⑧주사무소의 소재지”란에는 사업체가 소재하는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7. “⑨주시설의 소재지”란에는 연구소 또는 농장의 소재지이며, 주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8.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에 의하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10.9.1>

종 자 업 등 록 증

종자업등록번호 : 제 호

신 청 인	① 성 명 (대 표 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 주 소			
	④ 법 인 명 칭			
내 용	⑤ 상 호			
	⑥ 종 자 업 종 류	□ 채 소 □ 과 수 □ 화 훼 □ 버 섯 □ 뽕 □식량작물 □ 기 타		
	⑦ 주 사 무 소 의 소 재 지			
	⑧ 주 시 설 의 소 재 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자업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인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종자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			처리기간 7일
통지인	① 성 명 (대 표 자)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종자업등록번호		
변경사항	⑥ 변 경 전		
	⑦ 변 경 후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종자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원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통지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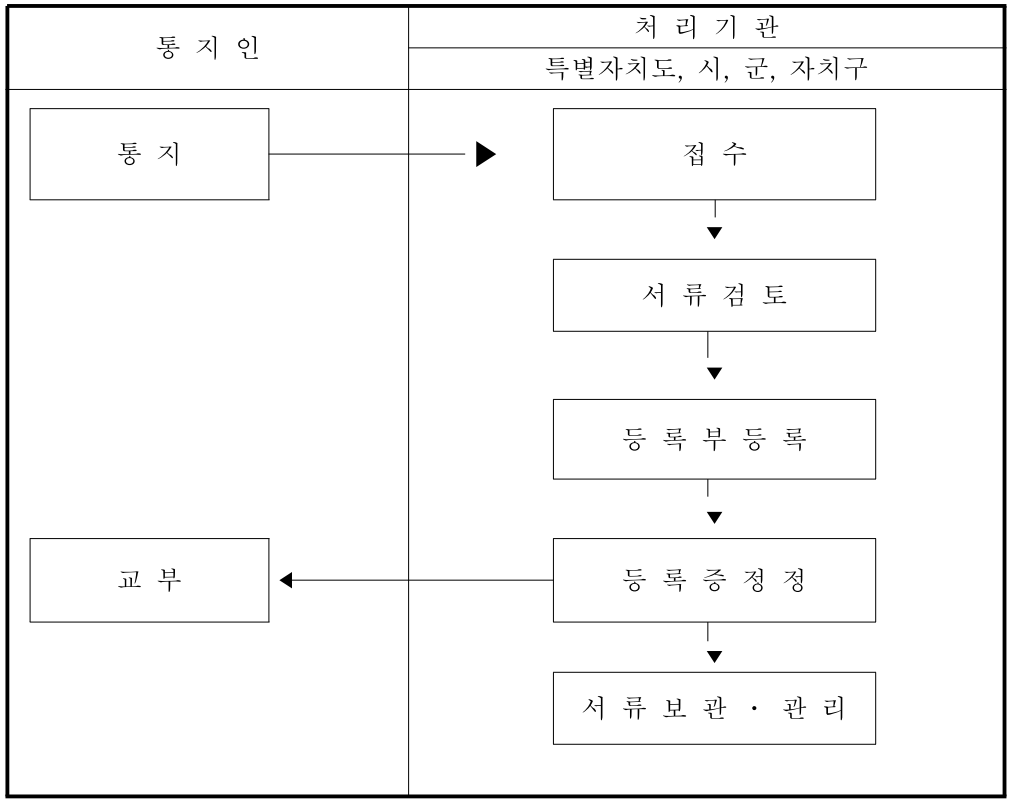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타자 또는 컴퓨터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서식 중 해당사항이 없는 난은 서식에서 삭제하고, 통지인이 2인이상인 경우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증설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통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①성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법인의 공식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②주민등록번호”란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가나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4. “③주소”란에는 통지인이 자연인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통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완전하게 기재하고, 반드시 주소 끝의 괄호안에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도 ○○시(군) ○○동(면) ○○리 ○○번지(△△△-△△△)
   *시・도 명칭은 2자리 약칭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충북)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종자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대 표 자)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사 건 의 표 시	⑤ 종자업등록번호		⑥ 종 자 업 등록일자
⑦ 재 교 부 사 유			
⑧ 사 유 가 발 생 한 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원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통지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통 지 인	처 리 기 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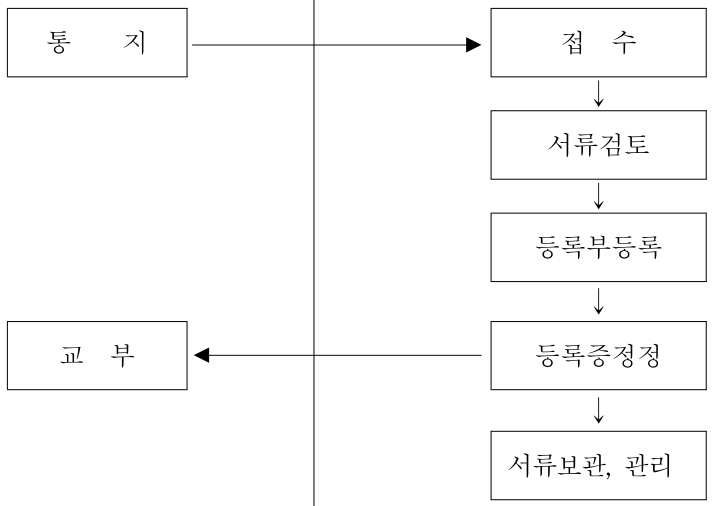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타자 또는 컴퓨터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서식중 해당사항이 없는 난은 서식에서 삭제하고, 통지인이 2인이상인 경우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증설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통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①성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법인의 공식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②주민등록번호”란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가 나 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길 동

4. “③주소”란에는 통지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통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완전하게 기재하고, 반드시 주소 끝의 괄호안에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도 ○○시(군) ○○동(면) ○○리 ○○번지(△△△-△△△)
   ※ 시・도 명칭은 2자리 약칭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 충청북도 → 충북)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①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법인명칭		⑤전 화 번 호	
대 리 인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전 화 번 호	
육 성 자	⑩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⑫주 소		⑬전 화 번 호	
⑭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⑮품종의 명칭				
⑯품종육성과정의 설명	(별지사용)			
⑰품종의 특성설명	(별지사용)			
⑱종자업 등록번호				

「종자산업법」 제1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 림 청 장

구비서류	수수료
1. 신고품종의 사진 또는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종자시료가 영양체 및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환경 위해성 심사서 1부(유전자 변형품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1부(같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품만 해당합니다) 6.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생산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원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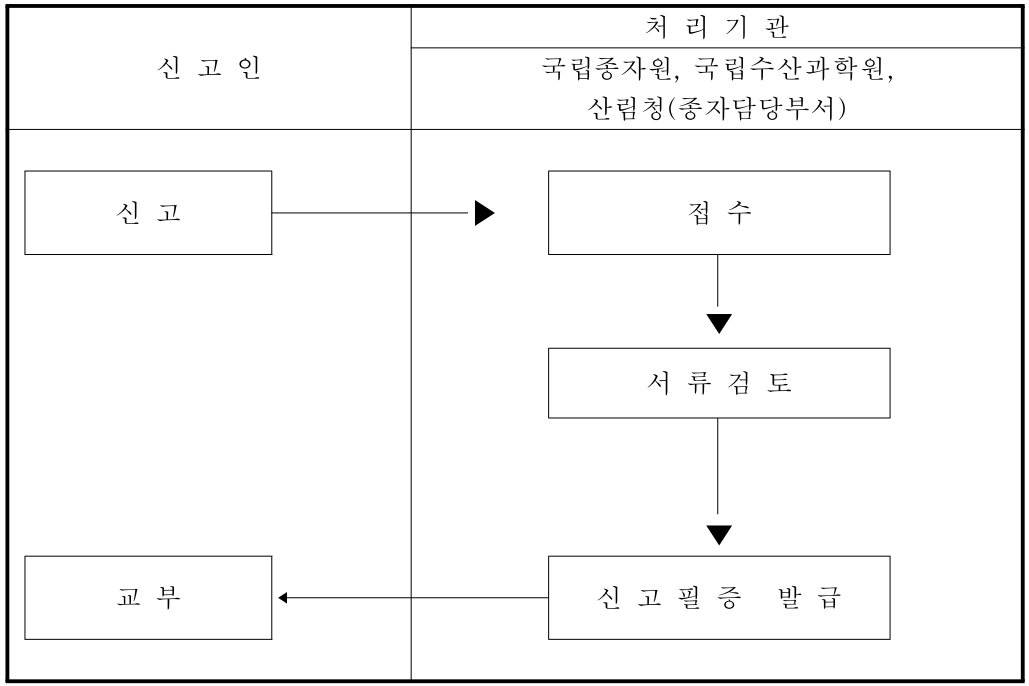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⑭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완전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학명: *Allim cepa* L., 일반명 : 양파
2. "⑯품종육성과정의 설명"란 및 "⑰품종의 특성설명"란에는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품종의 품종설명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고, 유전자변형종자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종자임을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⑯품종육성과정의 설명"란을 적을 때 수입품종의 경우에는 품종육성과정의 설명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⑱종자업등록번호"란에는 수입판매신고자 및 다른 종자업체의 종자를 분포장하여 판매하는 업체는 적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10.9.1>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필증

신고번호:

신고인	① 성 명 (대 표 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 주 소			
	④ 법 인 명 칭		⑤전화번호	
육성자	⑥ 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⑧ 주 소		⑨전화번호	
⑩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⑪ 품 종 의 명 칭				

「종자산업법」 제1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2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인)
산림청장

27271-34911일
99.6.12 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2호의2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대리인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전 화 번 호	
사 건 의 표 시	⑨품종생산·판매신고번호		⑩품종생산·판매 신고일자	
⑪ 재 교 부 사 유				
⑫ 사 유 가 발 생 한 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 림 청 장

	수수료
	원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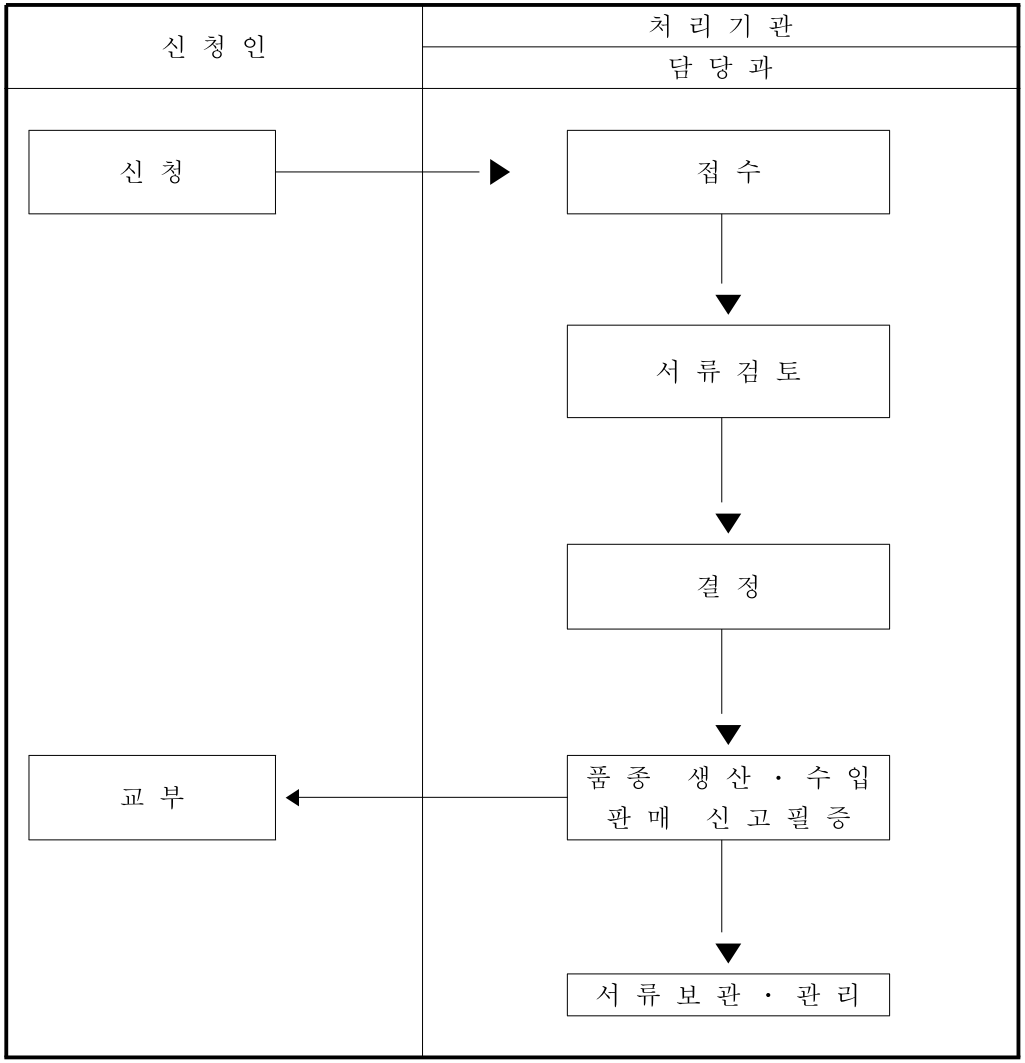

※작성요령

1. "⑪재교부사유"란에는 품종생산·판매신고필증의 잃어버림 또는 헐어 못쓰게 됨 등과 같은 재교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9조서식의 ※ 작성요령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종자 [□수 출 / □수 입] 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 성 명 (대 표 자)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 주 소			
	④ 법 인 명 칭		⑤ 전 화 번 호	
내용	⑥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⑦품종의명칭			
	⑧ 수 량			
	⑨ 목 적			
	⑩ 수출(수입)처 (원산지)			
	⑪ 수출(수입)예정일자			

「종자산업법」 제1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 림 청 장

구비서류	수수료
1. 종자보증서(수입의 경우만 해당하며,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처음으로 수입되는 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7271-35011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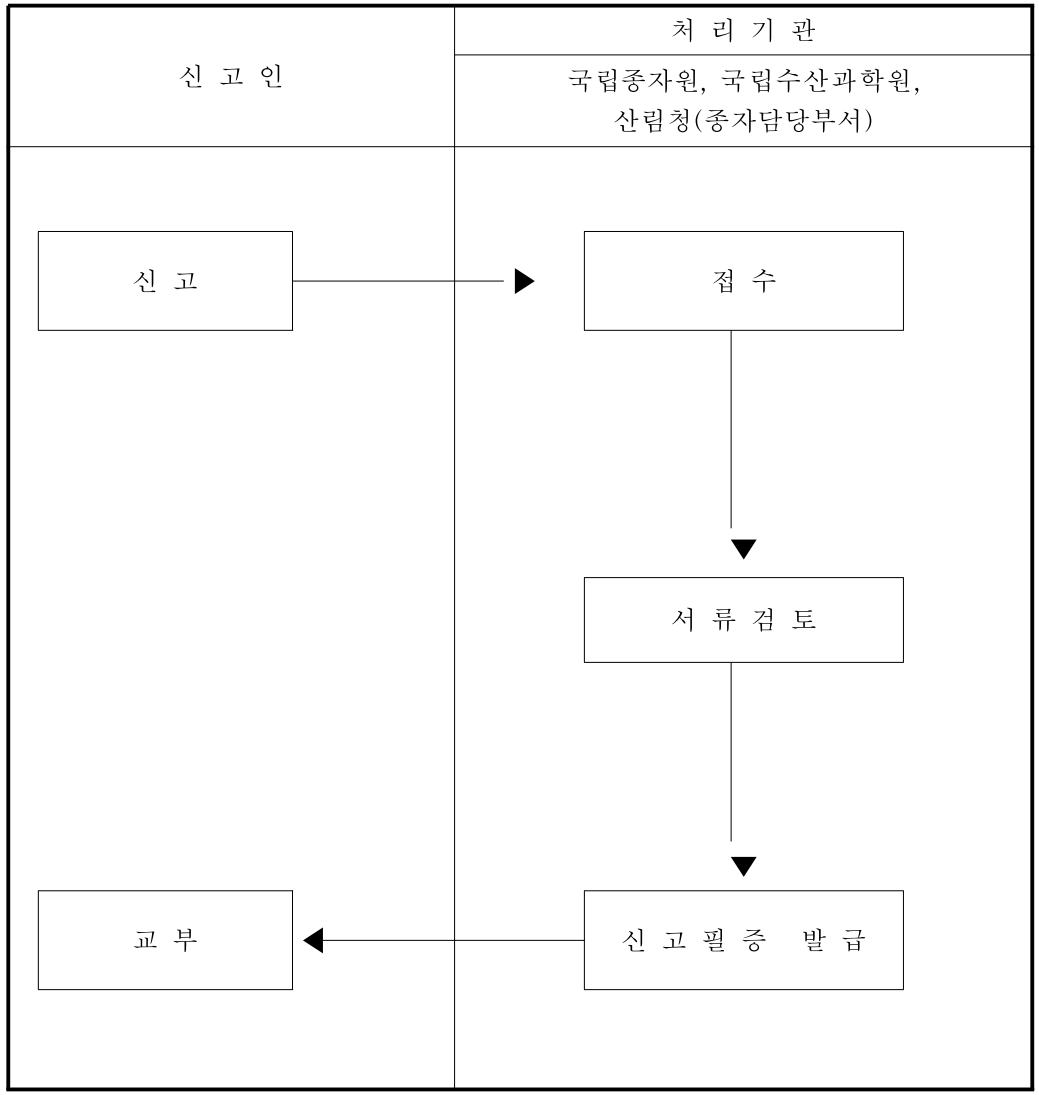

※작성요령

1. “⑥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학명: *Allim sepa L.,* 일반명: 양파
2. “⑨목적”란에는 종자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 작성요령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10.9.1>

종자수출(수입) 신고필증

신고번호:

신고인	① 성 명 (대 표 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 주 소			
	④ 법 인 명 칭		⑤전화번호	
내 용	⑥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⑦ 품 종 의 명 칭			
	⑧ 수 량			
	⑨ 목 적			
	⑩ 수출(수입)처(원산지)			
	⑪ 수출(수입)예정일자			

「종자산업법」 제1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에 따라 종자수출(수입)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국립종자원장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산림청장

27271-35111일
99.6.12 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수입적응성시험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대 표 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 주 소			
	④ 법 인 명 칭		⑤ 전 화 번 호	
내용	⑥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⑦ 품 종 의 명 칭			
	⑧ 육 성 자 의 성 명			
	⑨ 품종의 주요특성			
	⑩재배요령 및 유의사항			

「종자산업법」 제1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산 림 청 장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른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 귀하

구비서류: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 1부	수수료 원

27271-35411민
97.12.23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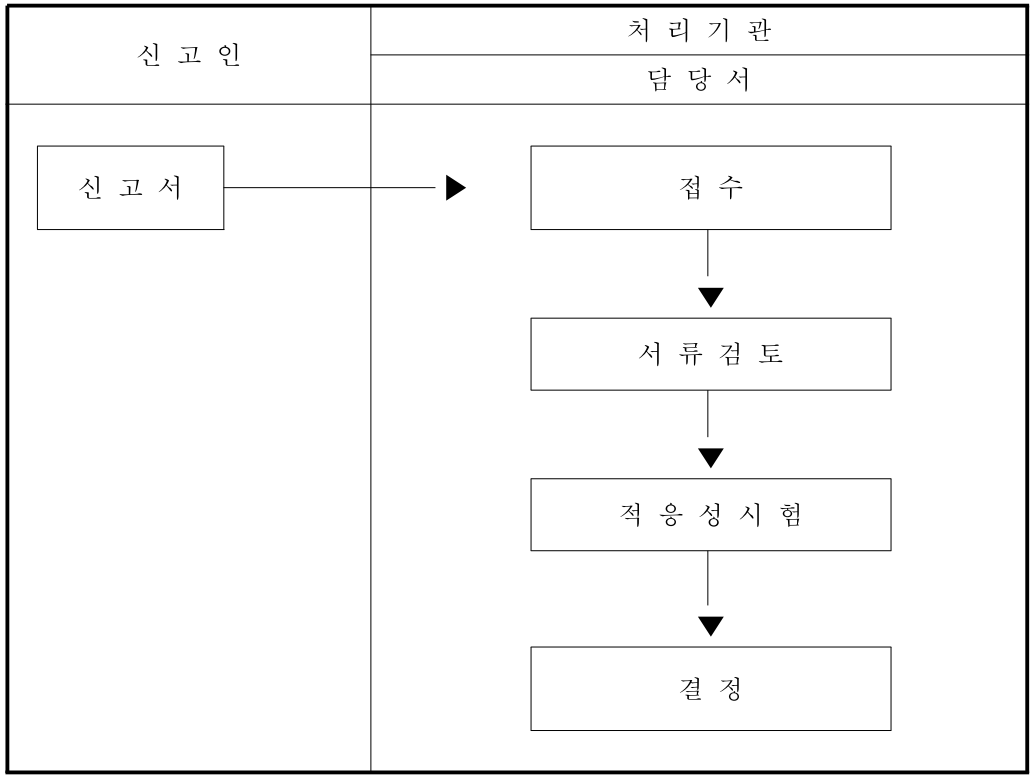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⑥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학명: *Allim sepa L.,* 일반명: 양파
2. “⑨품종의 주요특성”란에는 품종의 주요특성등에 관한 기재사항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유전자변형종자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종자임을 기재하여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⑩재배요령 및 유의사항”란에는 재배요령 및 유의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 ※ 작성요령 중 1. 부터 3., 5., 7., 11. 및 12.와 같이 기재하여야합니다.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 성 명 (대 표 자)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 주 소			
	④ 법 인 명 칭		⑤ 전 화 번 호	
내 용	⑥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⑦ 품 종 의 명 칭			
	⑧ 추 천 물 량			
	⑨ 수입처(원산지)			
	⑩ 수 입 예 정 일 자			

「종자산업법」 제1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행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수입신고서 및 구비서류 각 1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7271-35511민

97.12.23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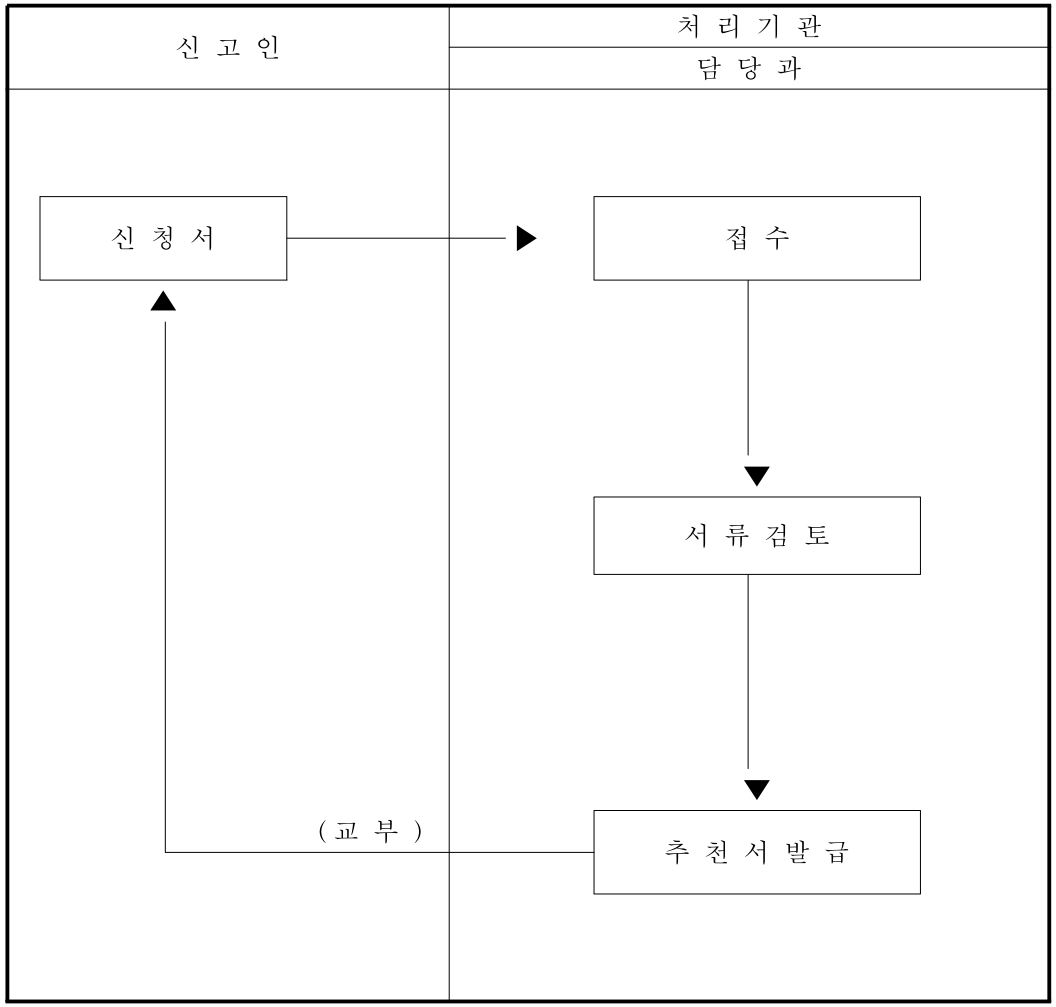

※작성요령

1. "⑥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학명: *Allim sepa L.,* 일반명:양파
2.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 작성요령 중 1. 내지 3., 5., 7., 11. 및 12.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10.9.1>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서

신고인	① 성 명 (대 표 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 주 소			
	④ 법 인 명 칭		⑤전화번호	
내 용	⑥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⑦ 품 종 의 명 칭			
	⑧ 추 천 물 량			
	⑨ 수입처(원산지)			
	⑩ 수 입 예 정 일 자			

「종자산업법」 제1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행기관의 장 인

27271-35611일
97.12.23 승인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10.9.1>

제 호

증 명
사 진
(2㎝×3㎝)

유통종자 단속 공무원증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종자산업법」 제14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제3항에 따른 유통종자 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산림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27271-35711일
99.6.12 개정승인

50㎜×80㎜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대 비 시 험 신 청 서

신 청 인	① 성 명 (대 표 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 주 소			
	④ 법 인 명 칭		⑤전 화 번 호	
생산·판매한 종자업자	⑥ 상 호		⑦종자업등록번호	
	⑧ 주 소		⑨전 화 번 호	
종자에 관한 사 항	⑩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⑪품종의 명칭	
	⑫종 자 구 입 량		⑬종자구입시기	
⑭재배 및 관리내용		(파종일 또는 정식일, 온·습도 관리, 시비, 관수, 약제살포 등)		
⑮분 쟁 의 내 용				

「종자산업법」 제1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비시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 림 청 장

구비물품: 종자시료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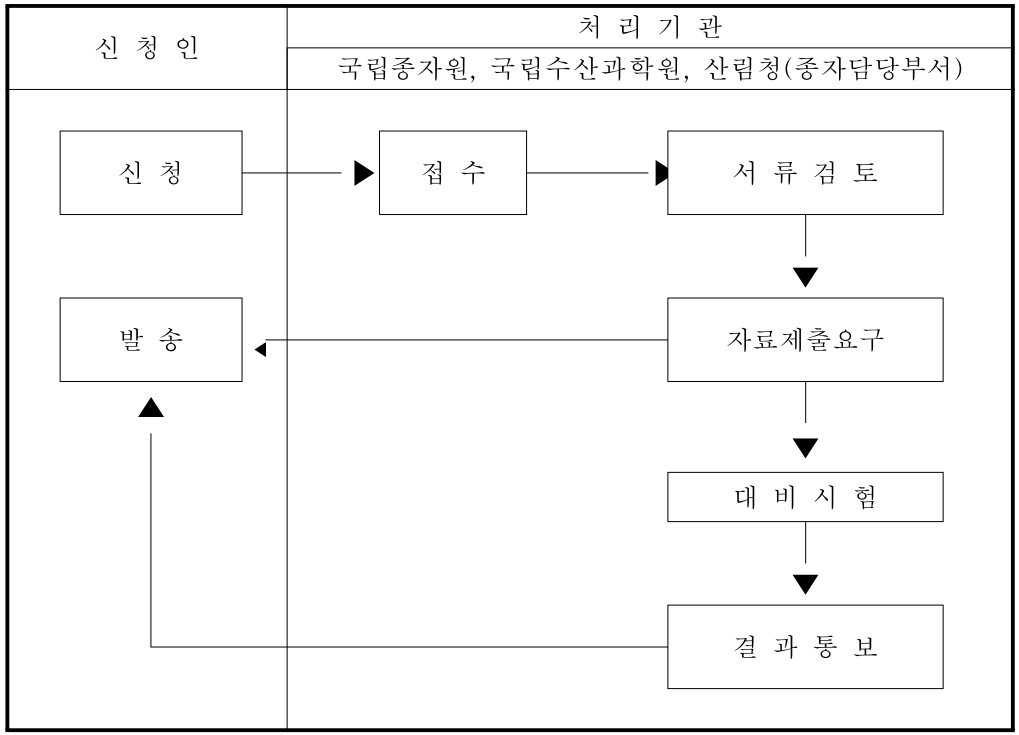

※ 작성요령

1. 『생산·판매한 종자업자 및 종자매매업자』 란중 "⑥상호"란에는 회사명 또는 법인명을 적고, "⑦종자업등록번호 또는 종자매매업신고번호"란에는 종자업자인 경우에는 종자업등록번호를, 종자매매업자인 경우에는 종자매매업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2. "⑩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학명: *Allim cepa* L., 일반명: 양파
3. "⑫종자구입량 및 ⑬종자구입시기"란에는 종자업자 또는 종자매매업자에게서 구입한 물량과 구입한 시기를 적어야 합니다.
4. "⑭재배 및 관리내용"란에는 대비시험을 받고자하는 품종에 대한 재배 및 관리내용 즉 파종일 또는 정식일, 온·습도관리, 시비, 관수, 약제살포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5. "⑮분쟁의 내용"란에는 분쟁이 발생한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10.9.1>

접수인란		결재인란	
보 상 청 구 서			처리기간 15 일

청 구 인	① 성 명 (대 표 자)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 주 소			
	④ 법인명칭		⑤ 전 화 번 호	
내 용	⑥ 작물의 명칭		⑦ 품종보호권 등록 번호	
	⑧ 품종의 명칭			
	⑨ 종자업자	성 명		
		주 소		
	⑩ 종자매매업자	성 명		
		주 소		
	⑪ 피 해 내 용			

「종자산업법」 제14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종자업자 귀하

구비서류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출내역서 1부
2. 「종자산업법」 제148조제6항에 따른 대비시험 결과통보서 부본 1부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72호의2서식] <개정 2010.9.1>

조정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상 호		등 록 번 호	
	주 소			

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종자산업법」 제15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종자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2. 조정신청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210㎜ ×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10.9.1>

접 수 인 란		결 재 인 란		
□ 등 본 / □ 초 본 □ 열 람 / □ 복 사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 년 월 일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사건과의 관계			
대 리 인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전 화 번 호	
사건의 표시	⑩출 원 번 호		⑪출 원 일 자	
	⑫등 록 번 호 심 판 번 호		⑬등 록 일 자 심판청구일자	
⑭작물의명칭				
⑮품종의명칭				
⑯신 청 부 분				
⑰신 청 부 수				
⑱사 용 목 적				

「종자산업법」 제1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산 림 청 장 귀하

구비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원

210mm × 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2010.9.1>

자료 열 람 / 복 사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성명		②생 년 월 일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신청사항				
⑥복사구분	복 사 면	통 수	연 수	

「종자산업법」 제1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산 림 청 장

	수수료: 원

27271-36111민
99.6.12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종자산업법에의한수수료및품종보호료징수규칙

1998. 2. 11. 제정공포(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75호)
2001. 8. 1. 개정공포(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70호)
2001. 7. 26. 개정공포(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93호)
2004. 3. 12. 개정공포(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64호)
2007. 1. 30. 개정공포(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46호)
2010. 9. 1. 개정공포(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6호)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제1조(품종보호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등록수수료: 품종당 5천 5백원
2. 품종보호 출원수수료: 품종당 3만8천원
3. 품종보호 심사수수료
   가. 서류심사: 품종당 5만원
   나. 재배심사: 재배시험 때마다 품종당 50만원
4. 우선권주장 신청수수료: 품종당 1만8천원
5. 통상실시권의 설정 재정신청수수료: 품종당 10만원
6. 심판청구수수료: 품종당 10만원
7. 재심청구수수료: 품종당 15만원
8. 보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건당 3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건당 1만3천원

   [전문개정 2010.9.10]

제2조(품종보호료) 법 제49조에 따른 품종보호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0.2>

제3조(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보호권의 이전등록수수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품종당 1만4천원
   나. 상속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품종당 5만3천원
2. 실시권의 설정등록수수료
   가. 전용실시권: 품종당 7만2천원
   나. 통상실시권: 품종당 4만3천원
3.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품종당 7만원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록수수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품종당 1만1천원

나. 상속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품종당 3만3천원

5. 품종보호권·실시권 또는 질권의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말소등록 또는 회복등록수수료: 품종당 3천5백원

6. 품종보호권 및 실시권의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품종당 5만5천원

7. 가등록수수료: 품종당 1만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말소등록 또는 회복등록수수료: 품종당 1만5천원

[전문개정 2010.9.10]

제4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에 관한 수수료) 법 제114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신청수수료: 품종당 3만8천원

2.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심사수수료

가. 서류심사: 품종당 5만원

나. 재배심사

1) 품종보호 출원과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 품종당 연간 10만원

2) 1) 외의 경우: 품종당 연간 50만원

3.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수수료: 품종당 2만원

[전문개정 2010.9.10]

제5조(종자보증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124조에 따른 종자보증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증 신청수수료: 품종당 1천5백원

2. 국가보증 검사결과에 대한 재검사 신청수수료: 품종당 1천5백원

3. 국가보증 검사수수료

가. 포장검사: 10아르(a)당 2만원

나. 종자검사: 품종당 5만원

다. 종자재검사: 품종당 5만원

4. 보증서 발급수수료

가. 국문: 무료

나. 영문: 품종당 5천원

5.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품종 신고수수료: 품종당 3만원. 다만, 씨앗으로 증식하는 1년생 화훼류의 경우에는 1건(25품종 단위로 계산한다)당 3만원으로 한다.

6.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수수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림용 종자 및 산림용 묘목에만 해당한다): 품종당 5만원

[전문개정 2010.9.10]

제6조(그 밖의 수수료) 그 밖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수수료: 1건당 5백원(복사를 필요로 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면당 1백원씩을 가산한다)
2.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 1면당 2백원
3.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재교부신청: 1건당 6천5백원
4. 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의 신청수수료: 1건당 5백원
5. 출원 또는 등록 관련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 1건당 3천원

[전문개정 2010.9.10]

제7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

제8조(품종보호 심사수수료 등의 납부기간) 제1조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 심사수수료 및 제4조제2호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심사수수료는 심사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9조(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 ① 제2조에 따른 품종보호료는 품종보호결정의 등본 또는 품종보호등록의 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품종보호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품종보호권자는 제2년분부터의 품종보호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권자가 여러 해 분의 품종보호료를 일시에 납부하기를 희망하면 연간 단위로 품종보호권자가 희망하는 기간까지 품종보호료를 일시

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납부한 후 품종보호료의 변경이 있으면 납부된 품종보호료는 변경된 품종보호료에 적합하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9.10]

제10조(종자검사수수료의 납부기간) 제5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자검사수수료는 포장검사 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11조(그 밖의 수수료의 납부기간) 제1조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 심사수수료, 제4조제2호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심사수수료 및 제5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자검사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는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12조(품종보호료 또는 수수료의 면제) 법 제51조제3호 또는 제16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품종보호료 또는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13조(반환할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 ① 법 제52조 또는 제162조에 따른 반환금은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다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반환할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9.10]

부칙 <제1275호, 1998. 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부칙 <제1370호, 2000. 8. 1>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종자산업법에의한수수료및품종보호료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중 "농림부장관·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을 "농림부장관·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농촌진흥청장"을 "산 림 청 장"으로 한다.

산 림 청 장 국립종자관리소장

③생략

부칙 <제1393호, 2001. 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1조제3호 나목 및 제4조제2호 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배심사수수료의 납부통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품종보호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64호, 2004. 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6호, 2007. 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및 제3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품종보호출원·품종보호권의 등록·국가품종목록의 등재·종자보증등 및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품종보호권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4호, 2007.11.30>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종자관리소장"을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립종자관리소장"을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호, 2008.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품종보호료의 납부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미 납부한 품종보호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납부한 품종보호료에 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7호, 2008.11.1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 2010. 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0.9.10>

품종보호료(제2조 관련)

품종보호권 설정 등록일부터의 연수 / 연간 품종보호료	제1년부터 제5년까지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연간 품종보호료	3만원	7만5천원	22만5천원	50만원	1백만원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9.10>

발행번호		회계연도	

성 명 ·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자번호)	
주 소			

계좌번호	
세입징수관 서	
세목코드	

권 리 의 표 시 (등록번호)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금 액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납부

수 납 인
취급자인

27271-38111일
97.12.23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9.10>

	접수인란	
	결재인란	

□ 수 수 료
□ 품종보호료 면제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대리인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전화번호	
⑨ 면제대상 수수료 또는 품종보호료				
⑩ 면 제 사 유				

「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제12조에 따라 □ 수수료, □ 품종보호료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산림청장 · 국립수산과학원장 · 국립종자원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리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종자산업법제53조의규정에의한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

1998. 10. 15. 개정공포(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96호)
2001. 8. 1. 개정공포(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70호)
2006. 6. 30. 개정공포(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29호)
2010. 9. 1. 개정공포(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7호)

종자산업법제53조의규정에의한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1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2조(등록사항)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취소
2. 법 제6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4.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
5. 법 제93조 및 제94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6.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7.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8. 법 제105조제7항에 따른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전문개정 2010.9.10]

제3조(가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다.

1.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2. 제1호의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전문개정 2010.9.10]

제4조(예고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할 수 있다.

1.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6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청구가 있는 경우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 법 제93조 및 제94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에의 소가 있는 경우
7. 법 제105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에의 상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9.10]

제5조(부기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1.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2. 질권의 이전
3. 일부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로 한다.

1.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의 변경
2. 등록의 경정(등록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6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 동일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순서는 등록용지 중 동일한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0]

제7조(부기등록의 순위)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0]

제8조(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제2장 품종보호 원부 <개정 2010.9.10>

제9조(품종보호 원부의 종류) ① 품종보호 원부는 품종보호 등록원부,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 및 품종보호 신탁원부로 한다.

② 결정·심결 또는 판결의 원본에 따라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품종보호 등록원부 또는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에 그 결정·심결 또는 판결의 요지를 등록한 경우 그 원본은 품종보호 등록원부 또는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의 일부로 본다. [전문개정 2010.9.10]

종자산업법제53조의규정에의한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

제10조(품종보호 원부의 서식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품종보호 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② 품종보호 원부의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장부로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품종보호 등록접수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납부접수부

[전문개정 2010.9.10]

제1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 ①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품종보호 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그 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에서의 종전의 순위를 가진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회복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 등록증, 품종보호 공보,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확인하여 품종보호 원부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를 다시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을 품종보호권자 및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12조(품종보호 등록원부의 폐쇄) ① 등록관청은 품종보호권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품종보호 원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를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원부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며, 폐쇄한 날부터 2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품종보호 원부를 폐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종보호 원부 폐기대장에 그 목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3장 등록의 절차

제1절 통칙 <개정 2010.9.10>

제13조(등록을 할 경우)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여 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10]

종자산업법제53조의규정에의한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

제14조(직권 등에 의한 등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관청이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항의 등록은 법 제91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품종보호권의 설정·소멸(포기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및 회복
2. 법원이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 해당 처분의 제한의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
3.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전문개정 2010.9.10]

제15조(직권 등에 의한 예고등록) 등록관청은 제4조 각 호의 신청·청구·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예고등록을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16조(등록신청)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판결 또는 상속 등에 의한 등록신청) 판결 또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18조(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등의 등록신청)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19조(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변경 등의 등록신청)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취소의 등록은 재외자 또는 품종보호관리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20조(가등록의 신청) 가등록은 신청서에 해당 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2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 제11조에 따른 회복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22조(신청서) 이 규칙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자산업법제53조의규정에의한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

1.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
2.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전부나 그 지분의 전부의 이전등록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
3.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일부나 그 지분의 일부의 이전등록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
4. 전용실시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
5. 통상실시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
6. 질권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
8.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변경 또는 말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
9. 가등록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
10. 권리의 포기, 사망,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채무변제 또는 계약해제 등에 의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
11.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
12. 회복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

[전문개정 2010.9.10]

제23조(첨부서류) 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증명서
4.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등록의 원인이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 경우
   나.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인 경우
   다.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7.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이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에 해당 제3자의 기명날인을 받음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보호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24조(첨부서류의 생략) ①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각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음으로써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이미 다른 사건에 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한 신청인은 그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등록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25조(병합신청) 둘 이상의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등록의 원인 및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만 동일한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26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27조(지분 등의 기재) ①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등록의 원인에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일부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계약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28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의 순서) ① 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권의 설정의 등록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30조(신청의 수리거부)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경우
2. 신청서에 적은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보호품종의 명칭 또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품종보호 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에 적은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품종보호 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로서 그 표시가 품종보호 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5. 품종보호권리인의 표시가 품종보호 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수리거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31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원부에 적힌 변경 전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9.10]

제32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등) ① 등록관청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등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소속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등록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33조(공장재단 등의 등록의 변경 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의 등록이 있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변경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2절 실시권 설정 등의 등록에 관한 절차 <개정 2010.9.10>

제34조(통상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① 통상실시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정할 통상실시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포함한다)

② 통상실시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보존 또는 이전할 통상실시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③ 보호품종의 실시사업과 함께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35조(전용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①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정할 전용실시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전용실시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전할 전용실시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③ 보호품종의 실시사업과 함께 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3절 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절차

제36조(질권의 설정등록신청) ① 질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2. 채권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계약 또는 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가. 등록의 원인에 존속기간·변제기·이자·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나. 법 제78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다. 「민법」 제334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라. 채권에 조건을 붙인 경우
4.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37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신청) 질권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의 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38조(채권의 일부양도 등으로 인한 등록신청)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질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4절 등록말소에 관한 절차

제39조(포기로 인한 등록말소)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포기로 인한 등록의 말소는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40조(사망으로 인한 등록말소)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가 그 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일 때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41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의 등록말소) ①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최고의 신청을 한 경우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채권증서 또는 원본의 영수증 및 등록된 채무의 변제증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질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42조(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43조(예고등록의 말소)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2. 제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를 기각 또는 각하하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하가 있는 경우
   다. 심판청구, 재심청구 또는 소의 상급심에 대한 예고등록이 있는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의 경우 외에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을 한 경우, 그 밖에 예고등록의 원인으로 된 사실이 소멸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9.10]

제44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절 신탁의 등록에 관한 절차

제45조(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제46조(신청의 특례) ① 「신탁법」 제19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은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탁법」 제38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47조(신청절차) ①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위탁자·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2. 신탁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3. 신탁의 목적
4.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5. 신탁의 종료사유 및 그 밖의 신탁의 조항

② 등록관청은 품종보호 등록원부에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48조(대위신청절차)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신탁등록의 동시신청) ① 신탁의 등록은 신탁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이전 또는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의 등록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에 따라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법」 제19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탁법」 제38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50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신탁등록의 말소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의 등록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탁의 종료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51조(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수탁자의 임무가 사망·파산·금치산·한정치산,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해임명령이나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종료한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이전등록은 새로운 수탁자 또는 다른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53조(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 ①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②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54조(신탁의 조항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 주무관청이 신탁의 조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55조(직권 등에 의한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1조 또는 제5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품종보호등록원부에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2.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법원이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경우

[전문개정 2010.9.10]

제56조(신탁사항변경의 등록신청) ①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등록은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신청서에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57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등록관청은 제53조제2항 또는 제55조제3호에 따라 수탁자의 해임을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품종보호 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4장 보칙 <개정 2010.9.10>

제58조(준용) ① 품종보호 원부의 작성방법·기재요령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2조의 "영 제6조"는 "제7조"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23조의 "특허청장"은 "등록관청"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법 제107조제1항"은 "법 제68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의 "법 제114조제1항"은 "

법 제73조제2항"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법 제132조의3·법 제133조제1항·법 제134조제1항·법 제135조제1항·법 제136조제1항 및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또는 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확정판결 및 상고의 판결"은 "법 제93조 및 제94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 제105조제7항에 따른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본다.

⑥ 제1항의 경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법 제132조의3·법 제133조제1항·법 제134조제1항·법 제135조제1항·법 제136조제1항 및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는 "법 제93조 및 제94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 또는 법 제105조제7항에 따른 상고"로, 같은 조 제2항의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실시의 신청,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 및 법 제1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청구"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으로 본다.

⑦ 제1항의 경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37조의 "영 제3조제1호"는 "제4조제1호"로 본다.

⑧ 제1항의 경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영 제27조·제54조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은 "제23조제1항제5호, 제48조 또는 제56조제2항"으로 본다.

⑨ 제1항의 경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47조 및 제48조의 "영 제25조"는 각각 "제25조"로 본다.

⑩ 제1항의 경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의 "영 제27조·영 제54조제1항 또는 영 제29조제2항"은 "제23조제1항제5호, 제27조제2항 또는 제48조"로 본다.

⑪ 제1항의 경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53조의 "영 제52조·영 제56조·영 제57조 또는 영 제62조제1항"은 "제46조, 제50조, 제51조 또는 제56조제1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9.10]

부칙 <제1296호, 1998.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0호, 2000. 8. 1>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종자산업법제53조의규정에의한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생략

③종자산업법제53조의규정에의한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내지 제19호서식중 "농촌진흥청장"을 각각 "산 림 청 장"으로 한다.

산 림 청 장 국립종자관리소장

부칙 <제1529호, 2006. 6.3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호, 2007.11.30>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종자산업법제53조의규정에의한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립종자관리소장"을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9호서식까지의 규정 중 "국립종자관리소장"을 각각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8호, 2010. 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9.10>

품 종 보 호 등 록 원 부

품 종 보 호 등 록	제 호			
권 리 란				
표 시 번 호	사 항			
1 번	출 원 연 월 일	년 월 일	출 원 번 호	
	우선권 주장일	년 월 일	주 장 국	
	공 고 연 월 일	년 월 일	공 고 번 호	
	결정(심결)연월일	년 월 일	품종의 명칭	
	년 월 일 등록			
품종보호료란				
품 종 보 호 권 자 란				
순 위 번 호	사 항			
전 용 실 시 권 자 란				
순 위 번 호	사 항			
통 상 실 시 권 자 란				
순 위 번 호	사 항			
관 리 인 란				
순 위 번 호	사 항			

27271-36211비 210mm×297mm
97.12.23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9.10>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

청 구 번 호	제 호
재 심 청 구 란	
표 시 번 호	표 시
재 심 청 구 인 란	
순 위 번 호	사 항

27271-36311비 210mm×297mm
97.12.23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9.10>

품 종 보 호 신 탁 원 부

품종보호 신탁번호	제 호
신 탁 권 리 란	
표 시 번 호	표 시
사 항 부	
순 위 번 호	사 항

27271-36411비 210mm×297mm
97.12.23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9.10>

품 종 보 호 등 록 접 수 부

① 접 수 연월일	② 접 수 번 호	③ 등 록 번 호	④ 등록의 목 적	⑤ 신청인	⑥ 대리인	⑦ 등록료	⑧ 비 고

27271-36511비 210mm×297mm
97.12.23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9.10>

품 종 보 호 료 납 부 접 수 부

① 접 수 연월일	② 접 수 번 호	③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보호료		납 부 자		⑧ 비 고
			④ 연수	⑤ 금액	⑥ 성명	⑦ 주소	

27271-36611비
97.12.23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9.10>

품 종 보 호 원 부 폐 기 대 장

① 품종보호 등록번호	② 소멸원인	③ 소멸일	④ 출원일	⑤ 공 고 일 자 기간만료일	⑥ 품종의 명칭 권리자	⑦ 비고

27271-36711비
97.12.23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9.10>

등록명의인 표시 [ ]변경 [ ]경정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재인	처리기간 2일

신청인 (등록명의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의 명칭	
권리의 표시(품종보호권 외의 경우 기재)	순위 제 번 전용(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실시권의 범위(질권의 경우 채권액)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 목적	변경(경정) 전의 표시
	변경(경정) 후의 표시

「종자산업법」 제53조 및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제1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9.10>

[ ] 품종보호권 [ ] 전용실시권
[ ] 통상실시권 [ ] 질권 **이전등록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결재인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록의무자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의 명칭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 외의 경우 기재)	순위 제 번 전용(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실시권의 범위 (질권의 경우 채권액)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 목적	

「종자산업법」 제53조 및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 제적등본)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제1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수수료 품종보호권 이전: 5만3천원(상속의 경우에는 1만4천원) 실시권 이전: 3만3천원(상속의 경우에는 1만1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9.10>

[ ] 품종보호권 [ ] 전용실시권
[ ] 통상실시권 [ ] 질권 **일부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재인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공유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의 명칭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 외의 경우 기재)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 . 공유	
지분의 약정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만 기재)	
등록의 목적	(품종보호권 전용(통상)실시권, 질권이나 이들의 지분 일부이전)	

「종자산업법」 제53조 및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제출서류	수수료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공유계약서)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품종보호권 이전: 5만3천원(상속의 경우에는 1만4천원) 실시권 이전: 3만3천원(상속의 경우에는 1만1천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9.10>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재인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의 명칭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 . 설정계약	
등록의 목적	전용실시권 설정	
전용실시권의 범위		
대가의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만 기재)	

「종자산업법」 제53조 및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부서류	수수료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7만2천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9.10>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재인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의 명칭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 . 허락	
등록의 목적		
통상실시권의 범위		
대가의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허락서에 정한 경우에만 기재)	

「종자산업법」 제53조 및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부서류	수수료
	4만3천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9.10>

질권 설정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재인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록의무자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의 명칭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 . 설정계약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채권액	금 원
존속기간	(이 항목은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만 기재)
변제기	
이자의 약정	
위약금의 약정	
특 약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의 목적	질권의 설정등록	

「종자산업법」 제53조 및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부서류	수수료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질권 설정계약서)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7만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9.10>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재인	처리기간 2일

신청인 (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등록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의 명칭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 외의 경우 기재)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 목적	(변경 후의 범위를 적는다) (질권순위의 양도·포기)

「종자산업법」 제53조 및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부서류	수수료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변경계약서) 2.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3천5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9.10>

품종보호관리인 [ ]선임 [ ]변경 [ ]말소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재인	처리기간 2일

신청인 (관리인 또는 품종보호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의 명칭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 외의 경우 기재)		
품종보호권자의 표시 (품종보호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 .	
등록의 목적		

「종자산업법」 제53조 및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인 또는 품종보호권자)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부서류	수수료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선임·변경의 경우(예: 위임장) ○ 말소의 경우(예: 해임서 또는 사임서)	○ 선임 또는 변경: 5천 500원, ○ 말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0.9.10>

가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재인	처리기간 2일

신청인 (가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청구권보전·본등록의 경우에는 가등록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의 명칭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 외의 경우 기재)	순위 제 번 전용(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실시권의 범위 (질권의 경우 채권액)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가등록·가처분명령 등(대물변제예약)
등록의 목적	본 품종보호권이전(보전)의 가등록

「종자산업법」 제53조 및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9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보전등록·본등록의 경우에는 가등록의무자)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부서류	수수료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가등록처분명령의 정본, 그 밖의 정지조건부 양도예약증서, 시기부 양도예약서, 대물변제예약서, 대물변제증명서)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만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9.10>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재인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계약해제의 경우 등록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의 명칭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 외의 경우 기재)	순위 제 번 전용(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실시권의 범위(질권의 경우 채권액)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 . (포기) (계약해제)		
등록의 목적	권리의 포기, 사망,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채무변제 또는 계약해제 등에 의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 말소		

「종자산업법」 제53조 및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0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포기서, 제권판결등본, 채권증서 및 채무변제서,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계약해제증서, 판결서의 등본 등)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3천5백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행정정보공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9.10>

신탁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재인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록권리자 (위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의 명칭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 외의 경우 기재)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목적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위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수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탁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의 종료의 이유 및 그 밖의 신탁의 조항			

「종자산업법」 제53조 및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탁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위탁자)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0.9.10>

회복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재인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의 명칭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 외의 경우 기재)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 목적	

「종자산업법」 제53조 및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부서류	수수료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품종보호권 등의 회복: 3천500원 신탁등록의 회복: 1만5천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